

kiri Weekly

이슈 모음집I 2011



1

보험경영

손해보험회사 현금 보유수준 검토 및 시사점	최영목	3
현물지급형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 제공방안	황진태	12
보험회사 해외진출 시 고려사항 - ASEAN 주요국을 중심으로 -	이승준	21
생명보험 이자율차 딜레마: 독일 사례와 시사점	김해식 김동겸	30
소득보상보험 활성화 방안	조재린	37
미국 공적의료보험의 사기방지노력과 시사점	송윤아	44
보험회사 가계대출 현황 및 시사점	유진아	56
미국 판매채널 특화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비교	이기형 유진아	64
자동차보험 다계층화와 언더라이팅 활성화	기승도	7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지급률 추이	조용운 김미화	86
건강관리서비스, 공사건강보험과 유기적 관계 필요	이창우	98
기업휴직보험을 활용한 업무연속성 관리방안	이기형	105
산재보험사기 대응방안과 시사점: 캘리포니아주 사례를 중심으로	송윤아	116
구조화된 지급방식(Structured Settlement)과 시사점	조재린 정인영	126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시사점	송윤아	135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관리 현황과 시사점	변혜원	145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상품의 개발 가능성	이창우	154

2

고령화

퇴직연금제도의 적합성 원칙 적용 방향	류건식 이상우	163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제도 도입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류건식 이상우	174
개인퇴직계좌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개선방향	류건식 이상우	182
미국 DC제도의 종신소득전환 정책과 시사점	이경희	190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필요	김대환 이상우	200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과 정책적 시사점	김대환 오병국	208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자성과와 시사점	이경희 최 원	217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보조금 지원 정책 방향		
- 독일 리스터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	류건식 이상우	227

1. 보험경영

- | | |
|---|---------|
| 1. 손해보험회사 현금 보유수준 검토 및 시사점 | 최영목 |
| 2. 현물지급형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 제공방안 | 황진태 |
| 3. 보험회사 해외진출 시 고려사항 – ASEAN 주요국을 중심으로 – | 이승준 |
| 4. 생명보험 이자율차 딜레마: 독일 사례와 시사점 | 김해식 김동겸 |
| 5. 소득보상보험 활성화 방안 | 조재린 |
| 6. 미국 공적의료보험의 사기방지노력과 시사점 | 송윤아 |
| 7. 보험회사 가계대출 현황 및 시사점 | 유진아 |
| 8. 미국 판매채널 특화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비교 | 이기형 유진아 |
| 9. 자동차보험 다계층화와 언더라이팅 활성화 | 기승도 |
| 10.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지급률 추이 | 조용운 김미화 |
| 11. 건강관리서비스, 공사건강보험과 유기적 관계 필요 | 이창우 |
| 12. 기업휴직보험을 활용한 업무연속성 관리방안 | 이기형 |
| 13. 산재보험사기 대응방안과 시사점: 캘리포니아주 사례를 중심으로 | 송윤아 |
| 14. 구조화된 지급방식(Structured Settlement)과 시사점 | 조재린 정인영 |
| 15.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시사점 | 송윤아 |
| 16.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관리 현황과 시사점 | 변혜린 |
| 17.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상품의 개발 가능성 | 이창우 |





손해보험회사 현금 보유수준 검토 및 시사점

최영목 연구위원

요약

■ 손해보험회사의 적절한 현금 보유수준은 유동성관리 및 투자성과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임.

- 보험회사의 현금 보유수준이 부족할 경우 자금조달을 위한 추가비용 및 긴급한 자산매각에 따른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반대로 현금 보유수준이 과다할 경우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증가

■ 유동비율과 모형을 통해 추정한 현금보유액을 고려하여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현금 보유수준을 평가한 결과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며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유동성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형사는 보험기간이 긴 장기손해보험 매출비중이 대형사를 초과하고 있어 현금 보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남.
- 회사별로 유동비율을 비교하고 기말에 현금부족확률이 최소화되는 기초 현금보유액을 추정하여 실제 현금보유액과 비교한 결과
 - 일부 보험회사는 유동비율이 낮으나 실제 현금보유액이 추정된 수준보다 높아 현금흐름을 고려할 때 유동성 수준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일부 보험회사는 유동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실제 현금보유액이 추정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현금흐름을 고려할 때 유동성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보험회사는 현금 보유수준 결정과 같은 유동성관리에 있어 유동비율과 함께 미래 현금흐름 및 투자수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유동성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유동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장래에 발생할 현금흐름, 투자수익, 금융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금 보유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1. 서론



■ 지금까지 손해보험회사의 투자성과에 대한 논의는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가증권, 대출채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음.

- 보험회사는 보험부채에 충당할 현금흐름의 안정적인 확보와 투자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현·예금(이하 현금으로 칭함),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대출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함.
- 현재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는 운용자산의 많은 부분을 유가증권과 대출채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들 자산의 수익률이 전체 투자성과를 좌우함.
-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보험회사의 투자수익에 대한 검토는 주로 유가증권이나 대출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 그런데 손해보험회사의 현금 보유수준은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자금지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보험회사의 투자자산 중 현금유가증권, 대출채권 등에 비해 수익률이 낮지만 현금 보유수준에 따라 여타의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영향을 받으므로 자산운용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주요 항목임.
- 특히,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보험금 지급, 사업비 지출 등이 항상 발생하므로 적절한 현금 보유수준의 결정은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중요한 고려사항임.
 - 보험회사의 현금 보유수준이 부족할 경우 조달을 위한 추가비용 또는 자산의 긴급한 매각에 따른 거래비용 및 기회손실이 발생함.
 - 반대로 보험회사의 현금 보유수준이 과다할 경우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지 못함으로써 기회비용이 증가함.

■ 이에 본고는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현금 보유수준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먼저, 손해보험회사를 대형사와 중소형사로 나누어 보험종목별 판매비중과 이에 따른 자산배분 현황 및 운용성과를 검토함.
- 다음으로, 현금에 대해 모형에 의해 산출한 보유수준과 실제 보유수준을 비교하여 회사별 현금 보유수준을 평가함.
-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보험회사의 현금 보유수준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함.

2. 손해보험회사의 현금 보유수준



■ 보험회사의 현금 보유수준은 자산운용전략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일차적으로 판매하는 주력 보험종목에 따라 결정됨.

- 보험기간이 1년인 일반손해보험의 판매비중이 큰 회사는 현금 보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장기채권 보유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손해보험의 판매비중이 큰 회사는 현금 보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장기채권 보유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손해보험 대형사와 중소형사 모두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판매비중이 축소된 반면 장기손해보험 판매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대형사는 FY2005에 비해 FY2009에는 전체 매출 중 장기손해보험의 비중은 57.8%에서 67.3%로 확대된 반면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매출은 오히려 축소됨.
- 이러한 현상은 중소형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중소형사는 장기손해보험 매출비중이 FY2005에 53.5%에서 FY2009에 74.5%로 크게 확대되었고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매출비중은 동 기간 동안 절반으로 축소됨.

〈표 1〉 손해보험회사의 종목별 보유보험료 비중

(단위: %)

보험종목	대형사		중소형사	
	FY2005	FY2009	FY2005	FY2009
자동차보험	36.0	27.3	40.2	21.7
일반손해보험	6.2	5.4	6.4	3.8
장기손해보험	57.8	67.3	53.5	74.5
합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2010년 3월 말 기준, 2) 외국사, 자동차보험 전업사는 통계에서 제외함.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통계시스템

■ 손해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중 현금 편입비율은 일반손해보험의 판매비중이 낮은 중소형사가 오히려 대형사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매출비중이 축소되고 장기손해보험의 매출비중이 확대된 대형사는 예상과 달리 운용자산 중 현금 편입비율이 FY2005 2.5%에서 FY2009 3.3%로 확대됨.
- 장기손해보험 매출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매출비중이 절반으로 축소된 중소형사는 운용자산 중 현금 편입비중이 예상과 같이 FY2005 8.6%에서 FY2009 6.9%로 축소됨.
- 특히, 중소형사는 대형사에 비해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 판매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운용자산 중 현금 편입비율이 대형사보다 높은 상황임.

〈표 2〉 손해보험회사의 자산별 편입비율

(단위: %)

자산유형	대형사		중소형사	
	FY2005	FY2009	FY2005	FY2009
현금	2.5	3.3	8.6	6.9
유가증권	63.9	62.1	56.6	63.1
대출채권	25.0	27.6	21.7	17.8
부동산	8.7	6.9	13.1	12.3
합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2010년 3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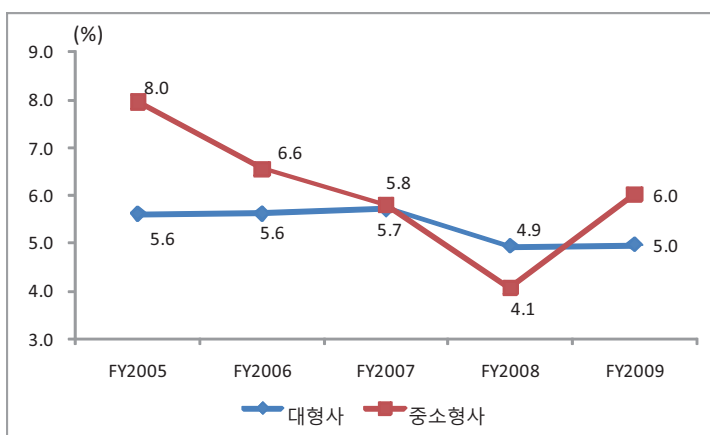
2) 편입비율은 운용자산 대비 해당 자산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통계시스템

■ 상대적으로 현금 편입비율이 높은 중소형사가 대형사에 비해 오히려 더 높은 투자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형사가 자산배분에서는 리스크가 작으나 증권선택에서 리스크 감내 수준이 높기 때문임.

- 손해보험회사 중 중소형사는 대형사에 비해 리스크가 낮은 현금 편입비율이 높지만 FY2008을 제외하고 대형사보다 높은 투자성과를 지속함.
- 최근 5년 동안 대형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변동성은 0.4%로 낮은 반면 중소형사의 변동성은 1.4%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자산배분(asset allocation)에서 중소형사가 대형사에 비해 안정성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투자성과가 높다는 것은 유가증권이나 대출채권에서 증권선택(stock selection) 시 리스크가 높은 증권에 투자했음을 의미함.

〈그림 1〉 손해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추이



주: 회사별 운용자산이익률의 연도별 평균
자료: 금융감독원, 통계정보시스템

3. 손해보험회사의 현금보유수준 평가

■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현금보유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유동비율과 함께 현금부족확률 최소화 모형을 이용하여 이론상의 기초 현금보유액을 산출함.¹⁾

● 기존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유동비율은 평균지급보험금 대비 현금과 기타 만기가 짧은 유가증권이 포함된 평균지급보험금의 비율로 산출됨.

$$C_E = -(\mu_y + z\sigma_x)$$

C_E : 기초 현금보유액

x : 기말 현금보유액

y : 당기순이익

μ_y : 평균 당기순이익

$\sigma_x (= \sigma_y)$: 기말 현금보유액의 표준편차(=당기순이익의 표준편차)

z : 표준화 점수(신뢰수준 99%=-2.33)

1) 재고모형 도출을 위한 상세한 증명과정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 Duvall, Richard M., Alfred E. Hofflander, and Eugene W. Lambert, "Optimum Liquidity Levels for Multiple Line Insurance Companie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35, 1968, pp.199-205.

● 현금부족확률 최소화(Minimizing the probability of a cash deficit) 모형은 기초 현금 보유액(C_E)과 당기순이익(y)의 합이 기말에 특정 신뢰수준 하에서 0보다 크게 만드는 기초 현금 보유액의 가치를 계산함.

– 즉, 이모형은 당기순이익의 평균과 변동성(표준편차)의 분포를 이용하여 기말에 현금부족이 발생할 확률이 최소화 되는 기초 현금 보유수준을 산출함.

● 다만, 이모형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으므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동비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함.

– 보험회사는 유동성부족으로 인한 인슈런스 룰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당기순이익의 평균과 변동성에 따라 현금보유액 수준이 결정된다고 가정함.

– 주가, 금리 등 투자여건을 고려한 자산배분에 따라 현금 보유수준이 결정될 수 있으나 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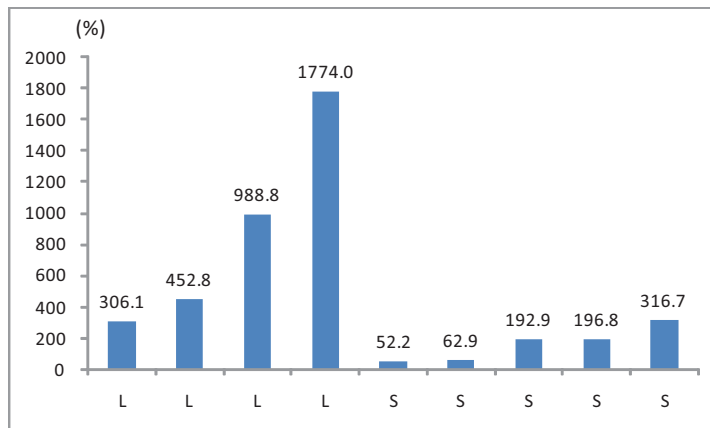
● 여기서는 FY2000~FY2009 동안 연도별 손해보험회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초 현금보유액을 산출함.

■ 손해보험 그룹별로 모형으로 추정한 현금보유액 대비 실제 현금보유액 비율을 계산한 결과 대체로 대형사가 높고 중소형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FY2009 현재 운용자산 중 현금 보유수준이 3.3%에 불과한 대형사의 경우 모형을 통해 산출한 현금보유액 대비 실제 현금보유액 비율(C_R/C_E)은 평균 584.6%인 것으로 나타남.

– 대형사는 당기순이익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고 변동성(표준편차)이 작아 추정 현금보유액 대비 실제 현금보유액 비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함.

〈그림 2〉 회사별 추정 대비 실제 현금보유액 비율



주: L=대형사, S=중소형사

- 반면, FY2009 현재 운용자산 중 현금 보유수준이 6.9%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모형을 통해 산출한 현금보유액 대비 실제 현금보유액 비율은 평균 212.4%인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은 당기순이익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고 변동성이 커서 추정 현금보유액 대비 실제 현금보유액 비율이 낮은 수준을 기록
- 특히 중소기업 중 2개사는 추정 현금보유액 대비 실제 현금보유액 비율이 100%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유동비율과 실제 현금 보유수준을 고려할 때 대체로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유동성관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일부 중소기업들의 경우 유동성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가 유동비율과 모형으로 추정한 현금보유액 대비 실제 현금보유액 비율이 100%를 상회하고 있어 유동성관리는 양호한 수준임.
- 대형사 중 B사와 D사의 경우 유동비율이 100%를 하회하여 표면적으로는 유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모형으로 추정한 현금보유액 대비 실제 현금보유액이 높아 현금흐름을 고려할 때는 유동성부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 중 E사와 F사의 경우 유동비율이 각각 467.2%와 199.1%로서 가장 높고 추정 대비 실제 현금보유액 비율도 높아 유동성이 충분한 상황이므로 현금 보유수준을 조절하여 투자수익 제고의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됨.

〈표 3〉 회사별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 지표

(단위: %)

그룹	회사	C_R/C_E	유동비율	현금비율	지급여력비율
대형사	A	988.8	156.9	71.3	225.8
	B	1,774.0	51.4	20.1	426.4
	C	306.1	127.3	50.5	228.6
	D	452.8	87.8	37.5	198.3
중소형사	E	316.7	467.2	211.0	158.2
	F	192.9	199.1	99.0	193.9
	G	196.8	134.0	43.7	230.9
	H	52.2	83.9	11.3	157.9
	I	62.9	160.2	33.0	193.1

주: 1) C_R/C_E =실제현금보유액/모형추정현금보유액

2) 유동비율=유동성자산/평균지급보험금, 현금비율=현금/평균지급보험금

자료: 금융감독원, 통계정보시스템

- 중소기업 중 H사의 경우 유동비율이 100%를 하회하고 추정 현금보유액 대비 실제 현금보유액 비율도 100%를 하회하고 있으며 지급여력비율도 가장 낮은 상황이므로 유동성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중소기업 중 I사의 경우 유동비율이 160.2%로서 높은 수준이지만 추정 대비 실제 현금보유액 비율은 당기순이익이 낮아 100%이하 이므로 수익성 제고를 통한 유동성 확보가 바람직함.
- 특히 중소기업 중 H사와 I사는 유동비율과 현금비율이 낮아 유동성자산 중 현금 이외의 자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 자산의 수익성과 리스크를 고려하여 현금 보유수준 조절이 필요함.

4. 요약 및 시사점



■ 손해보험회사들 중 대형사는 운용자산 중 현금 편입비율이 낮고 중소기업사는 현금 편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유동성을 고려할 때 손해보험회사들의 현금 보유수준은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임.

- 대형사의 경우 중소기업사에 비해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 매출비중이 높아 단기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운용자산 중 현금 편입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오히려 현금 편입비율을 낮게 가져가는 전략을 추구함.
- 중소기업사의 경우 대형사에 비해 최근 장기손해보험의 매출비중이 크게 높아져 단기적으로 보험금 지급 용도의 현금 편입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오히려 현금 편입비율을 높게 가져가는 전략을 추구함.
- 또한 유동비율과 모형으로 추정된 현금보유액을 고려할 때 대체로 손해보험회사들의 현금 보유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손해보험회사들의 유동비율과 현금 보유수준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는 유동성리스크 관리 시 기존의 유동비율뿐만 아니라 수익성 지표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일부 보험회사는 유동비율이 낮지만 실제 현금보유액이 모형으로 추정한 현금보유액보다 높은 상황임.
 - 이는 표면적으로는 유동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양호한 현금유입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급보험금, 사업비 등에 충당할 기초 현금 보유수준이 충분함을 의미함.

- 반면 일부 보험회사는 유동비율이 높지만 실제 현금보유액이 모형으로 추정한 현금보유액보다 낮은 상황임.
 - 이는 표면적으로는 유동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양호한 현금유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 보유수준이 충분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손해보험회사는 현금 보유수준 결정과 같은 유동성 관리 시 단순히 유동비율을 조정하기 보다는 장래 발생할 현금흐름과 투자성과를 함께 고려하여 수익성 및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kiri**



현물지급형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 제공방안

황진태 연구위원

요약

■ 끊임없는 상조업체의 잡음 속에서 보험회사의 상조시장 내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이 소비자보호 강화 측면에서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등장함.

-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은 상조회사와 연계하여 보험회사가 약정된 상조서비스를 책임지고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가 가능

■ 현물지급형 상조보험 판매 시 보험회사가 직면하는 리스크로는 사망리스크, 미래가격변동 리스크, 상조회사 관련 거래상대방 리스크 등이 있음.

- 상조회사 관련 거래상대방 리스크는 상조회사의 서비스 미이행, 파산, 범죄 등에 의해 발생 가능
- 이는 보험회사의 이미지 실추를 야기할 수 있어 보험회사가 평판리스크에 노출될 우려

■ 상조회사 관련 거래상대방 리스크에 대비한 상조회사 운영방안으로 아웃소싱방식이나 자회사를 활용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상조회사를 아웃소싱이나 자회사로 활용하는 방안은 해당 리스크를 내부화하는 장점
- 특히, 자회사 방식은 다양한 고객 니즈에 적합한 상품개발에도 효과적

■ 상조회사를 자회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당국의 유권해석이 유보적인 가운데, 소비자보호와 보험회사의 경영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자회사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1. 논의 배경



■ 보람상조 횡령사건을 시작으로 상조업체의 도덕적 해이 현상과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보람상조, 한라상조, 현대종합상조, 국민상조 대표의 비리 등 상조업체와 관련된 도덕적 해이와 소비자불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
- 한편, 관혼상제 의식이 복잡하고 우리사회에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급속히 심화됨에 따라 상조시장은 지속적 확대를 보일 것으로 기대

■ 그 가운데 대기업을 비롯한 농협, 신협, 일부 보험회사 등이 추가로 상조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음.

- 보안업체인 삼성 에스원, NH농협, 신협과 일부 보험회사는 자사의 전국적인 조직망을 이용하여 상조시장 진출계획을 수립 중
- 상조서비스업은 지난 9월에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동법은 자본금 3억원 이상을 충족하고 일정서류만 구비하면 어떠한 업체도 상조서비스업 등록이 가능
- 농협의 경우 위탁형태의 효드림 공제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직영방식의 상조상품 판매를 계획 중

■ 최근 들어 상조시장에서의 보험회사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상품의 출시가 소비자보호 강화에 기여하기 시작함.

■ 이에 본고는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을 중심으로 관련된 리스크의 특징을 살펴보고, 상조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함.

- 현물지급형 상조보험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해당 리스크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와 보험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어떠한 상조서비스 제공방식이 효과적인지를 검토

2. 상조보험의 종류



■ 현재 보험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조보험은 상조서비스의 직접적 제공 여부에 따라 단순 제휴형과 현물지급형으로 대별됨.

- 단순제휴형 상조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에게 상조지원금을 지급한 후 상조서비스를 위해 해당 수익자에게 상조회사를 단순히 소개하는 형태
-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은 보험회사가 상조회사와 연계하여 상조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

가. 단순제휴형 상조보험

■ 단순제휴형 상조보험은 다수의 보험회사에 의해 마케팅 차원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상조회사가 야기하는 소비자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만한 장치가 없음.

- 단순제휴형 상조보험은 상조회사와 단순한 제휴관계 외에는 어떠한 법적 책임관계를 갖지 않으므로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상조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음.
- 따라서 상조회사가 야기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보호 기능은 전무한 상태

나. 현물지급형 상조보험

■ 반면,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은 보험회사가 상조서비스 제공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소비자 보호에 기여함.

-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의 경우 실질적으로 상조회사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식이기는 하나, 보험회사가 현물형태의 상조서비스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약정된 상조서비스에 대한 보장이 가능
- 따라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단순 제휴 형태보다는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이 효과적

3. 현물지급형 상조보험 관련 리스크



- 보험회사가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을 판매하고 상조회사와 연계하여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로는 사망리스크, 미래가격변동 리스크, 상조회사 관련 거래상대방 리스크가 있음.

가. 사망리스크

- 현물지급형 상조보험 판매 시 보험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로는 피보험자의 사망과 관련한 사망리스크가 있으나, 상조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의 평균 연령이 기존의 사망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리스크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상조보험은 일반사망보험과 마찬가지로 일반사망, 상해사망, 질병사망, 재해사망 등을 담보로 할 수 있으나, 상조보험의 사망리스크는 일반적인 사망보험의 피보험자와 그 구성이 다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동일 리스크는 아님.
 - 일반사망보험에 비해서는 가입 시 피보험자의 연령이 높다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망리스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 상조보험은 보험가입의 목적이 장례비용의 충당에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사망보험과는 달리 보험가입금액 자체가 소액
- 해당 사망담보에 대한 상조서비스 제공에 대해 주계약이나 특약형태의 상품개발이 모두 가능

나. 미래가격변동 리스크

-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제공되는 상조서비스를 완전히 보장하는 형태의 보험이므로 미래에 발생 가능한 장례용품 및 서비스 관련 가격변동에 대해 보험회사는 해당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됨.
- 정액형 상조지원금을 지급하는 상조보험의 경우는 미래가격변동 리스크에는 노출되지 않지만, 보험회사가 상조서비스를 책임지고 직접 제공하는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은 가격변동 리스크에 노출

다. 상조회사 관련 거래상대방 리스크

■ 보험회사가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을 판매할 경우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가 야기하는 거래상대방 리스크도 존재함.

- 상조회사 관련 거래상대방 리스크에는 상조서비스 미이행 리스크, 상조회사의 파산리스크와 범죄 리스크 등을 들 수 있음.
- 최근 들어 실제로 상조시장과 관련하여 상조회사의 서비스 미이행이나 장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2005년 22건, 2006년 27건, 2007년 28건)¹⁾
- 아울러 상조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높아지는 파산리스크와 상조회사의 대표의 횡령 또는 배리 등의 범죄리스크가 상존

4. 현물지급형 상조보험 관련 리스크 대응방안



■ 사망리스크와 미래가격변동 리스크는 적정 요율산출을 통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될 것임.

- 사망리스크는 기존의 사망 관련 경험데이터를 이용하여 피보험자의 구성비 조정을 통해 리스크 계산 후 보험료에 반영
- 미래가격변동 리스크를 보험료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갱신타율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 현물지급형 상조보험 판매 시 상조회사 관련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운영방식에 따라 아웃소싱, 자회사, 직영 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사망 시 상조회사와 어떠한 형태를 통해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따라 아웃소싱하는 방식, 자회사로 활용하는 방식, 직영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있고, 해당 순서대로 리스크의 내부화는 심화됨.

1) 한국소비자원(2007), 「상조업실태조사」.

가. 아웃소싱 방식

■ 아웃소싱 방식은 보험회사가 상조회사와 아웃소싱 계약을 통해 상조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써 현실적 대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방식들 중의 하나임.

- 일부 보험회사가 상조보험을 판매하면서 취하고 있는 방식
- 상조회사를 아웃소싱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보호도 상당한 수준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조서비스 제공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활용 가능
- 그러나 고객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상조서비스 상품개발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

나. 자회사 방식

■ 보험회사가 상조회사를 자회사로 운영함으로써 고객만족 제고와 소비자보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상조회사를 자회사로 둘 경우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부합한 상조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상조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적합한 상조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
- 아울러 소비자보호 기능도 강하여 상조회사뿐만 아니라 모회사인 보험회사의 이미지 제고나 브랜드 가치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

다. 직영방식

■ 상조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직접 운영하여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상조회사 관련 리스크를 완전히 내부화함으로써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직영방식인 경우 보험회사가 직접 상조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구축하고 축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상조 관련 경험이 부족한 보험회사에게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존재

〈표 1〉 상조회사 운영방안

상조회사 운영방안	내 용
아웃소싱 방식	- 보험회사가 상조서비스를 아웃소싱을 통해 책임지고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에 일조 - 상조회사 관련 리스크를 일정 부분 내부화 가능 - 비용절감 차원에 현실적 대안일 수 있음 - 다양한 맞춤형 상조서비스 제공에는 어느 정도 한계
자회사 방식	- 상조회사 관련 리스크의 내부화 - 모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니즈에 적합한 맞춤형 상조 서비스 제공도 가능 - 자회사인 상조회사 뿐만 아니라 모회사인 보험회사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 상승에도 공헌
보험회사의 직영방식	- 보험회사의 직영이므로 상조회사 관련 모든 리스크를 완전 내부화할 수 있는 장점 존재 - 그러나 상조서비스 관련 전문인력과 경험부족으로 인해 과도한 비용발생 우려

5. 상조사업 관련 자회사 규정과 시사점



■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상 단순 아웃소싱이나 자회사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비용측면이나 소비자보호를 통한 보험회사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상조서비스 제공방식일 것으로 판단됨.

- 아웃소싱이나 자회사를 활용한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은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측면에서 상조시장 내 순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판단되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
- 그러나 다양한 고객니즈와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상조보험 상품개발을 위해서는 상조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 상조회사를 자회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위하여 자회사 관련 보험업법 규정을 살펴보면 신고로써 자회사 설립 가능성을 보여주는 근거 법조항이 존재함.

- 보험업법 제115조에 따르면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은 업무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자회사 소유가 가능
-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2호에는 “건강, 장묘, 장기간병, 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한 조사, 분석, 조언업무”인 경우 신고로써 자회사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

■ 그러나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2호를 근거로 상조사업을 신고로써 자회사화할 수 있으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은 다소 유보적인 상태임.

- 금융위는 상조회사가 실질적인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장의 및 묘지 관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부 인정
- 그러나 상조회사가 미래의 공동위험에 대한 대처차원에서 선불금을 수취한다는 점과 상조사업 자체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으로서의 성격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자회사 해석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유보
- 아울러 상조회사의 자회사 성립 여부에 대해서 개별사안으로 접근하여 사업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 견지

〈표 2〉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자회사 관련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보험업법 제115조와 동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12호 관련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 상조사업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12호(건강·장묘·장기간병·노인복지·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가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사망시 장례서비스(수의, 접객용품 판매, 매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사업은
 - 외형상 한국표준산업분류표 9392호의 장의 및 묘지 관리업에 해당될 소지가 일부 있으나,
 - 미래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회원간에 선불금을 수취하는 등 사업의 특성상 장의 및 묘지 관리업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함.
 - 또한 문의하신 상조사업이 시행령 제59조제1항제12호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지 여부는 판단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 개별 상조사업의 정관·추진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 금융위원회(<http://www.fcsc.kr/>) 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늘어난 상조 관련 소비자 불만을 감안해 볼 때 보험회사가 현물지급형 상조보험 판매 시 소비자보호와 경영효율성 제고측면에서 상조회사를 자회사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상조회사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가 보험회사의 상조보험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험회사가 상조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는 통로 확보에 용이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장묘 관련 업무에 상조서비스업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검토가 필요
 - 또한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4호의 “그 밖에 보험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업무”에 있어 그 업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해당 업무에 상조서비스 업무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
- 아울러 동법 제115조에 근거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통해 자회사를 두는 방법도 존재하므로 보험회사는 상조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자회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kiri



보험회사 해외진출 시 고려사항

- ASEAN 주요국을 중심으로 -

이승준 연구위원

요약

■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내수시장의 포화로 성장성이 저하됨에 따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보험가입율, 보험밀도, 보험침투도 등 여러 지표를 통해 국내 보험시장 성장성의 한계를 인지할 수 있음.
- 따라서 최근 다수의 보험회사는 해외진출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보험산업의 성장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임.

■ 현재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은 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주로 대형 보험회사가 주도하고 있음.

- 현재 해외에 진출해 영업 중에 있는 보험회사는 생명보험 대형 3사, 손해보험 대형 4사와 메리츠화재, 그리고 재보험사인 코리안 리가 있음.

■ 전통적인 다국적기업(Multinationals)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이론으로는 OLI 체계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 OLI는 소유(Ownership), 위치(Location), 내부화(Internalization)에 의한 우위를 의미함.

- 보험 및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내수시장에서의 생산성 및 규모가 뒷받침되어야 해외진출에서도 우위를 가질 수 있음.

■ 해외진출 시 고려사항으로는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초기 손실의 감내 여부, 현지 보험당국의 규제 및 향후 제도 추이, 외국인 지분 비율 제한, 영업규제, 현지 인력채용, 시장수요에 대한 고려 등이 있음.

■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글로벌화는 현지 보험 및 금융제도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선행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진출국가의 제도 및 시장의 니즈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할 것임.

1. 보험산업 해외진출 필요성



■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내수시장의 포화로 성장성이 저하됨에 따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해외진출을 위한 보다 주도면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임.

- 우리나라 가계의 보험가입율이 지속적으로 95%를 넘어서는 등 내수시장의 성장을 통한 보험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움.
- 특히 보험가입율이 2008년 이후 완만히 감소하고 있으며, 보험침투도, 보험밀도 등 다른 지표도 우리나라 내수 보험시장의 성장성이 한계에 와 있음을 보이고 있음.
- 또한 빠른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해 국내 보험시장의 잠재적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타개책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최근 다수의 보험회사는 해외진출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보험산업의 성장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임.

〈표 1〉 가구당 보험가입률 추이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생명보험	87.2	90.8	89.9	88.0
손해보험	82.3	86.3	87.4	85.9
전 체	95.6	97.7	97.4	96.4

자료: 보험연구원,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10.4

■ 이미 다수의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로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 중에 있으며, 향후 해외영업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12월 말 현재 12개 보험회사¹⁾가 총 12개 국가²⁾에 현지법인, 지점, 주재사무소의 형태로 진출해 있으며 앞으로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함께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1) 교보생명, 대한생명, 동양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 서울보증보험, 코리안리

2) 미국(뉴욕, LA, 괌, 하와이), 영국, 브라질, 두바이,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호치민시, 하노이), 태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중국(북경, 상해)

〈표 2〉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주요 지표 추이

연도	전체 수입보험료		보험침투도 (보험료/ GDP)		보험밀도 (국민 일인당 보험료)	
	국제 순위	수입보험료 (백만달러)	국제 순위	보험침투도 (%)	국제 순위	보험밀도 (달러)
2005년	7위	82,933	7위	10.25	22위	1706.1
2006년	7위	101,179	4위	11.10	21위	2071.3
2007년	7위	116,990	5위	11.80	21위	2384.0
2008년	10위	97,023	5위	11.80	24위	1968.7
2009년	10위	91,963	6위	10.40	25위	1890.3
2009년 세계평균				7.00		595.1

자료: Swiss Re, Sigma, 각 연호.

〈표 3〉 국내 보험회사 해외진출 현황

(단위: 개)

진출형태		북미	유럽	아시아							총계
		미국	영국	베트남	인도	인니	중국	태국	홍콩	일본	
생 보	현지법인	3	1	1	—	—	1	1	1	—	8
	지점	—	—	—	—	—	—	—	—	—	0
	사무소	4	2	1	1	—	4	—	—	3	15
	계	7	3	2	1	0	5	1	1	3	23
손 보	현지법인	2	1	1	—	3	3	—	1	—	11
	지점	5	—	—	—	—	—	—	—	1	6
	사무소	4	3	4	1	—	8	—	—	2	22
	계	11	4	5	1	3	11	0	1	3	39
총합계		18	7	7	2	3	16	1	2	6	62

주: 1) 2010년 12월 말 현재.

2) 브라질(현지법인 1개), 싱가포르(지점 1개 사무소 1개), 두바이(사무소 3개) 제외

자료: 금융감독원

■ 그러나 보험회사를 포함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은 국내에서의 사업과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해외진출 전에 충분한 고려를 통하여 대비책을 세워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

- 역사와 문화 및 생활환경과 관습이 다른 외국의 소비자를 상대로 금융상품 또는 보험상품과 같은 무형의 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유형의 제로물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임.
- 특히 보험산업은 금융업 중에서도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각 나라의 보험규제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함.

■ 이에 본고에서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 등 ASEAN 주요국을 중심으로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시장 진출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해외진출 전략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우선 해외진출과 관련된 국제무역이론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결정하는 유인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및 고려사항을 살펴 봄.
- 또한 향후 해외진출을 계획하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보험회사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현지 법인의 주재원 및 현지 보험감독당국의 감독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함.

2. OLI³⁾ 체계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유인



■ 현재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은 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주로 대형 보험회사가 주도하고 있음.

- 현재 해외에 진출해 영업 중에 있는 보험회사는 생명보험 대형 3사, 손해보험 대형 4사와 메리츠 화재, 그리고 재보험사인 코리안 리가 있음.

■ 이는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와도 일정부분 부합하는 현상으로 보임.

- 전통적인 다국적기업(Multinationals)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이론으로는 OLI 체계⁴⁾를 들 수 있음.

■ 소유우위(Ownership advantage)란 기업고유(firm-specific)의 유·무형 자산 소유가 그 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 우위를 제공하며, 따라서 해외진출에 따른 매몰비용(sunk cost)을 감내할 수 있는 기업이 해외진출에 유리하다는 것임.

- 특히 최근 국제경제학은 다국적기업의 내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개별 기업의 생산성의 차이에 근거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⁵⁾

3) 소유(Ownership), 위치(Location), 내부화(Internalization)에 의한 우위를 의미

4) Dunning, John H., "Trade, 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and the MNE: A Search for an Eclectic Approach," in Ohlin, B., Hesselborn, P-O., Wijkman, P. M., eds, The International Al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London, Macmillan

- 즉, 생산성이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매물비용을 감내할 만큼 높은 기업은 직접투자를 통한 해외진출을 하며, 그 보다 낮은 생산성을 가지지만 국제경쟁력을 가진 경우, 수출을 통한 해외진출을 모색한다는 것임.
- 보험 및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내수시장에서의 생산성 및 규모가 뒷받침되어야 해외진출에서도 우위를 가질 수 있음.

■ 위치우위(Location advantage)란 기업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활동함으로써 얻게 되는 우위에 관한 것으로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수평적(horizontal) FDI와 낮은 해외 생산비용에 기초한 수직적(vertical) FDI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음.

- 수평적 FDI는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공간을 확장하여 해외시장에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함.
- 수직적 FDI는 해외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과 같은 낮은 생산비용을 이용하여 부품생산 현지 공장을 만드는 경우를 의미함.
- 보험 및 금융상품에 있어서 수평적 FDI가 의미를 가지나, 이 경우에도 현지의 문화와 니즈에 적합한 상품개발은 시장개척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끝으로 내부화우위(Internalization advantage)란 해외진출의 형태를 결정함에 있어 수출이나 라이선싱 같은 국경 간(cross-border) 무역 또는 서비스 형태보다 지점 또는 자회사 형식의 직접투자에 의한 직영(in-house)방식에 의한 우위를 말함.

- 특히 다른 조건이 같고 운송비용(transportation costs)이 높을 경우, 내부화에 대한 우위가 높아져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보험 및 금융과 같은 무형의 상품 판매에 있어 국경 간 서비스 형태보다 직접투자에 의한 직영 방식이 시장개척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문화 및 언어 장벽의 극복을 위한 현지화가 금융, 보험 등의 무형상품 판매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5) Helpman, E., Melitz, M. J. and Yeaple, S. R., "Export versus FDI with heterogeneous firm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4, 2004

■ 해외 직접투자 방식에는 현지에 지점 또는 법인을 설립하는 미개발지(greenfield)방식과 현지 법인을 인수하는 국경 간 인수합병(cross-border M&A)방식이 있음.

- 국경 간 M&A의 경우 크게 비용절감이나 기술이전의 측면에서 상호보완적 기업과의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synergy)효과와 잠재적 경쟁자의 인수를 통해 산업 내 경쟁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적(strategic)효과가 그 목적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일반 해외직접투자(General FDI) 연구방법론이 금융부문 해외직접투자(Financial Sector FDI or FIFDI)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주로 은행업종의 FDI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Goldberg(2004)⁶⁾는 은행산업의 해외직접투자 사례에서도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투자유치국(host country)은 기술이전, 생산성 및 임금상승을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남을 보여줌.
- Buch and Lipponer(2004)⁷⁾는 또한 독일 은행산업의 예를 들어 은행의 해외진출 의사결정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금융부문의 해외직접투자자와 국경간(cross-border) 금융서비스 사이에 보완재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임.

■ 이상에서 살펴 본 국제경제학에서의 해외직접투자 유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서 효과적인 전략을 도출해 볼 수 있음.

- 어떤 보험회사가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만약 해외진출을 결정했다면 어떤 형식(신규법인 또는 합작투자)으로 진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에 관한 연구가 요구됨.

3.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시 고려사항



■ 한 기업이 해외진출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에서의 기반이 튼튼해야만 해외진출에 따른 초기의 고정비용 및 투자비용으로 인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 장기적으로 해외투자의 성공 확률이 높아짐.

6) Goldberg, Linda, "Financial Sector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Host Countries: New and Old Lessons", Staff Report no.183,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2004

7) Buch, Claudia M. and Alexander Lipponer, "FDI vs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s: The Globalization of German Banks", Discussion Paper, Deutsche Bundesbank, 2004

- 현재 각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보험회사의 경우, 해외시장 진출 초기에 적극적 투자를 통한 공격적 영업활동을 통해 시장선점을 이루어낼 수 있었음.
- 예를 들어 영국 Prudential의 100% 투자회사인 베트남 Prudential의 경우 1999년에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여 현지 생명보험 시장에서 2004년 이후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음.
 - 이는 2001년과 2003년에 걸쳐 납입자본금을 증가시키며 호치민시와 하노이의 지점 뿐 아니라 18개 도시에 소비자상담센터를 두는 등 적극적인 투자 및 영업활동을 한 결과로 보임.
- 이는 OLI 체계의 소유우위로 설명될 수 있는 바, 보험회사의 특정 유·무형 자산의 소유에서 파생되는 생산성의 우위와 이를 통한 현지 진출의 우위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지 보험정책당국의 인·허가 정책 등 장기적인 보험산업 정책을 고려하여 진출여부 및 투자시점을 결정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경우, 손해보험회사가 90여개 이상 난립해 있어 경쟁이 격화되고 지나친 판매 수수료 및 영세 보험회사의 소비자 보호가 문제 되자 보험당국은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음.
 - 납입자본금을 2010년 400억 루피(약 50억 원), 2012년 700억 루피(약 90억 원), 2014년 1,000억 루피(약 125억 원) 등으로 점차 증액할 예정임.
 - 이를 통해 영세 보험회사의 자연퇴출 또는 인수·합병이 유도되는 등 이미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태국의 보험감독당국인 OIC(Office of Insurance Commission)도 인도네시아와 유사한 이유로 자국 보험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까지 신규 인·허가를 주지 않기로 하였음.
 - 2014년 이후 외국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 허용여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임.
- 이처럼 현지 보험당국의 장기적인 인·허가 및 진입장벽에 관한 정책을 먼저 고려하여 해외투자 여부를 결정하여야만 현지 인·허가 획득 및 투자시점 결정을 위한 효율적 전략을 세울 수 있음.

■ **현재 또는 향후 외국 보험회사에 대한 합작투자 허용 여부 또는 허용 시 외국인 투자비율 및 규제에 대한 심도 있는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인도의 경우, 외국인의 합작투자 허용비율이 26%에 불과하며 농촌 및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험요건 등의 추가적인 규제가 있어 합작투자로 보험시장에 들어가는 데 따른 우위가 여타 국가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베트남의 경우 외국인의 보험회사 자본비율에 상한이 없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초기투자는 80%까지 인정⁸⁾하는 등 외국 보험회사의 합작투자에 관대한 정책을 취함.

- 단, 인도의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비율을 높이려는 시도도 있으며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나, 이는 현지의 정치적인 문제로 귀결되므로 인도 진출에 관심이 있는 경우, 향후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ASEAN 및 인도 보험시장의 경우 통계자료가 미비하고 부정확하므로 여기에 근거한 경영전략 수립 시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각종 제도가 갖추어져 있더라도 집행여부는 일관되지 않을 수도 있음.

- 현지 보험회사 간의 보험요율자료 등 통계정보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감독 당국의 발표자료 또한 많은 경우 지체되고 부정확한 것으로 평가됨.
 - 저개발국의 경우 요율산출에 필요한 전산 인프라 및 시스템이 미비하며 보험통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많은 경우, 과거 식민지 경험을 토대로 제도는 선진화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집행은 미비한 것으로 평가됨.
 - 단, 외국 보험회사는 현지회사보다도 규정 및 제도에 대한 이행에 보다 철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긍정적 평판을 쌓을 수 있음.

■ 현지 인력조달과 관련하여 언어능력 및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스카웃 경쟁이 치열해 질 수 있음.

- 보험과 같은 전문적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와 외국 회사에서 언어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현지 인력은 희소하며 이들에 대한 수요는 항상 공급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현지법인, 지점 또는 합작투자를 통한 내부화 우위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지의 능력을 갖춘 인력의 확보를 통한 현지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8) 초기 외국지분의 상한은 80%이며 점차 현지 지분을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연적 규정으로 볼 수 있음.

4. 결론



- 국내 보험시장의 포화 및 성장성 저하에 따라 해외진출은 보험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가 되어가고 있음.
-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세계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교하여 볼 때, 내수시장을 넘어서는 글로벌 보험회사의 출현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음.
- 그러나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은 사전에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사전적 고려가 없이는 실패할 확률이 높음.
- 보험산업의 해외진출은 치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주도면밀하게 계획되어야 하고 본고에서도 해외 진출에 따른 고려사항 중 일부에 대해 ASEAN 주요국 및 인도의 예를 통해 살펴보았음.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글로벌화는 현지 보험 및 금융제도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선행되어야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진출국가의 제도 및 시장의 니즈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할 것임. **kiri**



생명보험 이자율차 딜레마: 독일 사례와 시사점

김해식 연구위원 / 김동겸 선임연구원

요약

■ 국내 보험회사는 금리위험 노출을 줄이기 위해 부채 만기에 대응할 안정적인 장기자산이 필요한 반면, 부채의 평균조달비용이 높아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투자성과를 개선해야 하는 이자율차 딜레마를 안고 있음.

- 그동안 보험회사는 금리연동형 상품으로의 전환 등 부채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달비용을 낮추어 왔으나 상품경쟁력 측면에서 한계
- 이에 따라 보험회사로서는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를 최소화하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당면과제

■ 독일 생명보험의 경우 금리확정형 양로보험의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채권 위주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부채의 조달비용에 미달하고 있어 국내 보험시장과 유사한 상황

- 2000~2003년 저금리기를 거치면서 부채 중 금리확정형 비중이 큰 독일 생명보험회사들은 금리 보장형 상품의 비중을 축소하려고 노력
- 그러나 시장경쟁 심화와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양로보험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보험회사들은 양로보험 비중을 적극적으로 축소하지 못함.
- 이에 따라 독일 보험시장에서는 2004년 투자규제 완화와 함께 구조화증권, 헤지펀드 등에 대한 투자가 허용됨.

■ 독일 사례는 높은 조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이자율차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해 헤지펀드 등 자산구성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줌.

- 전통적인 자산구성으로는 평균조달비용과 투자이익률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며, 부채조정과 더불어 자산구성의 변화가 필요함.
- 최근 파생상품 활용을 확대하는 개정 보험업법 시행과 헤지펀드를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규제완화는 보험회사 자산운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변액보험 등 보험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1. 논의 배경



■ 국내 생명보험업에서 투자영업은 현재 가장 중요한 수익원이나 과거 고금리기에 판매한 금리보장형 상품으로 인한 높은 조달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투자성과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

- 많은 생명보험회사들이 보험영업에서 안정적인 위험률차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투자수익에 따라 수익성이 좌우되고 있음.
- 그러나 투자영업에서도 보험계약자로부터 조달한 투자자금의 평균비용이 6.0% 내외인 반면 투자이익률은 평균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평균비용을 낮추거나 투자성과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보장이율을 인하하고 시장이자율에 연동하는 상품의 비중을 늘리는 부채조정 방식으로 평균비용을 낮추는 데 노력을 기울임.
 - 다른 대안인 유배당 상품의 확대는 이익배분 등의 제약으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

■ 투자영업에서는 부채 만기를 고려하여 자산을 구성하여야 하나 장기 자산이 매우 부족한 국내 상황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만기를 일치시키는 자산부채종합관리가 투자성과 개선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음.

- 생명보험업의 경우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가 클수록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금리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 부채와 자산의 만기를 일치시키는 자산구성은 생명보험업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필수적임.¹⁾

■ 본고는 투자자금의 높은 조달비용 부담 해소와 보험회사가 처한 자산운용의 이자율차 딜레마에 대하여 독일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함.

1)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분석에 따르면, 국내 자산시장의 경우 보험부채의 만기에 대응할 장기 자산이 매우 부족하여 생명보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중 50%가 만기 불일치에 따른 금리위험인 것으로 나타남.

2. 독일 생명보험의 상품구성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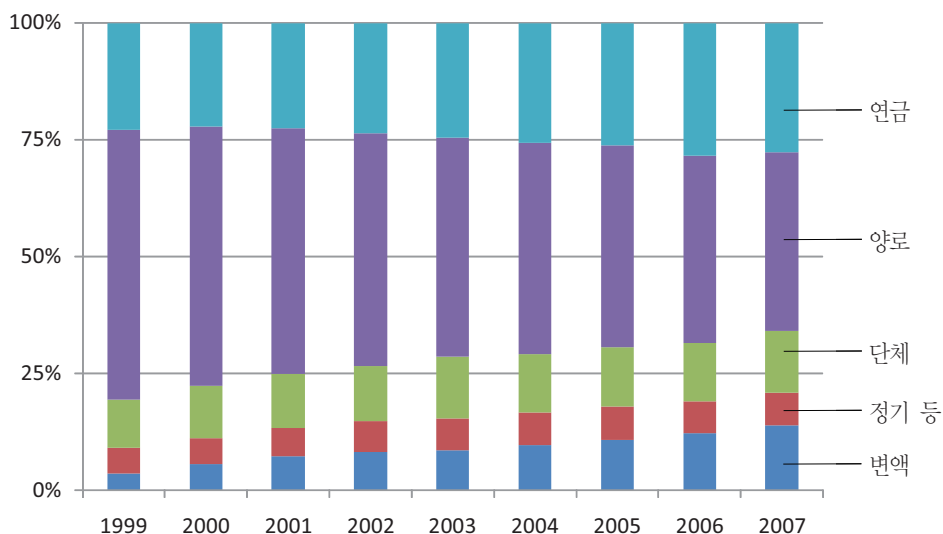
■ 독일 생명보험시장의 주력 상품인 양로보험은 대표적 금리보장형 상품임.

- 독일 생명보험시장에서 양로보험은 2007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38.3%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 상품임.
- 양로보험은 사망하면 보험금을, 생존하면 만기적립금을 지급하는 금리보장형 상품으로서 그만큼 금리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
- 그 결과, 2000년대 초 저금리기에 독일 생명보험시장은 주가 급락 등 자산가치 하락과 이에 따른 이차역마진으로 많은 보험회사가 재무적 곤란을 경험
 - 만하이머생명(Mannheimer Leben)은 이차역마진으로 파산

■ 독일 생명보험의 경우 공적연금 개혁과 치열한 시장경쟁으로 인해 양로보험의 보장이율 인하를 제외하고는 적극적 부채조정이 없어 한국과 대조적

- 독일의 공적연금 개혁으로 양로보험은 공적연금의 줄어든 급부를 보완할 금융상품으로 부상하면서 시장 수요가 급증
 - 정부는 45년간 공적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직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급부 보장비율을 70%에서 45%로 낮추는 연금개혁을 단행
- 시장점유율을 좌우하는 양로보험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
 - 100여개가 넘는 생명보험회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변액보험을 포함한 연금상품과 함께 금리보장형 양로보험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

〈그림 1〉 독일 생명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 구성



자료: GDV(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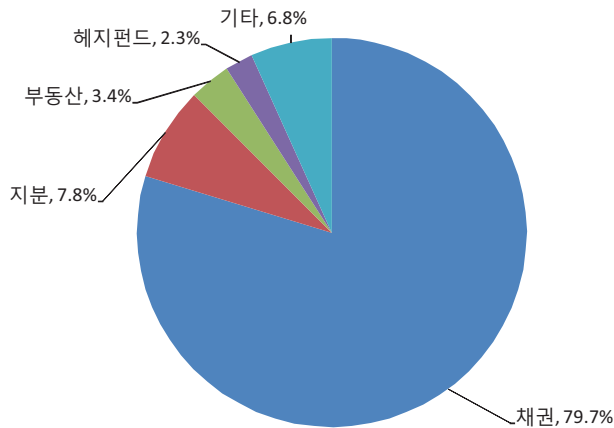
3. 독일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 2000~2003년의 저금리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독일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은 보수적인 투자기조를 유지

- 국공채, 회사채 등 채권의 비중이 운용자산의 79% 수준을 유지
 - 이 중 금리확정형 채권은 운용자산의 36% 수준이며 대출을 포함
- 주가 급락을 경험하면서 2001년 운용자산의 20%에 달하던 지분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 금융위기 이후 지분투자는 2009년 6%까지 하락했으며, 동 기간 커버드본드(covered bonds)에 대한 투자가 급증
 - EU Solvency2의 제5차 계량영향평가는 주식시장의 30% 급락시나리오 테스트를 요구하고 있어 지분투자의 비중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 독일 생명보험회사의 자산구성(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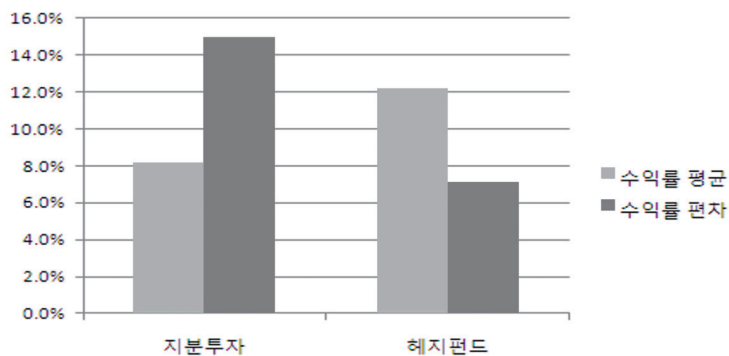


주: 부동산에는 부동산신탁(REITs)을 포함
 자료: Dembowski(2009), "German Asset Allocation," Life and Pensions.

■ 부채 조정이 완만하게 이루어진 독일 생명보험의 경우 높은 조달비용에 대응하여 투자성과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2004년 투자규제 완화를 계기로 생명보험회사들은 헤지펀드 등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증가시킴.

- 독일 감독기구(BaFin)는 2004년 투자현대화법을 통해 헤지펀드 등 보험회사에게 적극적인 자산 운용수단을 허용함.
 - 주식 등 위험자산은 위험기준자본의 35%까지 허용하고,
 - 자산 대비 ABS와 CLN 등 구조화채권은 7.5%, 헤지펀드는 5%까지 투자 허용
- 헤지펀드는 독일 생명보험회사의 지분투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투자대안으로 부상
 - HFR(Hedge Fund Research)의 고수익-고위험 지분투자자와 비교하여 헤지펀드가 상대적으로 고수익-저위험 투자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2005년 이후 독일 생명보험회사들은 보수적 자산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초과이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와 구조화증권의 투자규모를 꾸준히 늘리고 있음.
- 2008년 현재 헤지펀드투자는 운용자산의 2.3% 수준

〈그림 3〉 지분투자자와 헤지펀드 수익성 비교



주: S&P500과 헤지펀드의 1990년 이후 연평균 수익률 비교
 자료: 김재철(2011), “헤지펀드 국내 도입방향과 기대효과”에서 재인용. 원전은 HFR(Hedge Fund Research)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 생명보험의 투자성과는 여전히 평균조달비용에 미달하고 있어 자산운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독일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영업에서 건실한 성과를 내고 있으나,
- 투자영업과 관련된 이자율차 부문에서는 투자이익률이 양로보험 등에서 보장한 평균이율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조달비용은 매년 하락해왔으나 2009년 현재 4.3%로 투자이익률 3.4%를 상회

〈표 1〉 독일 생명보험시장의 투자성과와 조달비용

	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투자이익률	7.7%	5.1%	5.2%	4.8%	4.6%	3.6%	3.4%
국채(10년)수익률	5.2%	4.1%	3.4%	3.8%	4.2%	3.9%	3.2%
평균조달비용	n.a.	n.a.	n.a.	n.a.	n.a.	4.4%	4.3%

자료: AXCO Database, Bloomberg Database, Dembowski(2009), Fitch(2009).

4. 보험회사 자산운용에 대한 시사점



■ 독일 사례에 볼 때, 높은 조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이자율차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산구성이 필요함.

- 채권 위주의 보수적인 자산구성으로는 평균조달비용과 투자이익률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며, 부채조정과 더불어 적극적인 자산구성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그런 점에서 독일의 투자규제 완화는 보험회사들에게 헤지펀드 등 다양한 자산운용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보수적인 투자기조를 유지하는 한 이차역마진 구조를 벗어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을 보여줌.

■ 국내에서도 사모펀드규제 완화가 발표되면서 헤지펀드 운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국내 보험회사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적격투자자 사모펀드에 대한 구조조정대상기업 투자의무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국내에서도 기본적인 헤지펀드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물론 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위험관리와 운용인력 등 인프라가 뒷받침되려면 헤지펀드 등의 대체투자가 늘어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임.
- 새로운 자산구성은 변액보험 등 보험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금융업권간 자금을 조달하는 시스템 차이를 축소시켜 자산운용능력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할 것임.
 - AXA사례는 자산운용 변화를 통해 신성장의 계기를 만든 대표적인 사례

■ 한편 이자율차 딜레마의 또 다른 대안으로서 파생상품이나 금융재보험이라는 헤지 수단의 활용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

- 2011년부터 시행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파생상품 활용 여건을 개선시켰으나(파생상품의 한도를 총자산의 3%에서 장내상품의 경우 6%까지 확대), 파생상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보다는 비용 항목에 주목하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
- 이자율차를 헤지할 수 있는 금융재보험의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qi**



소득보상보험 활성화 방안

조재린 연구위원

요약

■ 우리나라에서도 사적 소득보상보험이 도입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음.

- 소득보상보험(Disability Insurance)은 생존보장상품으로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취업불능 상태가 될 경우 소득상실 이전 소득수준의 일정 비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임.
- 공적 소득보상보험으로 국민연금장애연금과 산재보험이 있으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함.
-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사적 소득보상보험이 보편화된 가운데 공적 소득보상보험을 보완

■ 소득보상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상실위험을 폭 넓게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이 필요하나 도덕적 해이 우려로 상품개발과 판매가 제약을 받고 있음.

- 보장내용이 재해 1~3급 장해 시, 고액치료비 관련 질환으로 입원 시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이 약함.
- 이로 인해 다양한 소득상실 위험을 보장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도덕적 해이 우려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상품개발과 판매도 부진한 상태

■ 소득보상보험의 활발한 상품개발과 판매를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킬 방안 마련이 급선무임.

- 타 상품에 비해 보장내용이 복잡한 소득보상보험은 클레임 검증을 위한 표준시스템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이 필수적임.
- 적극적인 클레임 검증과 더불어 클레임 발생가능성을 예방하고 보험금 청구자의 조기 복직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
- 단체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과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거나, 공적 소득보상보험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할 필요

1. 논의 배경



■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고자 우리나라에서도 사적 소득보상보험이 도입되었으나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음.

-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소득상실은 가정의 생계와 자녀교육을 곤란하게 하며 나아가 사회적 리스크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음.
- 사적 소득보상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도덕적 해이 통제를 위한 체계적 방법 구축 미비가 주로 지적됨.

■ 소득상실 위험에 대한 공적 소득보상체계로는 국민연금장애연금과 산재보험이 있으나, 소득상실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함.

- 국민연금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해 1~4 등급으로 구분하여 연금을 지급하나, 지급기준이 까다롭고 소득대체율 또한 매우 낮음.
 - 장애 1급의 경우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 월평균 300만원에 대해 월 59만원을 지급
- 한편,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애에 대해서만 연금을 지급하나, 대부분의 장애는 업무와 관련 없는 원인으로 발생함.
 - 미국의 경우 90%에 달하는 장애가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함.¹⁾

■ 따라서 공적 소득보상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소득상실분을 사적 소득보상보험이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사적 소득보상보험(Disability Insurance)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공적 소득보상보험 기능을 보완함.

■ 본고는 우리나라 사적 소득보상보험의 현황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안정적인 가계생활을 위해 사적 소득보상보험은 향후 꾸준한 수요를 가질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장기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도덕적 해이 완화방안을 살펴볼 것임.

1) National Safety Council, Injury Facts 2008 Ed.

〈표 1〉 미국의 소득보상보험 가입 현황(2003년)

종류	피고용인 전체	전문직, 기술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업
단기소득보상보험	37%	40%	44%	20%
장기소득보상보험	28%	40%	20%	10%

자료: National Compensation Survey: Employee Benefits in Private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2003.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2. 소득보상보험의 정의와 현황



가. 소득보상보험의 정의와 형태

■ 소득보상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취업불능상태가 될 경우 소득상실 이전 소득 수준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임.

● 소득보상보험은 운영주체에 따라 공적 소득보상보험과 사적 소득보상보험으로 대별됨.

■ 대부분의 선진국은 공적 소득보상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지는 못함.

●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보상보험의 형태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임.

– 영국은 국가보험(National Insurance), 미국은 소득보상사회보장보험(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이 있음.

– 이 프로그램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소 생계를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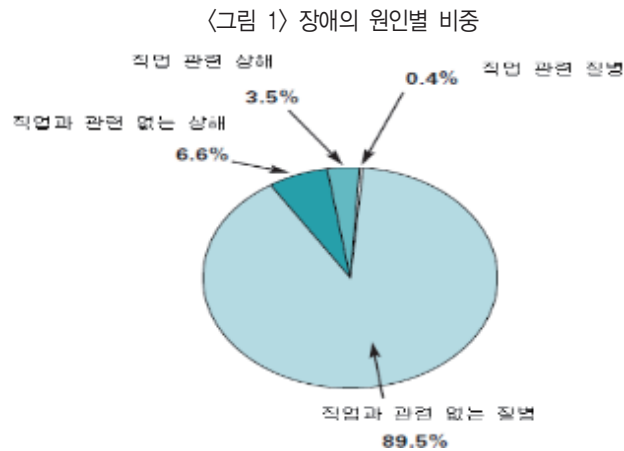
● 독일, 프랑스, 영국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공적보험을 통해 상병수당의 형태로 소득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음.

– 이 제도는 지급금액의 상한이 낮고 지급기간의 제한이 있어 보상이 충분하지 않음.

● 산재보험은 업무와 관련된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피고용인에게 지불하는 보험임.

– 호주는 법정업무보험(Statutory Compensation), 미국은 노동자보상보험(Worker's Compensation) 제도를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산재보험은 업무와 무관한 장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장애의 대다수는 업무와 관련이 없음.



자료: National Safety Council; JHA 2002 U.S. Group Disability Rate and Risk Management Survey

■ 따라서 공적 소득보상보험의 기능을 보완하는 사적 소득보상보험이 보편화되어 있음.

- 사적 소득보상보험은 피보험자가 업무와 무관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함.
- 보장기간에 따라 단기소득보상보험 장기소득보상보험이 있고, 가입주체에 따라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이 있음.
 - 단기소득보상보험(Short Term Disability Income Insurance Plan)은 보통 6개월에서 2년 동안 일할 수 없을 때 현재 임금의 일정부분을 지급
 - 장기소득보상보험(Long Term Disability Income Insurance Plan)은 보통 2년 이상 동안 일할 수 없을 때 현재 임금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형태나, 정기지급 또는 퇴직나이(65세)까지 지급하는 형태 등 다양한 플랜이 있음.
- 이밖에 고한도 소득보상보험(High-Limit Disability Insurance), 핵심인력 소득보상보험(Key-Person Disability Insurance) 등 다양한 소득보상보험이 있음.
 - 고한도 소득보상보험은 전통적인 소득보상보험의 경우 보상한도가 낮아 고소득층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상하기 위한 상품
 - 핵심인력 소득보상보험은 핵심인력의 장애로 인한 인력누수 시 회사의 임시직 또는 대체인력 고용비용을 충당하는 보험

〈표 2〉 사적 소득보상보험의 전형적인 형태

	단체보험		개인보험	
	단기소득보상보험	장기소득보상보험	단기소득보상보험	장기소득보상보험
보험금 지급기간	장해발생 1~30일 후부터 90~180일까지	장해발생 90~180일 후부터 65세까지	장해발생 7~30일 후부터 2~5년까지	장해발생 30~90일 후부터 65세까지 또는 종신
보험료	- 개인보험보다 저렴 - 매해 요율이 갱신 - 보통 고용주가 부담		- 단체보험보다 비쌈 - 보통 요율이 변하지 않음 - 피보험자 개인이 부담	
보험급부	- 소득에 맞춰 매해 증가 - 급부가 소득에 따라 정해짐 - 사회보장이나 산재보험에 따라 급부가 줄어듦		- 계약 시 보장금액이 정해져 있음 -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이나 산재보험에 영향을 받지 않음	
세제	-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세제혜택이 있으며, 보험급부에는 세제혜택이 없음		-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세제혜택이 없으며, 보험급부에는 세제혜택이 있음	

나. 우리나라 사적 소득보상보험의 현황

■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도 사적 소득보상보험이 도입되었으나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음.

-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의 일정비율을 보장하는 실손상품은 거의 판매되고 있지 않고, 재해 1~3급 장해 시, 고액치료비 관련 질환으로 입원 시 등으로 사적 소득보상보험의 보상내용이 국한되어 있어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이 약함.
- 이로 인해 다양한 소득상실 위험을 보장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사적 소득보상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득상실위험에 대한 다양한 고객니즈를 충족시키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나, 소득보상보험 관련 도덕적 해이 우려로 보험회사들이 상품개발과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실정임.

- 소득보상보험의 경우 중상이나 중질환 이외의 소득상실위험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우려로 상품 개발에 소극적
- 장해등급 판정에서 의료기관의 주관 개입 여지가 많은 점도 소극적 판매의 원인임.

3. 클레임 검증과 복지프로그램



■ 소득보상보험은 도덕적 해이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클레임의 집중적인 검증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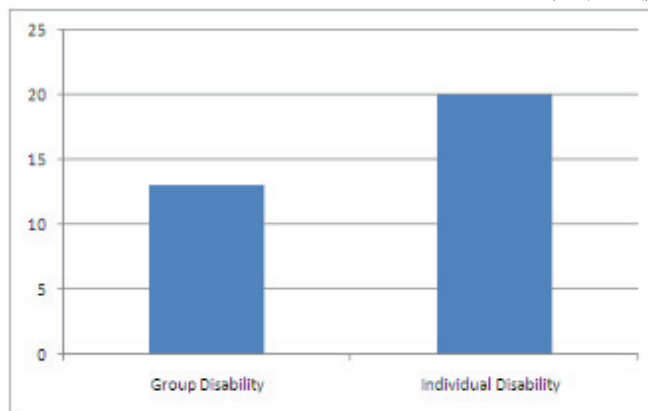
- 소득보상보험은 경제환경 변화에 민감한 리스크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클레임청구 건수가 갑자기 변할 수도 있고, 그 변동 또한 클 수 있음.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소득보상보험은 부담보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 1980년대 들어 북미지역 보험회사들은 클레임의 적극적인 검증에 더욱 중점을 둠.
 - 적극적인 클레임 검증은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측면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클레임을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복미를 중심으로 복지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추세에 있음.

- 장애기간을 줄이고 영구장애로 이어지는 증상을 막기 위하여 장애보험금을 청구한 사람들이 쉽게 복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프로그램이 도입됨.
 - 치료프로그램은 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예방프로그램은 며칠 동안 일을 하지 못한 후 또는 병가 전에 예방조치를 취하는 프로그램임.

〈그림 2〉 클레임 관리 및 복지프로그램의 투자 대비 성과(1달러 투자 당)

(단위: 달러)



자료: HIAA Survey of Disability Management Programs

- 복직프로그램은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들을 빠른 시일 내에 직장에 복귀시킴에 따라 클레임을 감소시키고 보험회사의 사업성과를 개선함.
- 클레임관리 또는 복직프로그램에 대한 1달러 투자 당 사업성과는 단체보험은 13달러, 개인보험은 20달러 개선효과가 있음.
- 또한 보험회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한 보험금 지급기관의 역할에서 벗어나 취업불능상태의 근로자에게는 회복을 위한 동반자로서, 그리고 해당 회사에는 경영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4. 소득보상보험 활성화를 위한 장기방안



■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클레임 검증 시스템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함.

- 타 상품에 비해 보장내용이 복잡한 소득보상보험은 클레임 검증을 위해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가 필요함.
- 장해정도 판정에서 의료공급자와 보험회사의 판단 상충 시 이를 대비한 표준화된 규정 마련이 요구됨.

■ 클레임 가능성을 예방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들이 조기에 복직할 수 있도록 복직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

- 복직프로그램을 통해 클레임을 줄이고 사업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음.
- 또한, 복직프로그램이 취업불능상태 근로자의 조기복귀를 돕고, 기업에게는 인력손실에 따른 피해를 축소시키는 등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역할을 제고함.

■ 소득보상보험을 단체건강보험 및 연금보험과 패키지로 판매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음.

- 고한도 소득보상보험이나 핵심인력 소득보상보험 등 도덕적 해이의 위험이 적은 상품을 개발하여 단체 소득보상보험과 함께 판매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적 소득보상보험과 연계된 상품을 개발하여 과도한 보상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장애연금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 사적 소득보상보험은 그 보상액만큼이 제외된 금액만을 지급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유인을 줄일 수 있음. **kiri**



미국 공적의료보험의 사기방지노력과 시사점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 미국 공적의료보험 총지출액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사기에 해당하며 의료제공자의 부정청구가 그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 FY2010 기준 공적의료보험 총지출액은 9,740억 달러이며, 이중 970억 달러가보험사기인 것으로 추정

■ 미국은 2010년 의료개혁법을 통해 공적의료보험사기에 대한 강경대응을 시사함.

- 의료개혁법을 통해 의료제공자의 부정청구에 대한 적발 및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의료사기방지기금 확충을 위한 규정도 마련
- 개정 부정청구금지법(FCA)과 반뇌물법(MPPA)은 과오납의 신고 및 환급기한 명시, 소추대행자의 원천정보 기준 완화, 사기행위 고의성 입증기준 완화를 규정
- 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사기방지 공동프로그램인 HCFAC의 운영을 위해 보험사기방지기금의 확충을 규정

■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사기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상당히 미흡한 가운데, 특히 의료제공자의 부정청구에 대해 정부의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함.

-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에 의료제공자의 부정청구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되, 기망행위의 정도를 사기죄보다 넓게 인정하고 부정청구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
-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의료제공자의 부정청구 적발을 위한 공동기구를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원의 일정액을 건강보험사기방지기금으로 충당할 필요
- 의료제공자의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서는 공영보험과 민영보험간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제도화할 필요

1. 서론



- 미국은 2010년 의료개혁법을 통해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의료제공자의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정청구금지법과 반뇌물법을 개정하고 의료사기방지기금의 확충을 규정하는 등 공적의료보험사기에 대한 강경대응을 시사함.
 - 2010년 3월 미국은 향후 10년간 약 9,380억 달러를 투입하여 무보험자 5,400만 명 중 3,200만 명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의료개혁법을 통과시킴.
 -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의료개혁법이 통과됨에 따라 미국 정부는 공보험에서 보험사기 제거와 의약품 가격인하를 통해 지출을 축소하기로 함.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사기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인데, 특히 의료제공자의 부정청구에 대한 형사제재가 미비한 상황임.
 - FY2010 국민건강보험은 1조 2,994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함.
 - 의사가 직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 외에 형사처벌 규정이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는 의료제공자의 부정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에 불과한 규정이고, 국민건강재정건전화특별법 제19조는 대청구중사자의 부정청구에만 형사처벌이 가능
 - 형법상 사기죄는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의료제공자의 부정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공적의료보험사기, 특히 의료제공자의 부정청구에 대한 미국정부의 적발 및 방지 노력을 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미국 공적의료보험과 사기



가. 의료보험제도 현황

■ 2010년 의료개혁 이전,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전국민의 66.7% 정도가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공보험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임.

- 메디케어(Medicare)¹⁾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보험으로 사회보장세를 20년 이상 납부한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전 국민의 14.1%가 대상
- 메디케이드(Medicaid)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보험으로 전 국민의 14.3%가 대상
- 의료개혁 이전 민간보험 가입자 대부분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며, 가입옵션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가 비용을 분담
 - 고용주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거나 실업자인 경우 자비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

■ 민간보험 중심인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그동안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양산, 높은 의료비용, 낮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비싼 민간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실직자, 영세자영업자, 소규모 기업종사자 등으로 인해 2008년 기준 전체인구의 15.4%가 의료보험에 미가입한 상태
- 또한 향후 제한적 보험가입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경제침체에 따른 비보험자도 급증할 가능성이 대두됨.
- 의료비지출액은 GDP 대비 16%로 OECD 평균(9.1%)을 크게 상회한 가운데, 막대한 의료비지출에도 불구하고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의사진찰횟수, 전문치료병실 등 주요 보건의료서비스 지표는 낮은 수준

1) 메디케어는 4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Part A는 입원시 발생하는 비용보장, Part B는 외래 진료 보장하는 가정간호서비스, Part C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플랜으로 메디케어에서 승인받은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 Part D는 처방약 플랜(Prescription Drug Plan)임.

-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3월 23일 향후 10년간 9,380억 달러 규모의 자금지원으로 무보험자 5,400만 명 중 3,200만 명에게 의료보험 혜택 제공을 명시한 「환자보호 및 적절치료법안」(PP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Act)에 서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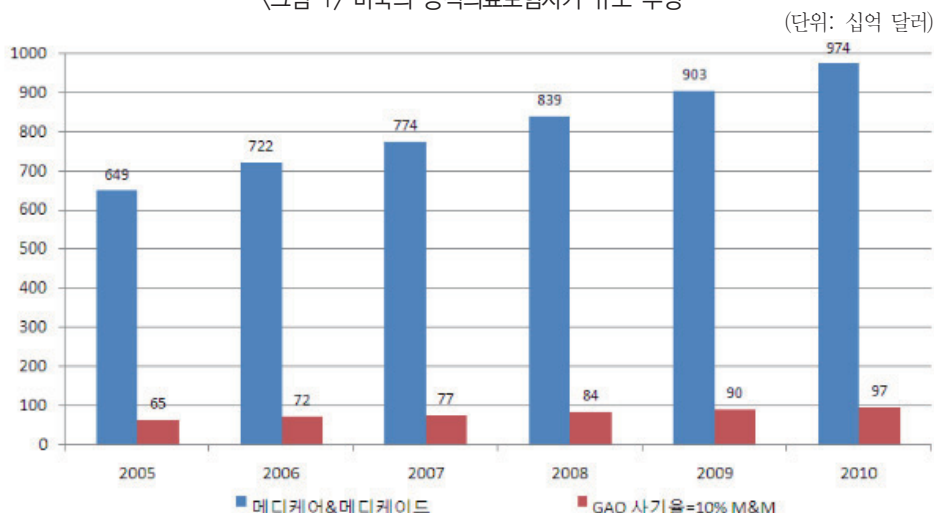
나. 공적의료보험사기 현황

〈공적의료보험의 사기 규모〉

-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총지출액의 10%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추정함.²⁾

- FY2010 기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총 지출액은 9,740억 달러이며, 이중 970억 달러가 사기인 것으로 추정됨.
- FBI는 매해 미국 의료비의 3~10%인 700~2,260억 달러가 의료사기로 누수되는 것으로 추정함.³⁾
 - FBI의 추정치는 의료보험 뿐 아니라 제약, 조달, 뇌물, 횡령 등 모든 의료관련 사기를 포함함.

〈그림 1〉 미국의 공적의료보험사기 규모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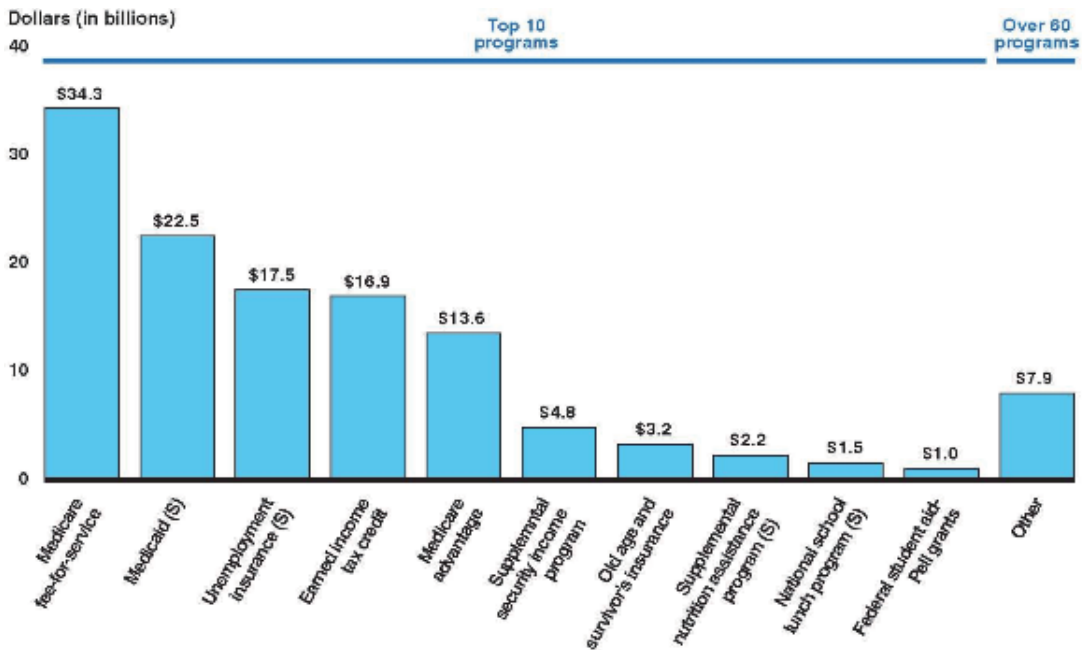
자료: Singer(2010)

2) Benjamin Singer, "Medicare Fraud Strike Force: 2010 and Beyond," US Department of Justice, 2010.
 3)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inancial Crimes Report to the Public 2001-2009", 2001-2009.

■ GAO의 FY2010 연방정부 프로그램별 부정지급액 추정치로 메디케어 행위별수가제⁴⁾가 343억 달러로 가장 높고, 메디케이드 225억 달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136억 달러로 그 뒤를 이음.⁵⁾

- 연방기관이 보고한 FY2010 부정지급액은 총 1,254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62억 달러 증가함.
 - 부정지급액 추정은 20개의 연방기관의 70개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함.
- 10개 연방정부차원의 프로그램 부정지급액 추정치가 전체에서 94% 가량을 차지함.
- 「부정지급정보법」(Improper Payment Information Act of 2002)에 따라 매년 미국의 주요 공기관은 부정지급액 규모를 추정·보고함.

〈그림 2〉 미국 공공기관의 부정지급 추정액



자료: GAO(2010)

4)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란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를 별도로 정산하고 의료인이 제공하는 각 진료행위에 대해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인.

5) GAO, Improper Payments: Recent Efforts to Address Improper payments and Remaining Challenges, 2011.

〈공적의료보험사기 행태〉

■ 의료사기에 대해 의료전문가가 72%, 의료기관이 8%, 환자·소비자가 10%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의사와 환자간 정보 비대칭성과 수요의 비탄력성이 의료제공자의 사기 유발 가능성을 높임.
 - 건강상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 치료결과에 대한 환자의 무지가 의료시장에 강하게 존재할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의료제공자에게 집중됨.
 - 환자가 의료서비스 비용과 대체방안에 대해 정확히 모를 경우 최적가격과 서비스를 찾아 나설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환자가 선택한 가격과 서비스 질이 최적이라 보기는 어려움.

〈표 1〉 미국 공적의료보험의 사기 유발자

의료전문가	의료기관	환자/소비자	기타
72%	8%	10%	10%

자료: Fisher(2008)

■ 의료사기 중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진료에 대한 의료제공자의 보험금 허위청구가 34%로 가장 흔함.

- 보험금 허위청구 외에 진료내용 과장청구가 22%, 과잉진료가 18%, 약제사기가 8%, 이중청구가 4%를 차지함.

〈표 2〉 미국 공적의료보험의 사기 유형

허위청구	과장청구	불요불급한 서비스 제공	처방관련 사기	이중청구	기타
34%	22%	18%	8%	4%	14%

자료: Fisher(2008)

〈공적의료보험의 사기 적발실적〉

■ FY2010 정부가 공적의료보험사기와 관련해 회수한 예산은 모두 40억 달러이며, 이중 25억 달러는 법원 판결을 통해, 그리고 15억 달러는 소추대행 및 각 부처의 부정감시 조치를 통해 회수됨.

- 공적의료보험의 사기 관련 회수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58% 증가하였음.

- FY2010 의료보험사기의 형사피고인수는 931명이며 유죄건수는 726건이었으며, 소추대행자에 지급된 보상금은 약 3억 달러를 차지함.

〈표 3〉 공적의료보험의 사기 적발실적

회계연도	기소건수 (cases filed)	유죄건수	법원판결을 통한 회수금 (백만 달러)	의료보험사기 관련 회수예산 (백만 달러)
2010	931	726	2,500	4,021
2009	803	583	1,630	2,545
2008	797	588	1,000	2,140
2007	786	560	1,800	1,070
2006	579	547	2,200	1,784
2005	652	523	1,470	1,708

자료: DOJ(2011)

- 미국 보건복지부는 FY2010에 공적의료보험사기 관련자 3,340명을 공적의료보험 대상자에서 제외시켰음.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관련 사기 894명, 기타 의료프로그램 관련 사기 263명, 환자 남용 및 방지 247명, 면허취소 1,582명

3. 미국 공적의료보험의 사기방지 노력



가. 2010의료개혁이전

- 1996년 제정된 「의료보험 이전과 책임에 대한 관한 법률」(이하 HIPAA라 함)은 의료사기 방지를 위해 특별조항으로 개인의료정보의 이용 및 공개가 가능하도록 명시함.⁶⁾

- HIPAA는 미국 전역에서 의료보험이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됨.⁷⁾

6) Fisher, Emily, "The Impact of Health Care Fraud on the US Healthcare System," Indiana University, 2008.

7) 의료보험이전이란 어느 기업의 피고용자가 다른 주의 기업으로 전직을 한 경우 전 기업에서 가입했던 의료보험을 상실하지

– 구체적으로 동법은 의료보험과 의료서비스제공 관련 낭비·사기·남용 축소, 의료저축계좌사용 증진, 장기요양 서비스 접근성과 보장성 강화, 의료보험사무의 간소화 등을 목적으로 함.

- HIPAA 프라이버시 규정은 개인건강정보의 활용으로 얻는 공익이 크거나 정보 활용이 정보주체에 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승인 없이 개인건강정보의 이차적 사용 혹은 공개를 허용함.
- 이 법률은 의료사기 방지 뿐 아니라, 공중위생보호, 의학연구수행, 치료의 질 향상 등의 공적 목적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우선시 된다고 규정함.

■ HIPAA는 의료사기 및 남용 방지 프로그램과 기금, 의료사기공동프로그램, 수혜자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의 설립 및 운영을 규정함.

- 의료사기 및 남용 방지 프로그램(Health Care Fraud and Abuse Control Program, 이하 HCFAC프로그램이라 함)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간 의료보험의 사기방지프로그램을 조율 하기 위해 1996년에 도입됨.
-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동 프로그램으로 양기관은 공동으로 사기조사, 재정 및 실적 감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유 등의 활동을 수행함.
- HCFAC기금을 설립하여 매년 메디케어 파트A 신탁기금으로부터 적립된 일정금액을 HCFAC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사용함.
- 의료사기공동프로그램(Coordinated Health Care Fraud Program, 이하, CHCF프로그램이라 함)은 의료사기 적발 및 방지 관련 공사협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도입됨.
- 수혜자 인센티브 프로그램(Beneficiary Incentive Program)은 메디케어 수혜자가 사기를 식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수혜자가 의료서비스를 감시하도록 유도함.

■ CHCF프로그램 활동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민간보험회사와의 의료사기 관련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고자 「의료사기정보공유성명」을 발표하였음.⁸⁾

- 성명서에서 법무부는 의료사기 조사, 적발, 방지를 위해 민간보험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밝히고 구체적인 협조방안을 제시함.
- 법무부와 민간보험은 각각 정보교환 코디네이터를 두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사기의 조사 및 적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밝힘.

않고 다른 주로 같이 가져가는 것임.

8) Department of Justice, "Statement of Principles for the Sharing Health Care Fraud Information Between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Private Health Plans".

- 의료사기 조사 및 적발을 위해 민간보험의 협조를 얻을 경우 법무부는 후속정보를 민간보험과 공유하고 민간보험의 의료사기에 대한 배상청구에 협조할 것을 밝힘.
- 또한 법무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민간보험이 고소당할 경우 법무부는 동행위에 대해 민간보험의 민사적 책임이 없음을 법원에 알려주기로 함.

■ 「부정청구금지법」(FCA: False Claims Act)은 연방법으로 허위·과장 청구, 불법영업, 부정표시 또는 불량 의약품의 유통, 의료제공자에 대한 뇌물, 의약품 가격 인상, 과오납(overpayment)의 미환급 등 의료사기와 관련된 행위를 금함.

- 동법은 1863년 연방기금과 조달 관련 사기 및 남용을 방지하고자 제정됨.
- 동법을 위반할 경우 청구금액의 3배 이내, 그리고 각 부정청구 건에 대해 1만1천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함.
- FCA에 있는 소추대행조항(qui tam provision)은 일반시민이 부정청구를 받은 정부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수금액의 15~30%를 소추대행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규정함.
 - 소추대행을 유도하는 이러한 조항은 의료제공자의 과오납이 ‘정직한 단순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사기행위’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효과적임.

■ 「메디케이드 환자보호법」(MPPA: Medicaid Patient Protection Act)은 반뇌물법으로 의료제공자가 정부지원 의료프로그램 환자를 이송하는 대가 또는 구매·임차·주문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수를 유인하거나 받는 등의 행위를 금하는 법임.⁹⁾

- MPPA는 형사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2만 5천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나. 2010의료개혁이후

■ 2010년 3월에 통과된 의료개혁법 PPACA는 의료사기 방지활동을 촉진·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정청구 금지법과 반뇌물법을 개정하고, 의료사기방지기금 확충을 명시하고 있음.¹⁰⁾

9) MPPA는 Anti-kickback Statute로 표현하기도 함.

10) Morgan Lewis, "Healthcare Reform Law: Healthcare Fraud and Abuse and Program Integrity Provisions," March 2010.

- 9,38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요구되는 의료개혁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공보험에서 보험사기 등의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관리비용을 줄이고, 의약품 가격인하를 통해 지출을 축소하기로 함.
 - 10년 동안 무보험자 5,400만 명 중 3,200만 명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약 9,380억 달러의 추가재원을 필요로 함.

■ 부정청구금지법(FCA) 개정을 통해 과오납의 신고 및 환급 기한을 명시하고 소추대행자의 소제기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의료사기를 방지하고자 함.

- 의료개혁법(PPACA) 이후 과오납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신고 및 환급해야 됨에 따라 의료제공자는 과오납의 기한 내 미환급을 피하기 위해 감사 및 환급 절차를 개선할 유인을 가짐.
- PPACA 이전에는 FCA 위반에 대한 혐의를 주장할 경우 정부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해당 혐의에 대해 원천정보(‘직접적이고 독립적인 지식’)를 가지고 입증하여야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음.
- 그러나 PPACA 이후 개정 FCA의 소추대행 조항에서 ‘직접적인 지식’ 문구가 삭제됨에 따라 원천정보기준 완화를 통한 소추대행을 촉진하고자 함.

■ 개정 반뇌물법(MPPA)에서는 “고의성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행위의 고의성에 대한 입증 부담이 줄어들음.

- MPPA 개정 이전에는 행위의 고위성을 입증해야만 피고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였음.
- 그러나 현재는 ‘피고자의 인지 또는 의도(actual knowledge or specific intent)’가 MPPA 위반의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명시함.
- 동법 개정을 통해 MPPA를 위반한 자는 자동적으로 FCA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됨.
- 이로써 정부에 직접 부정청구를 한 적이 없으나, MPPA를 위반한 제조업자 등을 FCA에 의해 처벌할 수 있게 됨.

■ 또한 의료사기방지활동을 지원하고자 의료개혁법은 향후 10년 동안 1억 달러, 그리고 Section 1304 of the Reconciliation 법안은 향후 6년 동안 2억 5천만 달러를 의료사기 및 남용 방지 프로그램(HCFAC프로그램)에 제공하도록 명시함.

- FY2010 기준 총 7억 3백만 달러의 의료사기 방지기금이 조성되었는데, 이중 5억 7,700만 달러는 HCFAC프로그램에, 1억 2,600만 달러는 FBI에 조성됨.

- HCFAC프로그램에 조성된 자율기금은 FY2010 기준 3억 1,100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1억 1,300만 달러만큼 증가함.

〈표 4〉 공적의료보험의 사기방지기금

(단위: 백만 달러)

회계연도	HCFAC 강제기금	HCFAC 자율기금	FBI 강제기금	총기금
2010	266	311	126	703
2009	266	198	126	590
2008	255	0	120	375
2007	249	0	118	367
2006	240	0	114	354
2005	240	0	114	354

자료: DOJ(2011)

4.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의료제공자의 부정청구에 대해 정부의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에 의료제공자의 부정청구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되, 기망행위의 정도를 사기죄보다 넓게 인정하고 부정청구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함.

- 형법상 사기죄는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의료제공자의 부정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 보험업법에 보험사기 금지조항이 있지만 보험사기 정의 및 처벌조항은 없음.
- 미국 부정청구금지법(FCA)의 경우 법률위반에 필요한 ‘의도’로서 ‘인식’에 대한 개념을 피고가 사실을 실제 알고 있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의 진위에 대하여 모르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 뿐 아니라, 사실의 진위를 부주의하게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함.
- 또한 FCA는 기망의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있음.

- 의료제공자의 부정청구 적발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의 공동기구를 설립하고, 동 기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일정액을 재원으로 하는 건강보험사기방지기금 마련이 필요함.

● 미국의 HCFAC프로그램은 사법부와 보건당국간 공조가 사기적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줌.

■ 적어도 의료제공자의 부정행위 적발에 대해서는 공영보험과 민영보험간 원활한 정보공유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의료제공자 부정청구에 대한 수사는 수사대상자 집단의 전문성, 응집력, 폐쇄성 때문에 철저한 사전계획 하에 증거자료의 완전확보가 필수적임.

● 더불어,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민영보험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kiri



보험회사 가계대출 현황 및 시사점

유진아 연구위원

요약

- 보험회사의 가계대출은 2001년말 32.6조원에서 2010년말 66.0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0.7%에서 8.8%로 하락
 - 최근 은행 및 비은행 예금기관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한 반면,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약관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 이처럼 은행 및 비은행 예금기관보다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낮은 것은 금융업권별 자산운용 전략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지만 특히 대출서비스 공급 측면에서의 금융업권별 차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첫째, 가계가 대출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금융기관 신뢰도, 대출심사 편의성, 대출서비스 접근성 등인데 보험회사는 대출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은행 또는 비은행 예금기관보다 불리
 - 은행 및 비은행 예금기관의 경우 예금-대출서비스를 중심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가 보험회사보다 잘 갖추어진 편임.
- 둘째, 전통적인 금융서비스가 금융권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대출채권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구성에서 대출채권의 비중이 낮음.
- 보험회사는 금융업권간 업무영역 확대 추세에 대응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구성에서 대출채권의 비중을 높이고자 할 경우 대출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 검토 배경



■ 2001년부터 보험회사의 가계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

- 대출잔액 기준으로 2001년~2010년 기간 동안 은행과 비은행 예금기관의 가계대출은 각각 2.8배와 3.3배 성장하였는데, 보험회사 가계대출은 2.0배 성장에 그침.
- 이에 따라 보험회사 가계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0.7%에서 2010년 말 8.8%로 1.9%p 하락

〈표 1〉 금융기관 가계대출 추이

(단위: 조원, %, 배)

	2001년말(A)	2003년말	2007년말(B)	2010년말(C)	C/A	C-B
예금은행	156.7 (51.6)	253.8 (60.3)	363.7 (61.1)	431.5 (51.8)	2.75	67.8
주택담보대출		152.5	221.6	284.5		62.9
비은행 예금기관	49.3 (16.2)	68.3 (16.2)	110.4 (18.5)	164.4 (22.0)	3.33	54.0
주택담보대출	—	—	46.6	73.1	—	26.5
보험회사	32.6 (10.7)	42.9 (10.1)	55.9 (9.4)	66.0 (8.8)	2.02	10.1
대출총액	303.5 (100.0)	420.9 (100.0)	595.4 (100.0)	746.0 (100.0)	2.46	150.6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대출상품별 최근 증가 추이를 비교하면 은행 및 비은행 예금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생명보험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가 둔화

- 생명보험회사는 약관대출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채권이 증가하였고, 손해보험회사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채권이 증가
 - 약관대출 및 신용대출의 경우 장기저축성보험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대출상품별 증가추이에 차이가 발생
- 또한 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된 한편, 그 동안 가계의 대출수요가 높게 유지되고 있어서 비은행 예금기관의 대출이 빠르게 성장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마련을 목적¹⁾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2010년의 경우 주택매매 부진 속에 전세가격이 전년대비 10.6% 상승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

〈표 2〉 보험회사 대출채권 추이

(단위: 조원, %, 배)

	2001년말(A)	2003년말	2007년말(B)	2008년말	2010년말(C)	C/A	C-B
생명보험회사 (가계대출 비중)	39.4 (69.5)	45.3 (76.8)	56.4 (75.2)	62.7 (74.5)	66.3 (72.8)	1.68	9.9 ³
부동산담보	8.5	10.6	15.2	16.6	16.1	1.89	0.9
약관	10.9	16.9	25.7	28.7	31.8	2.92	6.1
신용	16.3	13.7	11.4	13.4	14.5	0.89	3.1
손해보험회사 (가계대출 비중)	4.3 (65.8)	6.3 (73.7)	11.3 (69.1)	13.2 (68.3)	17.3 (64.3)	4.02	6.0
부동산담보	1.4	2.8	5.2	6.1	8.0	5.71	2.8
약관	0.8	1.7	3.2	3.6	4.6	5.75	1.4
신용	1.4	0.9	0.8	1.2	1.7	1.21	0.9

주: 1)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보험회사 가계대출은 공제조합 가계대출을 포함하지만, 금융감독원은 해당 부분을 제외

2) 대출상품별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구분 불가

3)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콜론 및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기타 대출이 감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본고는 보험회사 가계대출 증가율이 예금기관보다 낮은 이유를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보유동기(공급측면)와 가계의 대출 금융기관 선택측면(수요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함.

- 공급측면에서 보험회사가 대출채권을 보유할 동기가 크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가계대출을 늘릴 유인이 적어 대출채권 증가속도가 느릴 가능성 검토
- 수요측면에서 소비자의 타 금융기관 대출상품에 대한 선호유인이 있는지를 검토

1) 가계금융조사(2010), 통계청

2.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보유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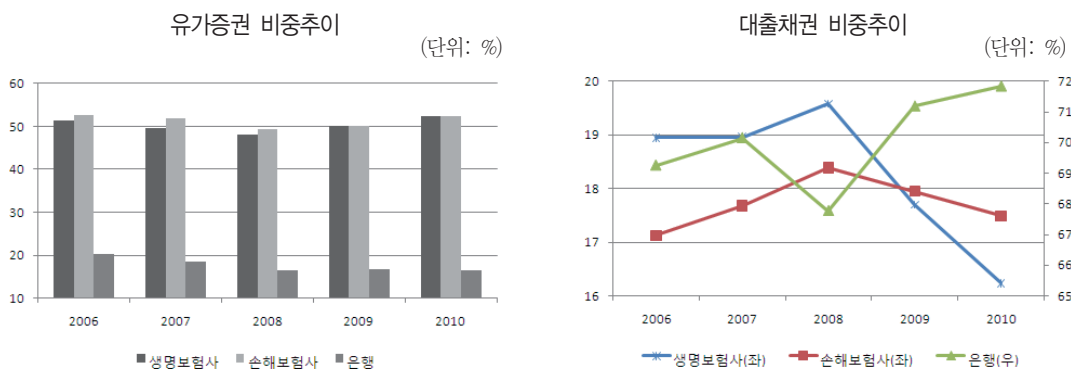


〈유가증권과 대출채권 보유비중〉

■ 보험회사의 경우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을 주 자산운용수단으로 활용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 대출채권을 보조적으로 활용

- 보험회사는 총 자산의 약 50%를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구성하여 유가증권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약 20%를 대출채권으로 운용
-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직후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자 보험회사는 유가증권 비중을 줄이고 대출채권 비중을 늘렸으며, 금융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대출채권 비중을 다시 축소시킴.
 - 생명보험회사 대출채권 비중의 경우 2007년말 18.9%에서 2008년말 19.6%로 증가하였는데 2010년에 이르러 다시 16.2%로 감소

〈그림 1〉 은행 및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및 유가증권 비중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 은행의 경우 대출채권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 가계대출 비중을 줄임.

- 은행은 자산의 약 70%를 대출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금융위기 발발 직후 대출채권 비중을 2007년 70.2%에서 2008년 67.8%로 줄였고 경기회복에 따라 2010년 71.8%로 늘림.

- 전체 가계대출에서 은행의 비중과 더불어 은행 자산에서 가계대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계 대출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 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임

■ 은행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차이는 이들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전통적인 금융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임

- 은행의 경우 예금 및 대출서비스를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로 제공하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대출을 주요 자산운용수단으로 사용

〈유가증권과 대출채권 투자 성과〉

■ 샤프비율은 위험 대비 투자수익을 나타내는데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대출채권 샤프비율이 유가증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유가증권과 대출채권 투자수익률의 표준편차가 동일하나 대출채권의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이고,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수익률은 비슷하나 대출채권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낮았기 때문

〈표 3〉 보험회사의 투자성과

(단위: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유가증권	대출채권	가중평균	유가증권	대출채권	가중평균
FY2004	수익률	6.2	10.1	7.3	8.1	8.3	8.2
FY2006	수익률	5.7	9.3	6.7	7.1	7.8	7.3
FY2008	수익률	4.3	8.6	5.5	3.8	7.0	4.8
	평균	5.6	9.1	6.6	7.6	8.0	7.7
6개년	표준편차	0.8	0.8	0.8	2.7	1.5	2.2
	샤프비율2)	1.5	6.2	2.9	1.2	2.5	1.6

주: 샤프비율=(평균수익률-무위험수익률)÷수익률 표준편차

자료: 조영현(2011), 보험연구원 재무분석 7호, 인용

〈유가증권과 대출채권 위험계수〉

■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에 따르면 금리리스크와 신용리스크 측면에서 대출채권의 리스크 계수가 유가증권과 같거나 또는 낮기 때문에 요구자본량을 감소시킬 동기를 가진 보험회사는 대출채권 보유 비중을 늘릴 유인이 있음.

- 채권에 적용되는 신용위험계수가 0.8~6%, 국고채는 0%가 적용되는 반면, 주식은 12%가 적용되는데 유동성 및 분산도 기준 충족 시 8% 적용
- 대출채권의 경우 신용위험계수가 대출상품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각각 0.8~6%와 1.4%가 적용되고, 약관대출은 0% 적용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성과 및 요구자본량 측면에서 보험회사는 대출채권 보유를 늘릴 유인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또는 비은행 예금기관에 비하여 대출채권 증가속도가 느린 것은 다른 이유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

- 예를 들면, 은행은 전통적으로 예금대출서비스를 중심으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고 채권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계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보험회사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음.

3. 보험회사의 대출상품 선택에 대한 선호



■ 대출수요 측면에서 보험회사 대출상품보다 은행 또는 비은행 예금기관 대출상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존재하는지 검토함.

〈보험회사와 은행의 대출금리〉

■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를 비교한 결과 은행과 보험회사의 금리차이는 크지 않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

- 대출상품별 금리를 비교한 결과 은행과 보험회사의 금리차이는 은행간 금리차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
- 한편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 또는 보험회사보다 대출금리가 매우 높는데 이는 대출서비스 대상이 은행 또는 보험회사와 차이가 있음을 의미

〈표 4〉 보험회사와 은행의 대출상품별 금리

(단위: %)

금융기관	회사명	대출금리		
		부동산담보 (고정)	부동산담보 (변동)	신용
생명보험회사	삼 성	5.2 ~ 5.85	4.92 ~ 6.62	7.9 ~ 14.9
	교 보	-	4.11 ~	8.1 ~ 12.8
	대 한	국고채 3년물+2.9	CD +3.1	8.4 ~ 16.0
손해보험회사	삼 성	5.18 ~	4.78 ~ 6.18	9.5 ~ 14.5
	현 대	5.03 ~ 6.23	4.53 ~ 5.73	-
	동 부	6.47 ~ 7.27	5.67 ~ 6.47	7.0 ~ 13.0
은 행	국 민	6.40 ~ 6.87	6.67 ~ 7.02	7.0 ~ 11.8
	신 한	7.80 ~ 8.70	6.55 ~ 7.43	9.0 ~ 13.5
	우 리	5.78 ~ 6.15	5.59 ~ 5.98	-
저축은행 ²	솔로몬	-	9.0 ~ 15.5	14.7 ~ 18.4
	서 울	-	8.5 ~ 12.2	-
	현대스위스	-	7.8 ~ 11.0	14.2 ~ 16.5

주: 1. 2011.4월기준, 은행 및 보험회사의 고정금리는 일정기간 경과 후 변동금리로 전환

2. 저축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여부가 불분명하고, 대부분의 경우 대출기간이 5년 미만인데 서울 및 현대스위스 저축은행만 대출기간이 각각 15년과 30년

자료: 저축은행중앙회 및 각사 홈페이지

■ 대출금리 측면에서 가계가 은행의 대출상품을 보험회사의 대출상품보다 선호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보험회사의 대출고객과 비은행 예금기관의 대출고객은 같지 않아 대출금리로 두 기관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

〈대출서비스의 접근성〉

■ 은행 및 비은행 예금기관은 예금·대출서비스를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계의 대출 서비스 접근성이 보험회사보다 높음.

- 2010년말 기준 출장소를 포함한 은행 점포수는 7,465개에 달하나,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지점 수는 각각 1,383개와 469개에 그침.

- 가계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직원 권유 등이 작용²⁾하기 때문에 평소 대출서비스 접근성이 높은 금융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은행은 입출금계좌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록이 1~2년 이상인 보험상품 보유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대출고객군이 제한됨
- 보험회사의 잠재 대출고객군이 은행에 비해 작음
- 이러한 대출서비스 접근성 차이가 은행과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증가 속도 차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

4. 요약 및 시사점



- 투자성과 측면에서 대출채권과 유가증권을 비교하였을 때 대출채권의 샤프비율이 유가증권보다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대출채권을 늘릴 동기가 있음.
- 또한 요구자본량 측면에서도 보험회사는 대출채권의 비중을 높일 유인이 충분히 있음.
- 그런데 가계는 대출금리, 대출서비스 접근성, 대출심사 편이성을 고려해서 대출상품을 선택하는데, 보험회사 대출상품은 은행 또는 비은행 예금기관에 비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 대출금리 측면에서 보험회사가 은행보다 크게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저축은행의 경우 보험회사와 대출고객군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금리 차이로 인해 대출증가속도의 차이가 설명되기 어려움
- 보험회사는 은행 및 비은행 예금기관과 전통적 금융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대출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음.
- 보험회사는 금융업권간 업무영역 확대 추세에 대응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구성에서 대출채권의 비중을 높이하고자 할 경우 대출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kiri**

2) Will Mayne(2010), "What Consumers Want: Mortgage and Personal Loans in South Korea 2010", DataMonitor



미국 판매채널 특화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비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 유진아 연구위원

요약

■ 국내 손해보험의 경우 온라인 판매채널을 특화한 보험회사가 2001년부터 시장에 진입한 이후 다양한 판매채널이 생기면서 보험회사들의 점유비나 보험영업 성과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2010년 보험소비자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92.6%가 대면채널을 활용하고 있지만, 향후 인터넷, TM 등 직판채널 활용을 선호할 국민이 14.4%로 늘어나고 있어 개인보험시장에 더 큰 채널변화가 예상됨.
- 개인손해보험상품은 가격탄력도가 크기 때문에 고객지향성을 고려한 판매채널 전략을 수립 및 운용할 필요가 있음.

■ 본고는 미국 개인보험시장에 있어서 주된 판매채널을 활용하는 회사를 전속채널회사, 대리점채널회사, 직판채널회사로 구분하고, 채널의 변화와 각 그룹별 대표적인 2개 회사를 선정하여 보험료 성장성과 보험영업성과의 차이를 분석함.

- 전속채널회사가 개인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최근 인터넷 등을 활용한 직판채널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성장률(직판채널회사 > 전속채널회사, 대리점채널회사), 보험영업성과(전속채널회사 > 대리점채널회사, 직판채널회사)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들도 판매채널의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상품경쟁력과 영업수익성을 확보하여 계속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업모형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주택화재보험, 상해보험 등 개인보험 고객들의 상품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약관의 단순·명료화 등 상품체계 개선과 완전판매를 통한 자사의 신뢰도 제고와 이를 통해 지속성장할 수 있는 고객중심 사업모형으로 전환이 필요함.

1. 검토배경



■ 2001년 온라인 자동차 보험회사가 처음으로 판매채널을 특화해 영업하기 시작한 이후, 인터넷, TM 및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가계성 보험이 빠르게 성장한 가운데 기존 보험회사는 대면채널과 비대면채널을 혼합하여 대응함.

● 손해보험 전체 보험료에서 비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료 점유비는 2004년 4.0%에서 2008년 9.2%로 증가함.

－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모든 보험회사가 인터넷 등 직판채널과 설계사 또는 대리점을 활용한 대면채널을 활용하고 있으며 직판채널 점유비는 2004년 8.8%에서 2008년 19.4%로 크게 상승함.

● 이러한 추세로 볼 때 국내 개인보험시장은 미국이나 유럽국가처럼 인터넷 등의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상품판매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개인보험시장을 중심으로 판매채널이 다양하게 변화되어 감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사의 상품에 적합한 판매채널을 활용하여 적절한 수익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경영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개인보험시장의 경우 판매채널을 선택할 때 가격의 차별성을 크게 고려하는 것¹⁾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품과 가격의 차별성을 감안한 채널전략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 본고는 최근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종신소득전환 정책과 시장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미국의 개인보험시장 판매채널을 전속채널회사, 대리점채널회사 및 직판채널회사로 구분²⁾하였고, 각 채널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6개 보험회사를 선택하여 분석하였음.

1)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손해보험의 채널별 선호이유를 질문한 결과 대면채널 선호자는 저렴한 가격요인을 11.1%만 선택한 반면, 직판채널 선호자는 저렴한 가격요인 때문에 선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7.1%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판채널 선호자는 가격민감도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2) 개별보험회사의 주력판매채널과 경영성과지표는 AM BEST, BESTS KEY RATING GUIDE: Property/Casualty United States & Canada, 2010년 판을 보면 알 수 있음.

- All State Insurance Group³⁾과 State Farm Group⁴⁾은 전속채널회사, Progressive Agency Pool⁵⁾ 및 Travelers Group⁶⁾은 대리점채널회사, 그리고 GEICO Indemnity⁷⁾와 USAA Group⁸⁾은 직판채널회사로 분류하고, 이들 회사의 2005~09년 보험료성장률과 보험영업성과(합산비율)를 비교, 분석하였음.

〈표 1〉 채널별 분석대상 보험회사

취급계약	보험상품 중개자		분석대상 보험회사
	대형보험중개사	보험중개사 (Marsh, Aon)	
기업보험 계약	중소보험중개사 독립대리점	독립대리점으로 취급계약에 따라 중개사와 대리점의 입장을 나누어 사용	대리점채널회사: Travelers Group, Progressive Agency Pool
개인보험 계약	전속대리점	소규모 대리점 다수	전속채널회사: State Farm Group, All State Insurance Group
	직판채널회사	우편, 전화, 인터넷 등	직판채널회사: GEICO Indemnity, USAA Group

자료: 損害保險總合研究所(2010.3), 『歐米主要國における保險規制, 監督, 市場動向について』, p. 183.

- 3) All State Insurance Group의 2009년 상품구조는 개인용 자동차의 배상책임보험 38.7%, 물적사고담보 30.0%, 주택종합보험 25.2%, 기타 보험 6.1%임.
- 4) State Farm Group의 2009년 상품구조는 개인용 자동차의 배상책임보험 36.9%, 물적사고담보 24.8%, 주택종합보험 27.1%, 기타 보험 11.2%임.
- 5) Progressive 보험그룹은 대리점과 직판채널을 병용하여 개인보험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회사로 Agency Pool, Direct Pool, Commercial Auto Group 영업부문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음. 이중 대리점을 주로 활용하는 회사는 18개사(전체 보험료수입액 140억 달러의 68%)이고 직판채널회사는 11개사임. Agency Pool은 미국 전역의 30,000개 이상의 독립대리점과 중개법인을 통해 보험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실적을 합산한 것이며, 2009년 상품구조를 보면 개인용 자동차보험 94.3%(배상책임담보와 물적손해담보가 각각 55.8%, 38.5%), 기타 보험이 7.8%임.
- 6) Travelers Group의 2009년 상품구조는 주택종합 14.7%, 개인용자동차보험 20%(배상책임담보와 물적사고담보가 각각 11.2%, 8.8%), 산재보험 12.4%, 상업종합보험 13.7%임.
- 7) GEICO Indemnity Company의 2009년 상품구조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담보 66.2%, 물적사고담보 33.7%임.
- 8) USAA Group의 2009년 상품구조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67.6%(배상책임담보 37.0%, 물적사고담보 30.6%), 기타 보험 5.6%임.

2. 미국의 판매채널 유형별 손해보험회사 구분 및 영업 현황



가. 채널유형별 손해보험회사의 구분

■ 전속채널회사(direct company)는 전속대리점(exclusive agent 또는 captive agent)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자사의 대리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정의할 수 있으며, State Farm Group, Farmers⁹⁾ 및 Allstate Insurance Group이 대표적임.

- 이들 보험회사는 자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전속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리스크 선택이나 보험료 산정 등 언더라이팅 기준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전속대리점은 통상 개인보험을 주로 취급하며, 평균종업원이 3~4명인 소규모 대리점이 다수로 현재 미국에서 3~4만 개의 전속대리점이 존재함.
 - － 최근에 보험회사가 특정 주(州)의 보험사업을 철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전속대리점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대리점채널회사(agency company)는 독립대리점(general agency) 또는 중개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통해 자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Chartis¹⁰⁾, Travelers Group, Progressive Agency Pool이 대표적 회사임.

- 독립대리점을 활용하는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정책은 회사별로 큰 차이가 있으며 보험요율도 빈번하게 변경되는 특징이 있음.
 - － 또한 일부 대리점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고 있기도 함.
- 독립대리점은 고객의 입장에서 개별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최선의 보험상품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함.
 - － 미국의 독립대리점 수는 2008년 현재 37,500여개로 추정되며, 평균종사자수는 12~13명이나 개인이 경영하는 개인대리점과 미국 전지역에서 경영하는 대규모 대리점도 있음.

9) Zurich Financial Services Group의 웹사이트에 의하면 Farmers는 자동차보험과 주택종합보험 등 개인보험(personal lines) 중심의 보험회사로 소개되어 있음.

10) 구 AIG로, 2009년에 변경되었음.

- 또한 대리점은 개별보험회사와 각기 다른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ACORD¹¹⁾가 정한 대리점과 보험회사간의 데이터교환 표준규격과 보험료 견적 등 계약 및 사고 관리 S/W를 사용하여 대리점업무를 처리함.

■ 직판채널 회사(direct response company)는 전용 인터넷, 전화 또는 다이렉트 메일 등을 이용하여 고객과의 비대면방식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GEICO(Government Employees Insurance Company) Indemnity, USAA(United Services Automobile Association) Group 등이 대표적임.

- 이들 회사는 주로 가계성보험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는데, GEICO사가 포함된 Berkshire Hathaway가 개인용자동차보험의 7.6%를 점유하고 있으며, USAA는 자동차보험과 주택종합보험(homeowners policy)에서 각각 3.8%, 4.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표 2> 참조).

■ 채널 유형별 자동차보험 및 주택종합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속채널회사에 해당하는 보험회사의 비중이 가장 높고 직판채널회사와 대리점채널회사가 그 뒤를 이음.

〈표 2〉 미국 개인손해보험시장의 회사별 점유비(2009)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개인자동차보험			주택종합보험		
	보험그룹	보험료	M/S	보험그룹	보험료	M/S
1	State Farm Mutual	30,086	18.6	State Farm Mutual	14,737	21.6
2	Allstate	17,249	10.5	Allstate	6,837	10.0
3	Berkshire Hathaway(GEICO)	13,481	8.2	Berkshire Hathaway(GEICO)	5,066	7.4
4	Progressive	12,257	7.5	Progressive	3,461	5.1
5	Zurich Insurance(Farmers)	10,442	6.4	Zurich Insurance(Farmers)	3,082	4.5
6	Nationwide Group	7,392	4.5	Nationwide Group	2,969	4.4
7	Liberty Mutual Holding	7,160	4.4	Liberty Mutual Holding	2,909	4.3
8	USAA Insurance Group	6,747	4.1	USAA Insurance Group	1,772	2.6
9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3,364	2.1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1,460	2.1
10	American Family Insurance	3,308	2.0	American Family Insurance	1,122	1.7

자료: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2011), The Insurance FACT BOOK 2011, p. 62, p.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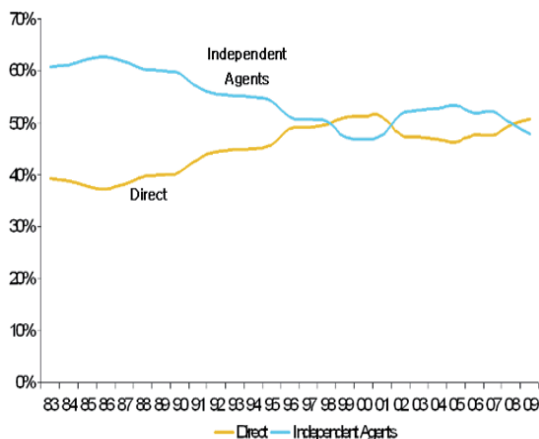
11) ACORD(Association for Cooperation Operations Research and Development)는 1970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생명 및 건강보험, 재보험의 청약서 등을 표준화하고 보험회사와 중개자간의 데이터 교환 표준규격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의 경우 전속채널회사인 State Farm, Allstate, Farmers의 점유율이 각각 18.6%, 10.5%, 6.4%인 반면, 직판채널회사인 GEICO와 USAA의 점유율은 각각 8.1%와 4.1%이고, 대리점채널회사인 Progressive는 7.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주택종합보험의 경우에도 State Farm(전속), Travelers(대리점), USAA(직판)의 점유율은 21.6%, 4.5%, 4.4%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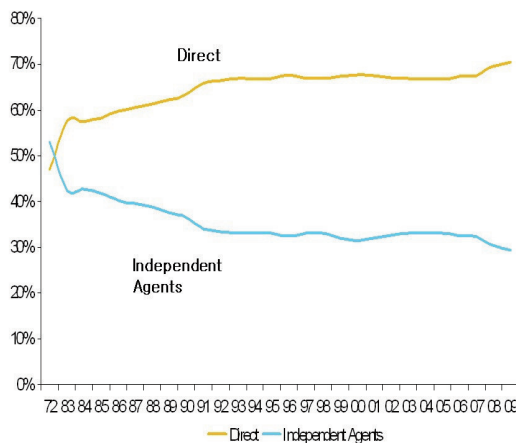
나. 개인손해보험시장의 채널변화 추이

- 미국 개인손해보험시장의 판매채널은 1980년대 초까지 주로 독립대리점을 활용하는 보험회사와 보험회사가 판매채널에 대한 영향력을 직접 미치는 전속대리점채널회사 및 직판채널회사의 비중이 50%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IT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계약자들과 중개상 없이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회사의 실적이 1980년대 중반부터 호전되기 시작하여 2009년 현재 70% 수준까지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직판채널의 성장이 판매채널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

〈그림 1〉 미국 전체 손해보험의 판매채널 변화추이



〈그림 2〉 미국 개인손해보험의 판매채널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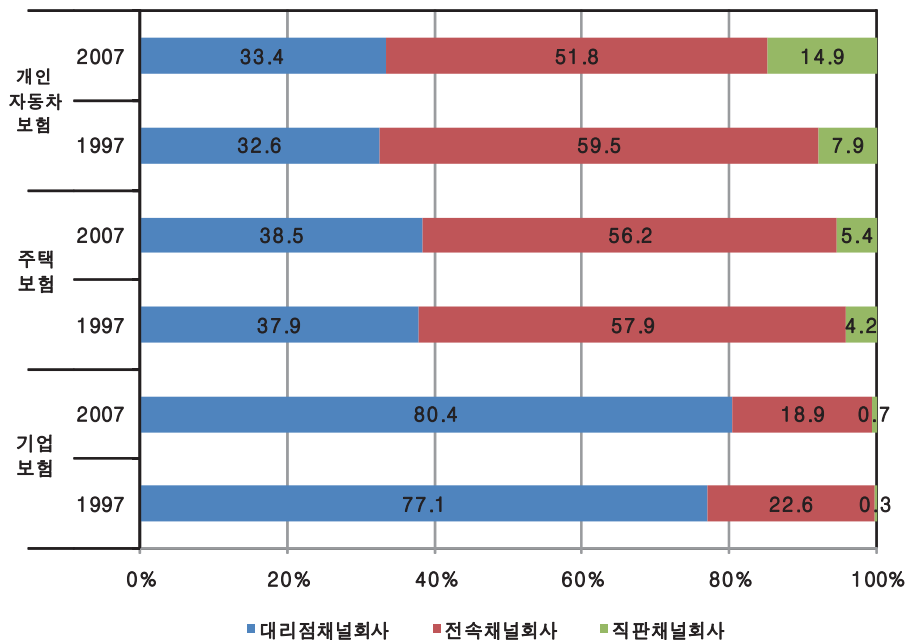
주: Direct에는 전속채널회사와 직판채널회사의 실적이 포함된 자료임.

자료: Robert P. Hartwig(2010.11.11), 『Personal Lines P-C Insurance Markets : Challenges & Opportunities for 2011 & Beyond,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pp. 63-64.

- 2007년 기준 개인자동차보험의 경우 전속채널회사의 비중이 51.8%로 1997년에 비해 7.5%p 감소한 반면, 대리점채널회사는 0.8%p, 직판채널회사는 7.0%p 증가하였음.

- 주택보험의 경우에도 판매채널의 변화가 개인자동차보험과 유사하나, 직판채널의 비중변화는 미미한 수준임.
- 기업성보험의 경우에도 전속채널의 비중이 감소하고 대리점채널의 비중(2007년 80.4% 점유)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임.

〈그림 3〉 판매채널별 보험회사 점유비 추이



자료: 損害保險總合研究所(2010.9), 『歐米諸國における業務標準化等のための共同取組制度とその法的位置づけについて』, p. 46.

3. 미국의 판매채널 유형별 손해보험회사 경영성과 특성

가. 보험료 성장성

- 미국 개인보험시장의 주를 이루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과 주택종합보험의 경우 최근 들어 성장성이 크게 둔화되고 있음.

- 개인자동차보험의 경우 5년 평균 성장률이 -0.4%로 나타났고, 2009년에는 -0.8%로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음.
- 주택종합보험은 2006년까지는 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그 이후 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되었고, 최근 들어 성장세가 점차 회복되어 2009년에는 2.3% 성장률을 기록함.

〈표 3〉 미국 개인손해보험의 보험료 성장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성장률
개인자동차보험	보험료	159,761	160,438	159,672	158,618	157,354	
	성장률	1.4	0.4	-0.5	-0.7	-0.8	-0.4
주택종합보험	보험료	52,466	55,084	55,585	56,404	57,679	
	성장률	5.8	5.0	0.9	1.5	2.3	2.4
손해보험전체	보험료	426,794	448,931	446,737	439,941	422,860	
	성장률	0.4	5.2	-0.4	-1.5	-3.9	-0.2

주: 보험료는 보유보험료(net premium written)를 의미함.

자료: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2011), The Insurance FACT BOOK 2011, p. 61, p. 89.

■ 이와 같은 개인손해보험시장의 성장세에 비추어 채널을 달리하고 있는 회사들의 성장성을 비교한 결과, 인터넷, 이메일 등을 활용하는 직판채널 보험회사의 성장성이 다른 채널을 활용하고 있는 보험회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4〉 참조).

- 전속대리점을 주된 판매채널로 하는 Allstate와 State Farm의 5년 평균성장률(CAGR)은 각각 -1.1%, 0.8%이며, 독립대리점을 주로 하는 대리점채널회사인 Progressive와 Travelers의 경우도 -4.7%, 0.0%에 그침.
- 반면, 직판채널회사인 GEICO와 USAA는 미국 전체 개인보험시장의 성장률(〈표 3〉 참조)보다 훨씬 높은 5% 내외로 성장해 전통채널에 비해 매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은 직판채널 보험회사의 성장은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음.

- JD Power의 2010년 조사¹²⁾에 의하면 미국의 젊은 소비자는 대리점과 같은 전통적 채널을 활용하기보다는 인터넷 등 신채널을 활용할 의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채널이 개인보험시장의 주된 채널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음.

12)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2011.3), "Buying Insurance : Evolving Distribution Channels", THE TOPIC, p.2

- Y세대(20~30대)는 58% 이상이 보험회사 웹사이트를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의향이 있다고答한 반면, 베이비 붐 세대(50~60대)는 46%로 나타남.
- 실제 가입에 있어서는 Y세대는 48%, 베이비 붐 세대는 28%를 가입하고 있어 향후 인터넷 채널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표 4〉 판매채널 특화회사별 보험료 성장률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전속 채널회사		대리점 채널회사		직판 채널회사	
		Allstate	State Farm	Progressive	Travelers	GEICO	USAA
2009 보험료		26.2	51.0	10.2	21.4	3.7	10.4
성장률 (전년대비)	2006	1.8	1.6	-8.8	2.3	18.2	4.7
	2007	-0.7	-0.4	-6.5	1.4	11.5	2.2
	2008	-2.9	1.0	-3.5	-1.8	13.8	4.4
	2009	-2.6	2.2	0.0	-1.8	12.1	8.3
	CAGR	-1.1	0.8	-4.7	0.0	13.9	4.9

주: CAGR는 2005년부터 2009까지의 성장률임.

자료: AM BEST, BEST's KEY RATING GUIDE: United States & Canada, 2010 Edition, 각사 자료 활용하여 작성함.

나. 보험영업 성과

■ 미국 개인손해보험의 보험영업성과를 손해율과 사업비율의 합인 합산비율(combined ratio)로 살펴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합산비율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손해율의 상승에 기인하고 있음.

- 개인자동차보험의 영업성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회사가 보험료 100달러를 받은 경우 74달러는 보험금으로 지급, 25달러는 사업비(수수료 17달러)로 사용하며, 투자수익으로 7달러를 얻어 세전 7달러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2008년).
- 주택종합보험은 보험료 100달러에 대해 84달러를 보험금으로 지급, 31달러는 사업비(수수료 23달러)로 사용함으로써 보험영업수지가 15달러 적자로 나타났으며, 이에 투자수익 4달러를 합해도 10달러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2008년).

〈표 5〉 미국 개인손해보험의 합산비율 추이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평균
개인자동차보험	배상책임	98.1	98.5	101.7	103.2	106.6	101.6
	기타담보	90.7	91.4	93.4	95.8	93.4	92.9
주택종합보험		100.5	89.0	95.7	116.6	105.9	101.5
손해보험전체		101.5	92.5	95.5	105.1	101.1	99.1

주: 합산비율은 계약자배당 후 합산비율임.

자료: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2011), The Insurance FACT BOOK 2011, p. 61, p. 89.

■ 주요 판매채널 특화회사들의 보험영업성과에서 전속채널회사에 속한 보험회사의 합산비율이 대리점채널과 직판채널에 속한 보험회사들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표 6〉 판매채널 특화회사별 합산비율 비교

(단위: %)

구분		전속 채널회사		대리점 채널회사		직판 채널회사	
		Allstate	State Farm	Progressive	Travelers	GEICO	USAA
연도별 합산율	2005	103.6	101.4	107.9	101.6	86.8	90.7
	2006	85.1	93.5	89.9	86.5	88.8	83.0
	2007	91.3	98.8	91.1	87.7	95.6	90.7
	2008	100.4	112.9	109.2	90.5	98.2	95.1
	2009	97.6	107.3	110.3	89.4	99.7	87.8
5년 평균	손해율	70.3	69.8	69.6	60.8	75.3	75.1
	사업비율	25.3	23.8	21.7	30.3	18.5	14.4
	합산율	95.6	93.5	91.3	91.1	93.8	89.5

자료: AM BEST, BEST's KEY RATING GUIDE: United States & Canada, 2010 Edition, 각사자료 활용하여 작성함.

- 전속채널회사의 5년 평균 손해율은 70% 내외, 사업비율은 25% 내외로 나타났으나, 직판채널회사의 손해율은 75% 수준, 사업비율은 18% 이하를 기록함.
- 따라서 판매채널별 보험영업 성과의 수익성(100%-합산비율)은 직판채널에 속한 회사가 최대 10% 이상인데 비해 대리점채널에 속한 회사는 9%, 전속채널에 속한 회사의 경우 7% 이하로 수익성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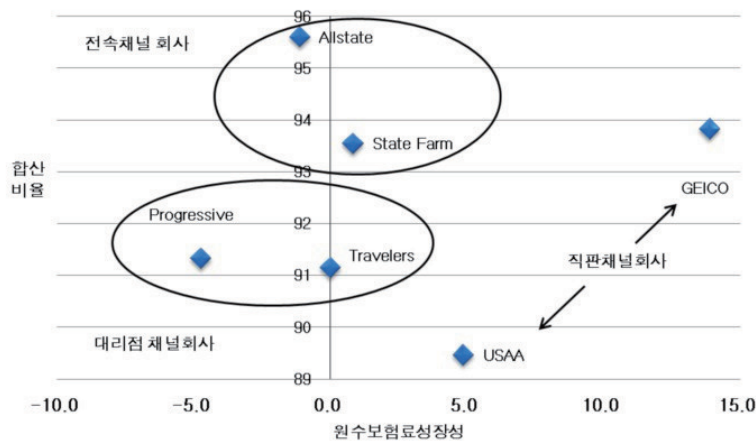
4. 요약 및 시사점



■ 최근 큰 변화과정을 거치고 있는 미국 개인보험시장의 판매채널을 살펴볼 때, 채널별 특성을 달리하는 보험회사의 경영성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개인보험시장에서의 판매채널은 인터넷 등 직판채널이 주요 채널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직판채널을 이용하는 보험회사의 보험료 성장률은 전속채널과 대리점채널에 속한 보험회사에 비해 높고 보험영업 성과인 합산비율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미국 채널특화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료 성장성과 합산비율 비교(5년 평균, %)



■ 국내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수단(TM) 등을 이용한 보험가입이 2001년 자동차보험에서 최초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래 홈쇼핑,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보험상품 판매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다른 보험종목으로의 확산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임.

● 이에 따라 가격탄력성이 큰 개인손해보험시장에서 판매채널전략은 보험회사의 성장과 수익성 제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 2010년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92.6%가 대면채널을 활용하고 있고 단지 7.7%만이 인터넷 등 직판채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에도 14.4%에 달하는 응답자가 직판채널을 선호할 것이라고 답함.

– 지금까지 보험소비자들의 비대면채널 활용이 미진한 이유는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과 수많은 담보특약의 첨부로 인한 상품구조의 복잡성을 들 수 있음.

- 따라서 개인손해보험시장에서의 인터넷 등 직판채널을 통한 판매 활성화와 이를 통한 보험회사의 성장을 위하여 개인보험 상품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고객의 접근성과 상품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채널 특화 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성장성과 보험영업성과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국내 보험회사들도 현재의 경영여건과 향후 소비자의 니즈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중심의 새로운 사업모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개인손해보험시장에서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판매채널이 활용되고 있지만 다른 상품으로의 확산을 위해 채널별 특화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각 채널 간 영업성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멀티채널화를 통한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성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판매채널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함. **kiri**



자동차보험 다계층화와 언더라이팅 활성화

기승도 수석연구원

요약

■ 손해율과 공동인수물건 구성비 추이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보험 언더라이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손해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기능이 강화되어 공동인수물건 구성비가 높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인수물건 구성비가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남.

■ 언더라이팅 기능이 약화될 경우 도덕적 해이 증가로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음.

- 실제위험도보다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위험계층의 경우, 자동차 운전을 함부로 하더라도 위험도보다 낮은 보험료가 적용된다는 인식 때문에 운전을 함부로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반면에 언더라이팅 기능을 강화할 경우 민원이 증가할 수 있어 언더라이팅 기능 강화 여부에 따라 손해율 악화 또는 민원발생이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음.

■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하면서 손해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Tier Plan과 같은 자동차보험 다계층화와 함께 언더라이팅 기능을 활성화하여 시장 내에서 공동인수물건이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정책 검토가 필요함.

- 위험도에 부합한 다계층화(표준계층, 우량계층, 불량계층, 공동인수계층 등으로 계층의 종류를 확대)를 유도하고, 보험회사가 자유롭게 언더라이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장 내에서 공동인수물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함.

1. 검토배경



■ FY2010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자동차보험 3대 운영기능 중 하나인 언더라이팅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도덕적 해이가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 적정한 요율산출, 언더라이팅, 보상이라는 3가지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자동차보험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음.
- 이들 3가지 기능 중에서 언더라이팅 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를 관리가 되지 않아 적자를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고, 낮은 보험료를 내는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증가로 전체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2010년 1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손해율 악화 원인 중 하나인 언더라이팅 기능 부재 문제는 해소되지 못함.

- 자동차사고 발생률 감소 및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이루어진 반면 언더라이팅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본고는 자동차보험 언더라이팅이 시장 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공동인수물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서 우선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산업의 언더라이팅 기능이 실제로 약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언더라이팅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시장 내에서 자연스럽게 공동인수물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다계층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자동차보험 상품종류 및 가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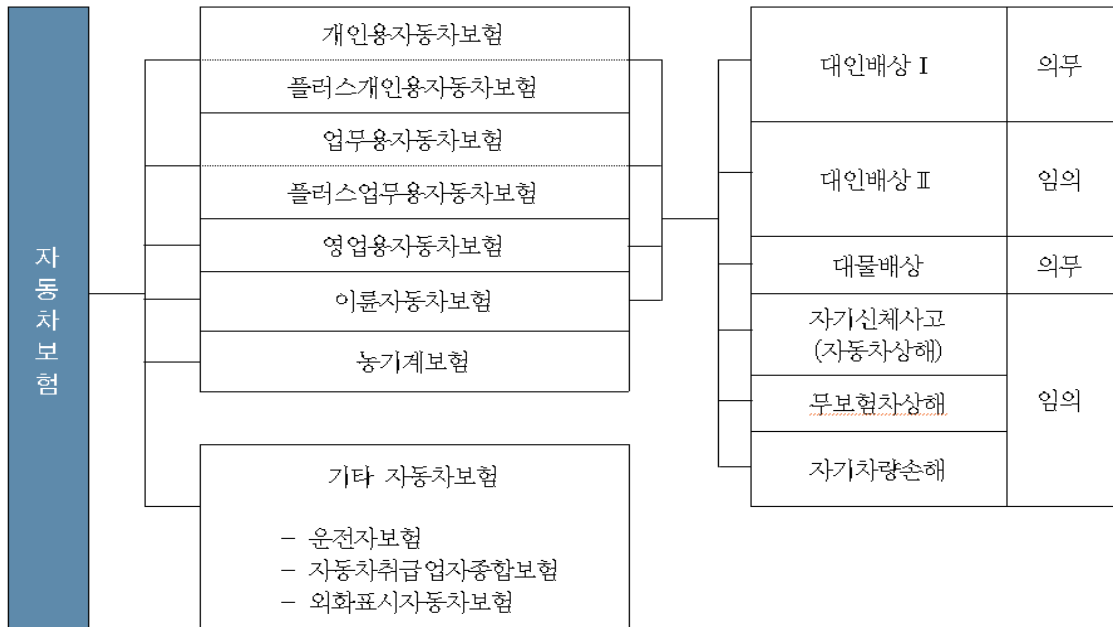


가. 자동차보험 상품 종류

■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상품은 크게 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의 3가지 범주임.

- 이들 자동차보험상품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무보험자 손해 담보로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어떤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 용도에 따라 3가지 범주 중 하나의 자동차보험에서 가입하고, 해당 자동차보험에서 6가지 유형의 사고위험담보를 선택하면 됨 (모든 보험회사 동일).

〈그림 1〉 자동차보험 종류 및 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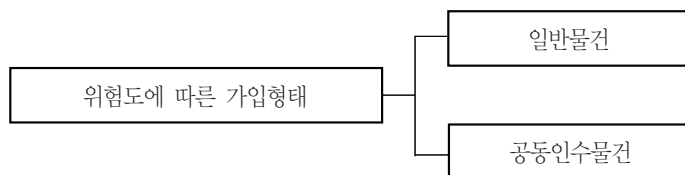


나. 인수기준¹⁾에 따른 계층구조

■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운전자²⁾는 운행위험도(또는 보험회사의 인수기준)에 따라 ‘일반물건’으로 가입하는 방법’과 ‘공동인수물건으로 가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 대부분 운전자는 ‘일반물건’으로 가입되는데, 특별히 운행위험도가 높은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들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음.
- 즉, 운전자의 과거 사고유무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사고위험도가 낮으면 일반물건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모든 보험회사들이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공동인수물건으로 가입하여야 함.

〈그림 2〉 손해보험회사의 인수조건에 따른 상품유형



주: 1) 일반물건은 손해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수락하는 계약임.
2) 공동인수물건은 모든 손해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한 계약임.

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스템

■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가입금액 1000만 원 한도)은 의무적으로 보험회사가 인수해야 함.

-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4조(계약체결의무)에 따라 책임담보 가입을 거절할 수 없음.

■ 책임담보(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 일부) 이외에 대인배상 II, 자기신체사고담보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등의 임의담보는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

- 위험도가 높은 운전자의 가입을 보험회사 모두가 거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는 공동인수물건 대상이 됨.

1)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자에게 가입을 허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2) 보험 또는 법적 측면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기명피보험자’이지만, 본고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운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공동인수물건 대상 운전자는 시중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료보다 다소 높은 가격(보험개발원이 산출하여 제공하는 공동인수물건 보험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이러한 절차에 따라 일반물건 또는 공동인수물건의 두 가지 유형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가입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

3. 자동차보험 언더라이팅 현황



■ 현재 자동차보험의 경우 주로 과거 사고기록을 이용하여 언더라이팅을 하고 있으며, 사고 이외에 운행 위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언더라이팅 변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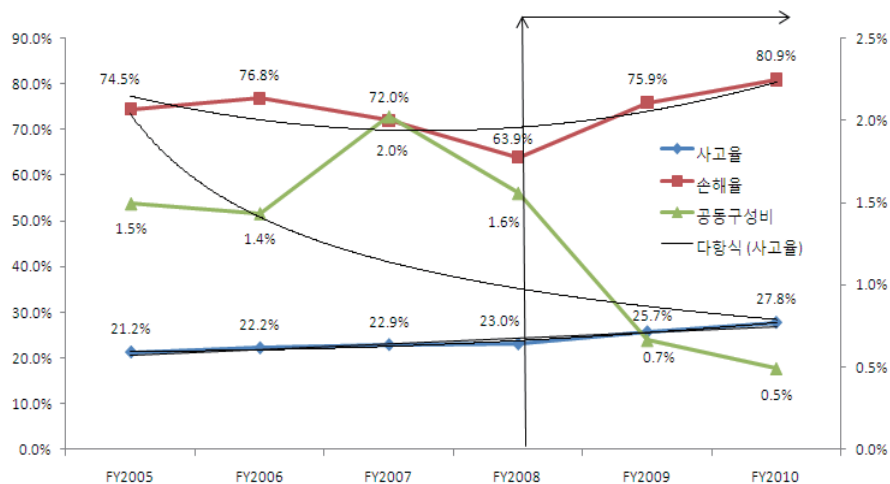
- 자동차보험 언더라이팅에 활용될 수 있는 변수들로는 요율변수, 요율변수에 도입되지 않은 지역, 신용도, 직업 등이 있음.
- 그러나 보험회사가 이들 변수를 사용한 언더라이팅 기준에 따라 인수를 거절할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한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향을 보임.
-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인수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과거 사고기록 이외의 변수 사용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어 자동차보험의 언더라이팅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2000년 이후 공동인수물건³⁾의 구성비 변화를 살펴보면, 언더라이팅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00년 이후 사고율과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공동인수물건 구성비는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3) 언더라이팅은 보험회사 자체의 경영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회사가 언더라이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공동인수물건 구성비 변화를 통해 시장 전체적으로 보험회사들이 언더라이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다. 즉, 모든 보험회사들이 손해율이 악화되어 언더라이팅을 강화한다면 인수거절 하는 물건이 증가하여 공동인수물건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공동인수물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시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림 3〉 사고율, 손해율, 공동인수물건 구성비 추이



주: 공동구성비 추이는 평균유효대수 기준임.

〈표 1〉 사고율(또는 손해율)과 공동인수물건 구성비 변화

연도	사고율	손해율	공동인수물건 구성비	
			평대 기준	수입보험료 기준
FY2005	21.22%	74.46%	1.49%	0.83%
FY2006	22.16%	76.79%	1.43%	0.93%
FY2007	22.87%	71.97%	2.02%	1.18%
FY2008	23.04%	63.90%	1.56%	0.75%
FY2009	25.72%	75.88%	0.66%	0.40%
FY2010	27.80%	80.92%	0.49%	0.35%

주: 1) 사고율, 손해율은 모두 증권별 기준임.

2) 개인용(플러스개인용 포함), 업무용(플러스업무용 포함) 및 영업용 전체 실적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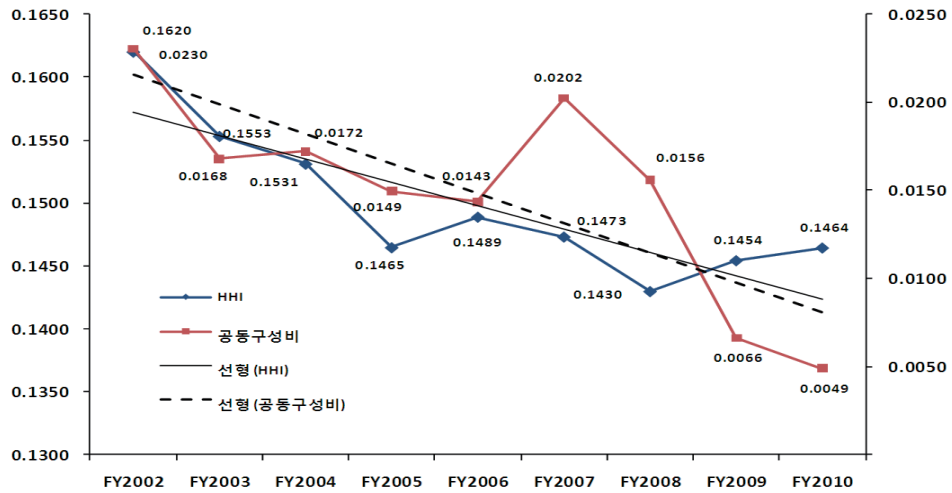
자료: 보험개발원, 월말보고서, 각 연도

- 손해율과 관계없이 공동인수물건 비중이 줄어드는 이유는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 경쟁’, ‘자동차보험 가입과 관련한 민원을 줄이려는 감독기관의 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HHI지수⁴⁾는 FY2002년 0.1620에서 FY2010년 0.1464로 줄어들었고 공동인수물건 구성비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쟁 증가가 공동인수물건 비중 축소에 대한 영향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4) HHI(Herfindal Hershman Index)는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별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모두 합한 값으로, HHI가 낮아질수록 시장집중도가 완화(경쟁이 심화)된 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4〉 경쟁정도와 공동인수물건 구성비 추이



주: 공동구성비(공동인수물건 구성비) 추이는 평균유효대수 기준임.

〈표 2〉 경쟁강도와 공동인수물건 구성비 변화 추이

연도	HHI	공동인수물건 구성비	
		평균유효대수 기준	수입보험료 기준
FY2002	0.1620	2.30%	2.04%
FY2003	0.1553	1.68%	1.67%
FY2004	0.1531	1.72%	1.02%
FY2005	0.1465	1.49%	0.83%
FY2006	0.1489	1.43%	0.93%
FY2007	0.1473	2.02%	1.18%
FY2008	0.1430	1.56%	0.75%
FY2009	0.1454	0.66%	0.40%
FY2010	0.1464	0.49%	0.35%
상관계수	—	60.8%	87.8%

주: 1) 사고율, 손해율은 모두 증권별 기준임.

2) 개인용(플러스 개인용 포함), 업무용(플러스 업무용 포함) 및 영업용 전체 실적기준임.

3) 상관계수는 HHI와 평균유효대수 구성비 및 수입보험료 구성비의 상관관계를 의미임.

자료: 보험개발원, 월말보고서, 각 연도

4. 언더라이팅 관련,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의 문제점



■ 소비자의 특성(니즈 및 위험도 특성 등)에 맞는 다양한 상품(또는 계층)이 부족함.

- 기승도·황진태(2011)⁵⁾에 따르면 현 자동차보험시장에는 3가지 종류의 세분시장이 존재하며, 각 세분시장마다 사고위험도와 상품만족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보험회사의 고객만족도 향상을 통한 충성도 제고와 위험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세분시장이 존재하므로 세분시장에 부합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임.
- 그러나 현재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와 위험도에 부합한 상품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인수기준에 따라 일반물건요율제도와 공동인수물건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계층(상품)구조에서는 위험도에 부합한 요율적용이 제한적임.

- 일반물건제도와 공동인수물건제도 외 기타 위험계층 소비자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두 계층으로만 운영되고 있음.
- 현행 두 계층에 따른 요율적용 방법은 요율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제한적이어서 위험도가 낮은 계층은 높은 보험료에 대한 불만, 위험도가 높은 계층은 운전을 태만히 하는 도덕적 해이 유발 소지가 큼.
 - 일반물건 및 공동인수물건 계층 이외에 위험도가 낮은 계층의 경우 높은 보험료에 대한 불만이 상존함.
 - 예를 들면, 과거에 사고를 내지 않았는데도 자동차보험료가 계속 인상된다는 불만계층이 늘어날 소지가 큼.
 - 자동차사고 위험도가 높아 많은 보험료가 부가되어야 하는 계층의 경우 도덕적 해이 발생가능성이 높아짐.
 - 시장가격기준보다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위험계층은 자신의 위험도보다 낮은 보험료가 적용된다는 인식 때문에 운전을 함부로 하는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수 있음.

5) 기승도·황진태(2011, 4),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 전략연구」, 보험연구원 경영보고서

- 기존 연구에 따르면 위험도가 높은 계약자에게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할 경우,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손해율이 더 높아진다고 함(Harrington, 1984).⁶⁾

■ 현재 자동차보험에는 인수유형에 따라 일반물건과 공동인수물건의 두 가지만 있어 언더라이팅 기능이 시장기능에 따라 작동할 여지가 낮음.

- 언더라이팅을 강화하여 공동인수물건이 늘어날 경우 민원이 증가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더라이팅을 억제할 경우 도덕적 해이 증가에 따른 손해율이 악화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음.

■ 공동인수물건과 관련한 시장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은 보험회사와 감독당국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

-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험료를 적용해야만 하는 부담감, 즉 손해율 악화를 감수하거나, 또는 비난을 감수하고 보험료를 인상해야 함.
- 감독당국은 자동차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는다는 소비자 민원 부담에서 자유롭기 어려움.

5. 시사점



■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을 제약하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여, 해당 제도가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함.
 - 보험업감독규정 등 자동차보험 관련 법규에 보험회사의 자유로운 언더라이팅을 보장하는 선언적 법률 규정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Harrington, S. E.(1984, 12), "The Impact of Rate Regulation on Automobile Insurance Loss Ratios: Some New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Vol. 3, pp. 182-202.
 Harrington, S. E(1984, 12)., "The Impact of Rate Regulation on Prices and Underwriting Results in the Property-Liability Insurance Industry: A Survey,"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51,

■ 시장기능에 따라 공동인수물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계층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Tier Plan(〈별첨〉 참조)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보험 계층(상품)구조를 현행 일반물건과 공동인수물건의 두 가지가 아닌 표준계층, 우량계층, 불량계층, 공동인수물건 계층 등 위험도에 따라 다양한 계층유형으로 구분하여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직업 등 다양한 요율변수를 사용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들의 계층(상품) 다양화에 대한 유도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등 다양한 요율변수를 사용하게 될 경우, 일반물건 계층 내에서 요율수준을 다양화할 수 있으므로 공동인수물건에 해당될 계약도 일반물건으로 흡수될 수 있음.
-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 상품개발 시 필요한 변수들을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변경하거나,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규정에서 표준약관대상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kiri**

〈별첨〉

〈표 3〉 미국의 Tier Plan제도(뉴욕 주 보험법 제2349조 Multi-Tier)

제 2349조 멀티 티어(Multi-tier : 다단) 프로그램		
A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자발 시장에서의 개인 승용차 보험을 하는 동일 회사 내에서 하나 이상의 요율수준을 지닌 다계층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및 보험사의 비즈니스 플랜이 본 법 제53조에서 명시한 강제 할당이 필요한 위험의 수를 감소시키는 경우
	2	프로그램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계층(tier)당 인수규칙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
	3	승인된 요율 계획에 부합되는 가산점 및 요금의 계층(tier) 하나당 기준에 적용 가능한 경우
	4	감독 당국이 제정한 규정에 프로그램이 일치하는 경우
B	승인된 다계층화(multi-tiering) 프로그램을 갖춘 보험사의 경우, 본법 제 3425조 (f)항의 조항은 다음에 설명된 2% 한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에 적용된다.	
	1	하나의 계층(tier)으로부터 보다 낮은 수준의 계층으로 이동된 모든 위험에는 비적용
	2	하나의 계층으로부터 보다 높은 등급의 계층으로 이동한 3%의 위험률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지급률 추이

조용운 연구위원 / 김미화 연구원

요약

■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민영의료보험을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인식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주력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률 관리에는 소홀한 면이 있었음.

- 보험회사는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표준화되는 과정에서 보장범위 제한에 따른 수요 감소를 우려하여 표준화 이전에 적극적인 판매에 나섰고, 이에 따라 판매실적에서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계약인수심사는 소홀히 한 면이 있었음.

■ 결과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률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10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FY2008 120.7%, FY2009 117.6%로 나타났고, 정액의료보험은 FY2008 92.1%, FY2009 92.0%로 나타나 실손의료보험 지급률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실손의료보험의 상해와 질병보장 관련 입원 지급률이 입원건당 보험금 증가로 높게 나타난 반면, 통원 지급률은 보험사고율 상승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정액의료보험은 상해보장의 간병비 및 질병보장의 입원일당·수술·간병비 지급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상승세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함.

- 정액의료보험 상해보장의 간병비 및 질병보장의 입원일당·수술·간병비 지급률이 높은 것은 주로 보험사고율 상승에 기인하고, 이는 정액의료보험의 잠재적 지급률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1. 검토배경



■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민영의료보험을 신사업영역으로 인식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주력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보험금지급률 관리에는 소홀한 면이 있었음.

●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FY2008 1조 1,052억 원이었던 경과위험보험료가 FY2009 들어 1조 6,527억 원에 이르러 전년대비 49.5% 증가함.

■ 더욱이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표준화되면서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성이 축소됨.

● 실손의료보험의 급여명을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종합(상해 또는 질병)입원, 종합통원의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급여명에 해당하는 지급사유를 통일시키고 있음.

● 상해, 질병, 종합입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 중 90%를 해당 담보의 보상한도금액으로 함.

● 상해, 질병, 종합통원의 경우 통원치료 시 외래 방문 1회당(180회 한), 처방조제비 1건당(180건 한) 각 담보의 한도금액을 한도로 보상함.

■ 보장성 축소로 수요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보험회사는 표준화 시행 이전에 시장을 확보하고자 적극적인 판매전략을 구사하였음.

● 적극적인 판매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이 계약인수심사를 소홀히 한 면이 있음에 따라 보험금 지급률도 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고는 실손과 정액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률 추세를 분석하고 해당 지급률이 안정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비교적 데이터 집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장기손해보험의 실손 및 정액의료보험 실적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함.

2. 민영의료보험의 실적 현황



가. 실손의료보험

■ 실손의료보험 경과위험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률은 매년 100%를 상회함.

- FY2009 경과위험보험료 실적이 1조 6,527억 원, 보험금 지급률은 117.6%로 FY2008에 비해 다소 하락함(〈표 1〉 참조).

■ 보험금 지급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것은 보험사고 건당 보험금 증가보다는 보험사고율 상승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보험사고 건당 보험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FY2009 25만 원 수준이고 보험사고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13.57%에 달함.

〈표 1〉 실손의료보험 실적 추이

(단위: %, 백만 원)

연도	경과위험보험료	지급보험금	건당보험금(만 원)	보험사고율	지급률
FY2005	512,898	594,488	37.01	6.33	115.9
FY2006	652,256	716,316	30.71	7.65	109.8
FY2007	861,311	947,010	28.00	8.87	110.0
FY2008	1,105,185	1,333,596	26.77	10.70	120.7
FY2009	1,652,725	1,943,955	25.58	13.57	117.6

주: 건당보험금 = 지급보험금/보험사고건수

보험사고율 = 보험사고건수/보험계약건수

자료: 보험개발원

■ 실손의료보험 지급률을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동시보장 보험으로 세분하여 각각에 대해서 보험사고 건당 보험금과 보험사고율을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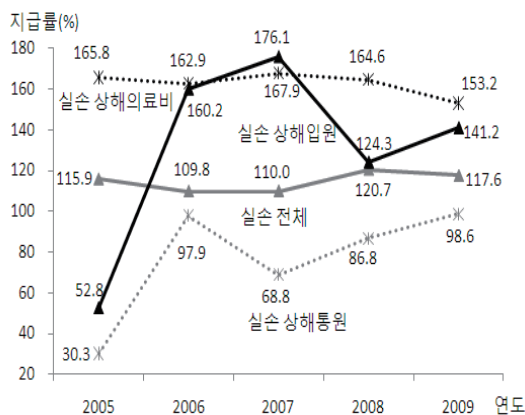
- 실손 상해보험은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약), 입원, 의료비(통원과 입원 동시보장)를 보장함.
- 질병보험과 상해 및 질병보험은 통원과 입원을 보장함.

〈실손 상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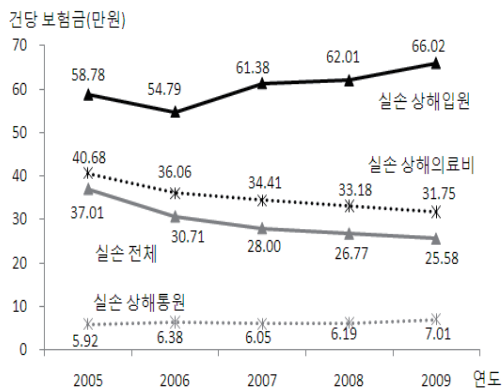
■ 실손 상해보험의 입원과 의료비 보장 지급률은 실손의료보험 전체 지급률 수준보다 높음(〈그림 1〉 참조).

- 입원의 건당 보험금은 FY2006 이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그림 2〉 참조).
- 반면, 보험사고율(보험금지급건수/경과보험계약건수)은 의료비 사고율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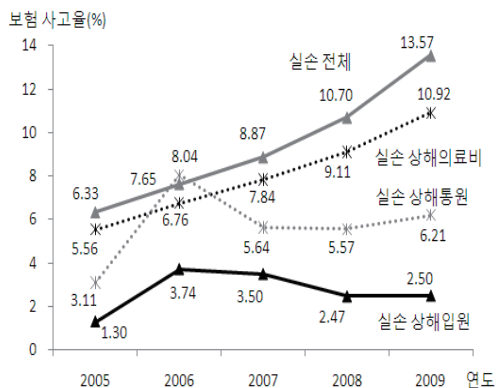
〈그림 1〉 실손 상해보험 지급률 추이



〈그림 2〉 실손 상해보험 건당보험금 추이



〈그림 3〉 실손 상해보험 보험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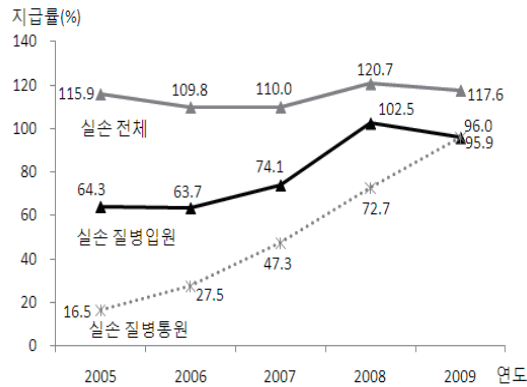


〈실손 질병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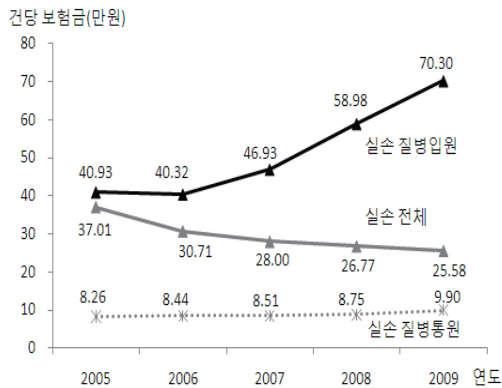
■ FY2009 실손 질병보험 지급률은 통원과 입원 모두가 96% 수준으로 실손의료보험 전체 지급률보다 낮으나 상승 추세에 있음(그림 4) 참조.

- 건당보험금은 입원의 경우가 급증하고 있음(그림 5) 참조.
- 보험사고율은 통원이 상승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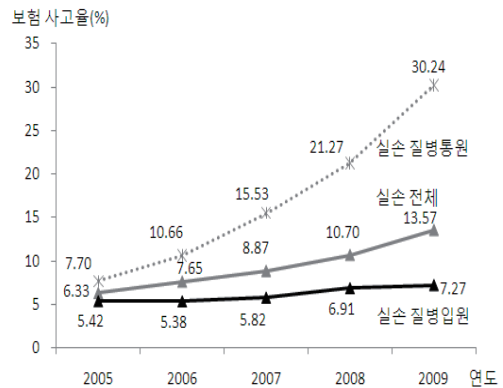
〈그림 4〉 실손 질병보험 지급률 추이



〈그림 5〉 실손 질병보험 건당보험금 추이



〈그림 6〉 실손 질병보험 보험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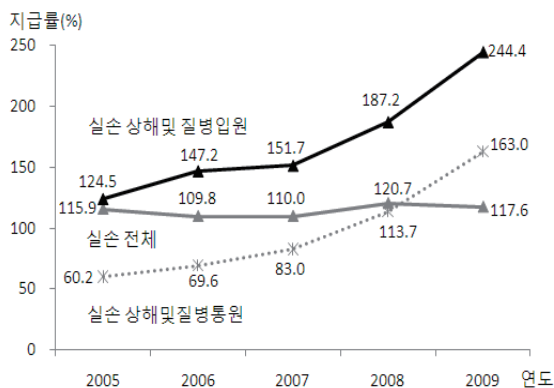
〈실손 상해 및 질병 동시보장 보험〉

■ 실손 상해 및 질병 동시보장 보험의 지급률은 통원과 입원 모두가 실손의료보험 전체 지급률보다 높은 상태이고 급격한 상승세에 있음(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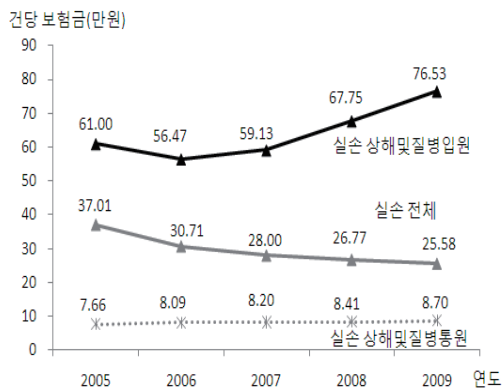
● 건당 보험금은 입원의 경우가 급증하는 추이에 있음(그림 8) 참조.

● 보험사고율은 통원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임(그림 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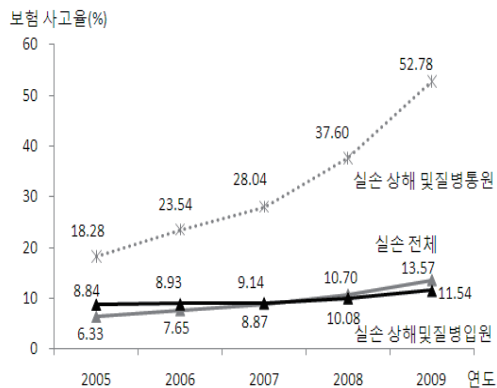
〈그림 7〉 실손 상해 및 질병보험 지급률 추이



〈그림 8〉 실손 상해 및 질병보험 건당보험금 추이



〈그림 9〉 실손 상해 및 질병보험 보험사고율 추이



나. 정액의료보험

■ 정액의료보험 경과위험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금 지급률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다 FY2009 주춤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 FY2009 경과위험보험료는 1조 4,308억 원이고, 지급률은 92.0%를 기록하여 FY2008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표 2〉 참조).

■ 보험사고 건당 보험금은 증가 추세를 보여 FY2009 54만 원 수준에 이르렀고 보험사고율은 꾸준히 하락하여 0.77%를 기록하였음.

〈표 2〉 정액의료보험산업 주요지표 추이

(단위: %, 백만 원)

연도	경과위험보험료	지급보험금	건당보험금(만 원)	보험사고율	지급률
FY2005	456,968	454,401	51.01	0.90	99.4
FY2006	645,306	605,316	48.76	0.89	93.8
FY2007	832,470	784,641	52.03	0.81	94.3
FY2008	1,109,035	1,021,175	54.38	0.79	92.1
FY2009	1,430,830	1,316,325	54.81	0.77	92.0

자료: 보험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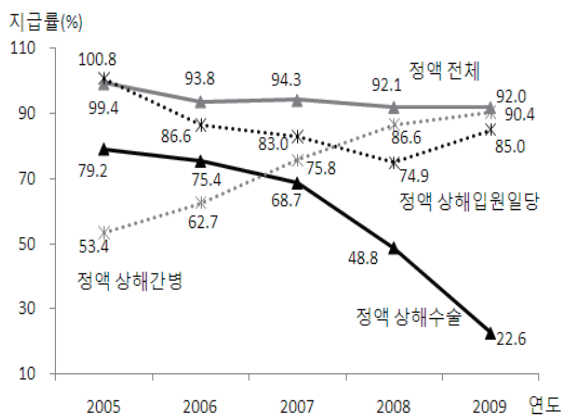
〈정액 상해보험〉

■ 정액 상해보험 보장내용별 지급률은 모두 정액의료보험 전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간병비 지급률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그림 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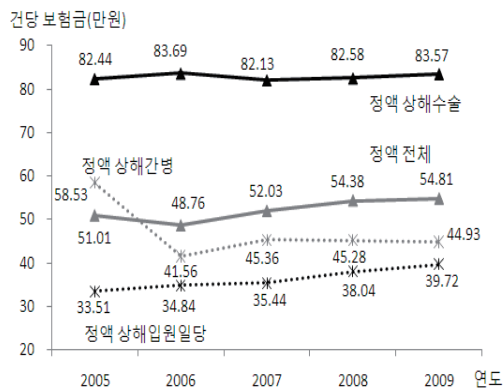
● 건당 보험금은 입원일당이 꾸준한 증가세에 있음(〈그림 11〉 참조).

● 보험사고율은 간병비가 상승세에 있음(〈그림 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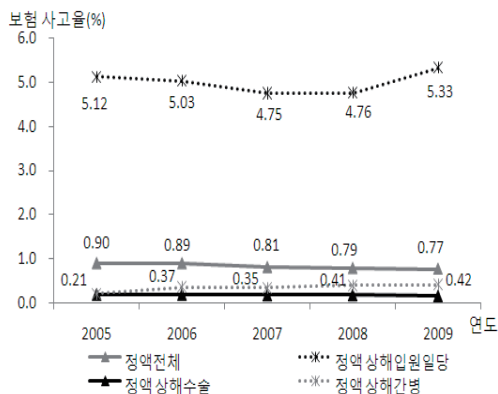
〈그림 10〉 정액 상해보험 지급률 추이



〈그림 11〉 정액 상해보험 건당 보험금 추이



〈그림 12〉 정액 상해보험 보험사고율 추이



〈정액 질병보험〉

■ 정액 질병보험 보장내용(coverage)별 지급률은 모두 정액의료보험 전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입원일당, 수술, 간병비 지급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특징임(표 3), 〈그림 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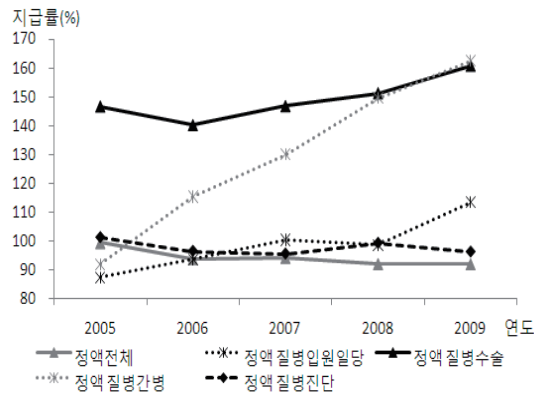
- 건당보험금은 입원일당, 수술, 간병비가 꾸준한 감소세에 있음(〈그림 14〉 참조).
- 보험사고율은 입원일당, 수술, 간병비가 상승세에 있음(〈그림 15〉 참조).

〈표 3〉 정액 질병보험 주요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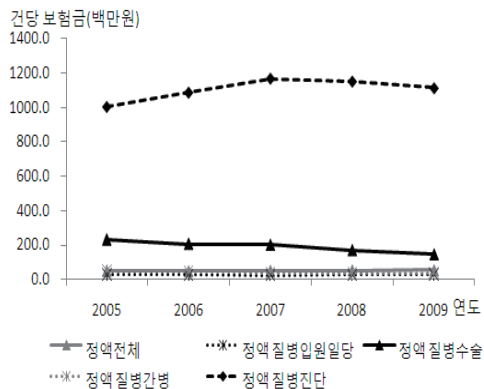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연도	질병 입원일당			질병 수술비			질병 간병비			질병 진단비		
	건당 보험금 (만 원)	보험 사고율	지급률	건당 보험금 (만 원)	보험 사고율	지급률	건당 보험금 (만 원)	보험 사고율	지급률	건당 보험금 (만 원)	보험 사고율	지급률
FY2005	30.05	1,5628	87.3	232.02	0.0818	146.7	53.99	0.0715	91.9	1005.7	0.0598	101
FY2006	27.80	1,7358	93.5	207.24	0.0909	140.3	48.03	0.1099	115.4	1087.7	0.0524	96.4
FY2007	26.41	1,8711	100.3	201.73	0.0987	146.8	38.33	0.1517	130.1	1168.1	0.0484	95.4
FY2008	28.05	1,8681	98.6	171.46	0.1092	151.3	36.26	0.1881	149.6	1151.3	0.0478	99.2
FY2009	29.86	1,9300	113.5	146.99	0.1200	160.7	39.67	0.1900	162.5	1113.4	0.0400	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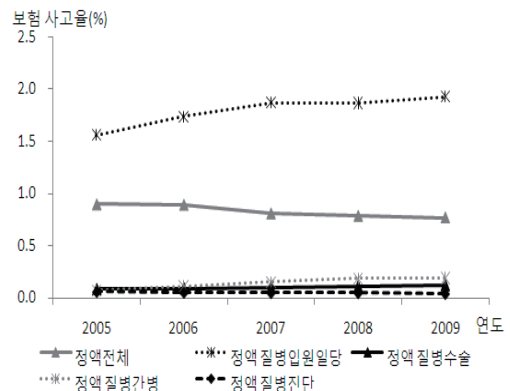
〈그림 13〉 정액 질병보험 지급률 추이



〈그림 14〉 정액 질병보험 건당 보험금 추이



〈그림 15〉 정액 질병보험 보험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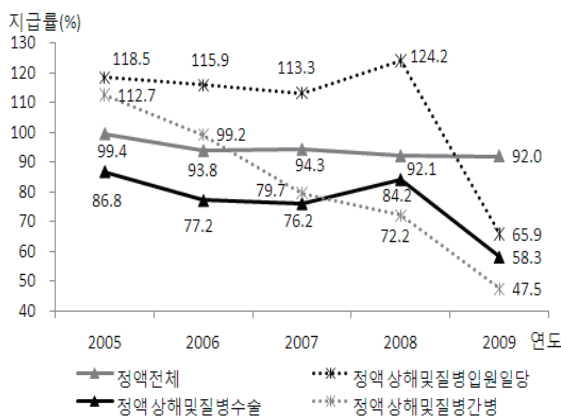


〈정액 상해 및 질병 동시보장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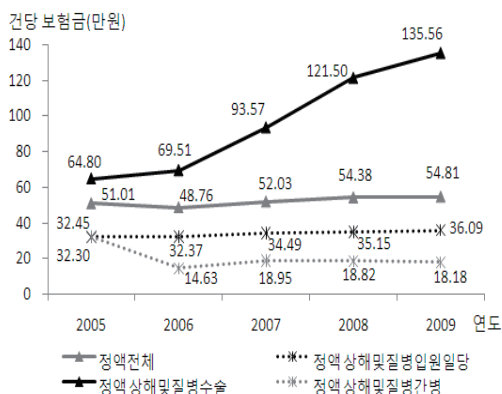
■ 정액 상해 및 질병보험의 보장내용별 지급률은 FY2009에 모두 정액의료보험 전체 지급률 수준보다 낮으며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그림 16〉 참조).

● FY2009 들어 수술비의 건당보험금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보험사고율 하락으로 인해 수술지급률이 58.3%로 급락함(〈그림 17〉, 〈그림 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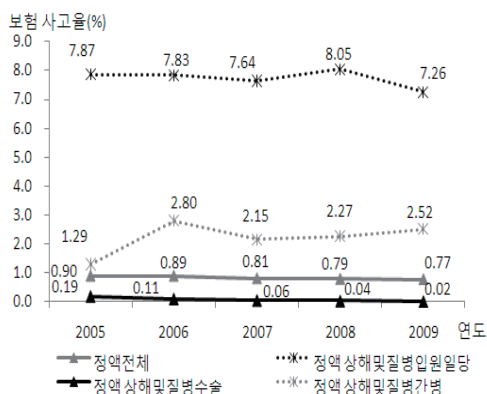
〈그림 16〉 정액 상해 및 질병보험 지급률 추이



〈그림 17〉 정액 상해 및 질병보험 건당 보험금 추이



〈그림 18〉 정액 상해 및 질병보험 보험사고율 추이



3. 높은 보험금 지급률의 주요 원인



가. 실손의료보험

- 실손 상해보험의 입원 지급률이 실손의료보험 전체보다 높은 것은 입원건당 보험금의 증가에 기인한 반면, 의료비 지급률은 보험사고율 상승에 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실손 질병보험의 각 보장내용별 지급률이 상승세에 있는 것은 입원건당 보험금 증가와 통원보험사고율의 급상승에 기인함.
- 실손 상해 및 질병 동시보장 보험의 입원과 통원의 지급률이 높고 상승세에 있는 것은 입원건당 보험금 증가와 통원보험사고율의 급상승에 기인함.

나. 정액의료보험

- 정액 상해보험의 간병비 지급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주로 해당 보험사고율이 높아진 것에 기인함.
- 정액 질병보험의 입원일당, 수술, 간병비 지급률이 높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각각의 보험사고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

4. 맺음말



- 실손의료보험의 경과위험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FY2008에 120.7%이었던 지급률이 FY2009 들어 117.6%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실손의료보험의 상해, 질병, 상해와 질병 동시보장 보험은 공통적으로 입원 지급률이 높고 상승추세에 있음.
 - 이것은 입원건당 보험금의 증가에 기인하므로 입원건당 보험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실손의료보험의 각 보장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통원 지급률(실손상해보험은 의료비)이 상승세에 있음.
 - 통원 지급률 상승세는 보험사고율의 급상승에 기인하므로 통원보험사고율에 대한 안정화 조치가 필요함.

■ 정액의료보험의 지급률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잠재적 지급률 상승 요인이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함.

- 정액의료보험의 경우 FY2008에 92.1%이었던 지급률이 FY2009에도 92.0%로 나타나 크게 변동하지 않음.
- 정액의료보험에서 상해보험의 간병비, 질병보험의 입원일당, 수술, 간병비 지급률이 높은 수준인데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이러한 상승세는 공통적으로 보험사고율의 상승에 기인하므로 계약적부심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kiri**



건강관리서비스, 공사건강보험과 유기적 관계 필요

이창우 연구위원

요약

■ 보건복지부는 2011년 4월 수정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금년 내 국회를 통과시켜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임.

- 동 법안은 민간보험회사의 개설 제한, 개인정보 보안 강화, 유사의료행위 근절, 국가 및 지자체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보완함.

■ 건강관리서비스의 목표는 사전적 예방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관리를 비롯한 의료비 절감이나, 민간 보험회사의 개설 제한으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음.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비 억제’를 위해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음.
- 문제는 민간보험회사의 개설 제한과 국민건강보험과의 연계 가능성 차단으로 건강관리서비스의 가격관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역할을 배제하고 있어 예상하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임.

■ 건강관리서비스 요원이 기존의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크게 다를 바 없으며, 건강관리서비스 가격관리를 시장경쟁에 맡기고 있어 시장형태는 현재의 의료서비스 시장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음.

- 민간보험회사 혹은 국민건강보험의 가격관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비급여부문 시장과 유사해질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건강보험 혹은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음.

■ 의료비 통제라는 관점에서 판단할 경우,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서 보험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2010년 5월에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민간보험회사의 개설 제한, 개인정보 보안 강화, 유사의료행위 근절, 국가 및 지자체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동 법안에 대한 수정 법안을 2011년 4월 29일 대표발의함.
- 2010년에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경우 민간보험회사에 의한 개인건강정보 유출 등을 우려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논의가 미진한 상태였음.
-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2011년 5월 20일 「제7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여 보완책에 대해 설명하고, 금년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¹⁾
- 지난해 의료법 개정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대한 민간보험회사 개설을 제한하였으며, 올해 수정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업에 대한 민간보험회사의 개설을 제한함으로써 새롭게 창출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시장에 민간보험회사가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있음.
- 의료법이나 건강관리서비스법 등은 민간자본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마련하면서 보험회사만을 제외시키는 예외 조항을 첨가하고 있음.
-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경우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알선, 유인 등의 업무가 민간업체에게 허용되었으나 민간보험회사만 배제됨.
- 건강관리서비스업은 개인건강정보 이용 가능성을 이유로 보험회사의 개설을 제한하려 함.
- 본고는 건강관리서비스업에서 민간보험회사의 개설 제한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함.
- 건강관리서비스는 사전적 예방이나 건강관리를 통하여 의료비를 낮추면서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짐.
- 하지만 동 법안에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자원조달과 건강관리서비스의 가격관리체계가 불명확하여 기대하는 의료비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지 의문임.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5. 19),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 개최.

- 민영의료보험이든 국민건강보험이든 의료보험과의 연계가 있을 때 건강관리서비스의 저변 확대와 의료비 감소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임.

2.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의 목적과 기대효과



-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의 주요 목적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위대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제1조).
- 건강관리서비스법의 직접적인 기대 효과는 초기 진단 및 사전적 예방 관리를 통한 의료비 절감임.
 -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만성 및 중증 질환은 국민의 치료 부담 및 의료비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미국, 독일 등 해외 국가에서 실시한 노인대상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의료비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음.

〈표 1〉 노인대상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효과

대상	건강관리 프로그램	주요 결과
미국 65세 이상 만성질환군	Healthways' Medicare Health Support	•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관리국(CMS)의 평가결과 - 치료효과 증대 - 총 비용 감소 - 참가자 94%가 만족 • 기타 결과 - 참가정도에 따라 연간 비용 감소 - 전 기간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비용 감소
서부유럽 65세 이상 만성질환군	Healthways' Chronic Care Management for German Health Insurer	- 입원률이 6% 감소, 통제집단의 경우 18% 증가 - 전화 통화수의 증가에 따라 진료군이 감소
미국 65세 이상 급성질환 제외군	Healthways SilverSneakers Fitness Program	- 당뇨병환자의 경우 비용 감소 - 입원률이 29% 감소
미국 65세 이상 사망 근접군	Healthways' End of Life Counseling	- 평균 사망 6개월 비용이 1,913 달러 감소

자료: Healthways(2010), 「Better Care, Better Health and Lower Cost」 재인용함.

- 최근 미국의 대표적 건강관리서비스업체인 Healthway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메디케어 가입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비용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건강관리서비스법을 통한 U-healthcare 관련 산업의 발전과 의료서비스 산업화 등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음.

- U-healthcare는 의료서비스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없애는 것으로 기존의 의료서비스에 더하여 개인의 건강을 관리·유지시키는 서비스까지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함.

3.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의 수정내용



■ 당초 발의된 법안에 대해 민간보험회사에 의한 개인건강정보 유출 등 우려가 제기되자 민간보험회사의 개설 제한과 개인건강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됨.

- 「건강관리서비스법」수정안은 제10조제2항을 포함시켜 해당 조항에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개설하거나 출자 또는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함.
- 또한, 원안 제15조의 건강정보 유출 금지에 대한 항을 제16조로 분리하여 강화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제공 노력 부분은 삭제함.

〈표 2〉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의 주요 수정내용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의 주요 수정사항	
①	(민간보험회사의 개설 제한)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개설할 경우 개인건강정보의 집적·상업적 활용 등이 우려되므로, 민간보험사의 기관 개설 및 출자·투자 금지
②	(개인건강정보 보호강화)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개인건강정보를 원천적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규정 강화
③	(유사의료행위 우려 근절) 서비스 범위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운동지도를 중심으로 규정
④	(국가·지자체의 역할 강화) 국가·지자체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실시 규정 강화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5. 9),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 개최.

■ 또한,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응하여 만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 및 운동 지도로 건강관리서비스업의 범위를 축소함.

- 원안 제7조 3항의 ‘영양·운동 등에 관한 지원, 지도 및 훈련’을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영양·운동에 관한 지도 및 지원’으로 변경하여 건강관리서비스업의 범위를 좁히려 노력함.

4.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의 문제점



■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은 건강관리서비스의 가격관리체계에서 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지 의문임.

- 건강관리서비스의 가격관리체계에서 건강보험 및 민영의료보험을 배제할 경우 건강관리서비스는 제2의 비급여부문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요원의 범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공급자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결국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또 다른 형태의 의료서비스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를 만성질환 예방이라는 기존의 의료서비스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시장 확대 가능성만 커질 수 있음.

〈표 3〉 건강관리서비스의 가격관리체계

대안	건강보험 적용배제	건강보험 적용
장점	•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 시장경쟁 여건조성	• 건강관리서비스의 저변확대 가능성
단점	• 국민의 선택영역 축소 가능	• 건강보험재정의 한계로 건강관리서비스 제한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0), 「성공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 심포지엄」, p. 30 수정 보완함.

- 결국, 국민건강보험이나 민영의료보험을 배제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의 개설주체 허용은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가격관리 기능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효과만 가져올 것임.

- 따라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의 개설주체로 민간자본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시장의 특성상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의 서비스 공급형태는 의료비관리 기능이 없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부문 서비스 공급형태와 유사할 것임.

■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형식상 단절로 의료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음.

- 동 법안 제11조(건강관리서비스 발급) 제3항에서 의사는 특정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알선·소개할 수 없으며, 제12조(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 제5항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의료기관 방문을 권장’하도록 명시함.
 -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유인·알선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결국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또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유인·알선이 불가함.
- 이는 현재 미국이나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 의료비 감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통합진료(integrating delivery system)’에 대한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항으로 판단됨.
 - 다른 나라의 경우 의료 환자에 대한 분리진료로 중첩진료 및 검사 등이 의료비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자간의 협력을 중시하는 형태로 의료서비스 조직과 지불보상체계를 동시에 전환하려 노력함.
- 여기에 더하여 건강보험 혹은 민영의료보험을 통한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

■ 대부분 국가의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서비스와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으로 의료비를 감소시킴.

- 건강관리서비스는 기존 보험가입자에 대한 사전적 비용관리 차원에서 건강보험의 부가적인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어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연계됨.
 - 민영보험회사는 손해를 하락을 위해 가입자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기 때문에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 미국 메디케어에서 보듯이 공영보험의 경우도 가입자에 대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전체 의료비를 낮추는 효과를 보고 있음.
 - 따라서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부담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음.

5. 결론



■ 기본적으로 의료비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보험 본연의 특성상, 건강관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역할이 중요함.

● 민영보험이든 공영보험이든 건강관리서비스는 보험자를 통하여 제공될 때 의료비 효과를 명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의료비 감소를 위해서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서 보험의 역할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 의료서비스간의 통합진료 방식이 의료비 감소를 위한 주요 요소임을 주목하고, 예방차원의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의료비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의료비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보험을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kiqi**

1. 문제제기



■ 최근 들어 화재나 폭발, 소요·노동쟁의 등과 같은 인위적인 재해, 또는 집중호우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 발생으로 기업이나 정부의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중단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²⁾

■ 이와 같이 기업들의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경제적 손실³⁾이 크게 증가하고, 기업의 평판리스크도 커질 가능성이 높음.

● AON의 리스크재무대책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이 직면하는 주요 리스크 중 업무중단리스크(business interruption risk)가 2001년에는 평판손실과 변화 실패에 이어 3번째, 2011년에는 5번째로 중요한 리스크로 인식됨.

〈표 1〉 글로벌 기업들이 직면하는 중요 리스크 순위

순위	2001	2003	2005	2011
1	평판손실	업무중단/변화실패	평판손해	경제위축
2	변화실패		업무중단	규제법률리스크
3	업무중단	종업원사고	변화실패	경쟁증가
4	제조물책임	종업원고용	제조물책임	평판리스크
5	컴퓨터범죄	평판손실	규제/법률 리스크	업무중단
6	일반배상책임	전략적 협조실패/전문인배상	재물손해	혁신실패/ 소비자니즈 불충족
7	재물손해		종업원사고	전문인보유실패
8	종업원고용	일반배상책임	테러리스크	상품가격리스크
9	임원배상책임	제조물책임	지배구조	기술실패/시스템실패
10	종업원사고	재물손해	전문인배상책임	현금흐름/유동성 리스크

자료: AON, Biennial Risk Finance Survey(<http://www.aon.com>).

2) 자연재해의 경우 2011년 5월 일본 동북부지역의 강진으로 도요타자동차를 비롯한 협력회사, 항공업체, 정유회사, 철강회사, 온라인서비스회사의 업무중단이 발생한 바 있고, 7월 27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EBS 라디오 생방송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함. 여기에 인위적인 요인으로 의한 업무중단은 자연재해보다 더욱 빈번히 발생할 개연성이 큼. 예를 들면, 자동차 주요부품을 생산하는 Y업체가 노동쟁의로 직장을 폐쇄하게 되자, 국내 완성차업체가 큰 생산차질을 경험한 바 있으며, N금융기관은 지난 4월 전산센터의 서버 문제로 3일 동안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함.

3) 미국 세계무역센터(WTC) 테러의 보험금 356억 달러 중 재물손해보험금은 105.6억 달러인 반면, 기업휴직보험금은 121억 달러에 달함. 杉野文俊(2007, 8, 27), 事業繼續マネジメント(BCM)にみる現代的リスクマネジメントの思考法, 『損保研究』第39巻 第2號.

■ 기업의 사업과정 특정 부분에서 재해나 전산장애 등의 사고 발생 시 매출 감소와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경상비 등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그리고 거래선 단절 등과 같은 경제적 손실로 인해 기업들의 업무연속성관리(BCM: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의 중요성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크게 부각되고 있음.

● 업무연속성관리는 2001년 미국 세계무역센터 테러⁴⁾를 계기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규격화되기 시작하여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도 채택되었으며, 이에 보험회사들도 업무연속성관리에 필요한 보험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화재나 폭발에 의한 재물사고, 배상책임손해사고, 인적사고와 관련된 리스크에만 국한하지 않고 업무중단손해 등의 전반적 리스크 요인 모두를 포괄하는 전사적 리스크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 보험계약자들은 순수리스크(pure risk) 중 업무중단리스크를 제외한 재물사고, 배상책임손해사고, 인적사고만을 고려한 전통적 개념의 리스크관리에만 머물러 있음.

●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을 활용한 리스크 재무대책을 강구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그 활용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임.

●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규격과 유사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지원법)⁵⁾」이 2007년 7월 19일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보험상품과의 연계성은 전혀 발견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본고는 업무연속성관리를 위한 보험상품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의 업무연속성관리와 보험상품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4) 모건스탠리는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에 입주해 있었으나, 충분한 사전훈련을 통한 직원들의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백업 데이터 보관으로 방대한 데이터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영업재개가 가능하게 되면서 큰 관심을 모음. 매일경제(2011. 7. 18), “글로벌기업 이젠 재난대비 경영”.

5) 우리나라 기업지원법은 2011년 5월에 개최된 ISO/TC 223(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Technical Committee: 국제표준화기구 사회안전기술위원회) 제9차 총회에서 공식문서로 인증되어 공신력을 확보함. 아시아경제(2011. 6. 21).

2. 보험을 활용한 업무연속성관리 필요성



■ 업무연속성관리란 자연재해, 전산시설의 해킹, 테러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한 기업, 정부기관 등의 업무중단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재난대처프로그램으로 전사적 리스크관리와 유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나 관리해야 할 리스크와 방법에서 차이가 있음.

- 일반적으로 업무연속성관리란 ① 기업에 내재하고 있는 업무중단리스크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확인 및 이해하고, ② 업무연속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정의하며, ③ 업무연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을 개발, ④ 개발된 업무연속계획에 대한 예행연습 및 평가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업무중단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관리기법임.
- 기업의 업무중단요소는 공장이나 사무실 등에 화재나 폭발, 지진, 홍수 발생, 근로자 파업, IT실패, 전력공급 중단, 전염병 발생, 직원들의 질병 발생, 폭설로 인한 작업장 접근 곤란 등을 들 수 있음.

〈표 2〉 리스크관리와 업무연속성관리의 비교

구분		전통적 리스크관리	전사적 리스크관리	업무연속성관리
대상 리스크		순수리스크	순수리스크, 투기적 리스크	순수리스크(업무중단)
사이클	1단계	리스크의 확인 및 분석	상황(전략적리스크관리상황, 리스크평가기준, 리스크관리체제)의 확정	업무중단리스크 존재확인
	2단계	리스크처리수단의 검토	리스크의 확인·분석·평가	사업영향도 평가, 중요업무의 결정 및 목표의 설정
	3단계	최적 수단 선택	리스크의 처리	업무연속성계획의 결정
	4단계	수단의 실행	모니터링	교육, 훈련
	5단계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	점검 및 시정조치

자료: 杉野文俊(2007), p. 91.

- 이에 비해 전사적 리스크관리란 기업에 내재하고 있는 순수리스크⁶⁾와 투기적 리스크(speculative risk)의 존재를 확인하고, 각 리스크의 발생 빈도와 심도를 평가하며, 각각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최적의 수단(리스크 통제대책과 리스크 재무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과정임.

6) 순수리스크는 화재, 폭발, 자동차충돌 등과 같은 사상(event)이 발생한 경우 손실로만 나타나는 리스크인 반면, 투기적 리스크는 도박 등과 같이 그 사상(event) 발생 시 손실 또는 이득의 형태로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임.

- 따라서 업무연속성관리는 리스크관리 관점에서 보면 순수리스크인 업무중단리스크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다 상세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영관리기법으로 볼 수 있음.

■ 결국, 업무중단리스크를 독립적인 경영관리기법으로 개발한 것이 업무연속성관리이고,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기업들의 업무중단 시 업무재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업무중단손해를 담보하는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주로 업무중단의 손인(peril)이 화재, 폭발, 지진, 노동쟁의, 전산설비의 장애 등과 같은 리스크에 한정함.

■ 우리나라 기업휴지보험은 독립된 보험종목이 아니라 특정상품 내 하나의 담보위험이나 특약담보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보험가입률은 매우 낮은 실정임.⁷⁾

- 비교적 소규모 기업들이 가입하는 화재보험은 기업휴지손해담보특약으로 화재, 폭발, 지진, 노동쟁의 등의 손인으로 인한 업무중단손해를 보상하고 있으나, 보험가입률은 1%도 되지 못한 실정임.
- 이에 비해 규모가 큰 기업들은 화재손해, 배상책임손해와 더불어 업무중단손해를 하나의 담보위험으로 가입하는 재산종합보험⁸⁾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가입률은 10% 내외 정도임.
- 이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업무연속성관리를 위한 보험활용도가 낮은 것은 경영자들의 인식부족과 국내 보험회사들의 다양한 상품제공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

7) 이기형·한상용(2009. 3),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보험연구원, pp. 90~104 참조.

8) 화재를 담보하는 보험계약 중 보험가입금액이 2,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산출한 요율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보험자협의요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보험업감독규정 제7-48조(공통사항 신고기준)제2항」). 그 결과, 국내 보험회사들은 '80년대부터 재보험자가 제공하는 보험약관과 보험요율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업무중단리스크관리에 요구되는 보험수요를 고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관련 보험상품 개발 유인이 낮았음.

3. 주요국의 업무연속성관리 관련 보험 활용현황



가. 미국

■ 업무연속성관리는 2001년 9.11 테러,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같이 지진이나 테러 등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형 재해발생으로 경영 활동이 중단될 경우 중요 업무를 가능한 신속하게 복구시켜 기업의 경영상 피해를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됨.

● 9.11 테러 이후에 만들어진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의 “Regulation 446”과 미국 유가증권딜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의 “Regulation 3510”은 모든 회원 기업들에게 업무연속성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⁹⁾

● 미국 연방금융감독위원회(FFIEC: 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¹⁰⁾는 금융회사에게 업무연속성 확보계획 수립을 의무화시켰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하고, 대표이사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음.

● 미국은 2007년 재난뿐만 아니라 모든 위기관리계획(crisis management plan)을 포괄한 『재난관리 및 업무연속성관리 표준: NFPA 1600(Standard on Disaster/Emergency Management and Business Continuity Programs 2007)¹¹⁾』을 제정하여 민간기업과 공공기업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

■ 미국 손해보험회사는 업무연속성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조업체와 상업용 건물에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기업종합보험(Commercial Package Policy)과 사업자종합보험(Business Owners Policy)을 통해 기업휴지손해 담보를 제공하고 있음.

9) Business Continuity Institute,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Legislations, Regulations and Standards Version 6, January 2011(<http://www.thebci.org/LRSG.pdf>).

10) 연방금융감독위원회는 1979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연방준비은행(FRB), 연방예금보통금공사(FDIC), 국가신용기관감독국(NCUA), 환율통제국(OCC), 저축은행감독국(OTS)의 CEO가 이사회로 참석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원칙, 표준 등을 제정하여 감독의 통일성을 기하고 있음(<http://ithandbook.ffiec.gov/it-booklets/business-continuity-planning/introduction.aspx>).

11) <http://www.nfpa.org/assets/files/pdf/nfpa1600.pdf>.

- 2003년 Safeco사가 미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휴지보험 가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¹²⁾, 중소기업체 중 45%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 기업들이 업무연속성관리에 보험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나. 영국

- 영국은 국가차원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업무중단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유도정책의 일환으로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에 대한 표준규격”을 제정하였으며, 기업들은 재난대비 역량과 복구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휴지보험을 활용함.

- 영국은 기업이 업무연속성계획을 스스로 수립할 경우 해당 지방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시민 비상대책법(Civil Contingencies Act)』을 2004년에 개정함.

- 영국의 업무연속성관리 표준규격(BS 25999)으로 인해 기업들은 업무연속성 계획의 추진 목표를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고, 기업휴지보험 가입 등을 통한 업무연속성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하게 됨.

-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는 2002년에 “업무연속성관리 공공표준 PAS56¹³⁾”을 제정, 보급해 기업들이 활용하도록 함.

- 또한, 2006년 12월 “업무연속성관리 표준규격 BS 25999(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tandard)”의 첫 번째 표준 “BS 25999-1 실행지침(Code of Practice)”, 2007년 11월에는 두번째 표준 “BS 25999-2 업무연속성관리의 명세서(Specification for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를 제정함.

- 보험회사들은 정부의 업무연속성관리 정책을 새로운 시장개척의 발판으로 삼아 기업들에게 업무연속성관리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다양한 기업휴지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영국 보험료 수입 순위 5위인 Zurich보험사의 경우 “Zurich Risk Engineering,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ervices¹⁴⁾”를 개설하고, 고객들에게 업무연속성관리 계획의 개발, 업무연속성관리 계획의 감사, 업무중단의 모델링, 업무에 대한 영향 분석(business impact analysis)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12) <http://www.insurancejournal.com/news/west/2003/10/22/33403.htm/print=1>.

13) http://www.broadland.gov.uk/PDF/business_continuity_good_practice_guide.pdf.

14) <http://www.zurich.co.uk/RiskServices/riskengineering/strategicrisk/Businesscontinuitymanagementservices.htm>.

다. 일본

■ 일본도 정부차원에서 업무연속성관리 규격을 제정하여 기업들이 경영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일본의 업무연속성 기준의 경우 2005년 3월 경제산업성이 IT 사고를 상정한 『업무연속성관리 계획 책정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만든 이후, 2005년 8월 내각부의 중앙방재회의가 지진을 비롯한 생명 안전, 업무중단리스크 등 2차 피해까지를 규정한 『업무연속계획책정가이드라인 제1판』을 만들.
- 2006년 2월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재해 등으로 인한 업무중단리스크가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BCP 책정운용지침』이 마련됨.¹⁵⁾
- 이러한 정부의 업무연속성관리 정책 추진에 따라 기업¹⁶⁾들은 이에 적극 호응하여 사업연속성관리를 자발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보험회사들은 성장이 정체된 손해보험시장의 새로운 성장영역으로 보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손보재팬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업무연속성관리 도입정책과 연계하여 업무중단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으로 이익보험, 영업계속비용보험, 종합보험(all risk)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따라 기업휴지보험시장이 큰 성장을 하고 있는데, 대형 5개 손해보험회사의 2004년 4~11월 보험료가 이익보험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¹⁷⁾
- 이를 연도별 추이로 보면, 화재나 자동차보험 등 일반적인 보험시장의 보험료는 정체되어 있는 반면, 기업휴지보험은 연간 28.3% 이상 성장함.

15) 일본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참조(http://www.chusho.meti.go.jp/keiei/antei/060217bcp_koukai.htm)

16) 2007년 10월 노무라 종합연구소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연속성관리 계획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일본 기업의 29%는 이미 업무연속성관리 계획을 구축해서 시행하고 있고, 36.1%는 구축 중에 있으며, 32.5%는 구축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사업연속성관리에 관심이 없는 기업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株式会社野村総合研究所(2007. 11. 22), 「BCP (事業継続計画) 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を実施~BCP策定済みまたは策定中の企業は6割超~, NEW RELEASE(<http://www.nri.co.jp/news/2007/071122.html>).

17) ASIA INSURANCE REVIEW Vol III Issue 5(2005. 1. 27), 「이익보험 수요확대로 13% 증수」.

〈표 3〉 일본의 기업휴지보험료 성장 추이

(단위: 백만엔, %)

구분	1998	2000	2004	2005	2008 (구성비)		CAGR
화재	1,242,505	1,134,946	1,156,444	1,203,329	1,416,959	15.7	1.5
자동차	4,659,480	4,648,906	4,713,138	4,671,268	4,352,143	53.9	-0.8
기업휴지	7,600	15,121	32,127	32,873	71,570	0.9	28.3
기타	1,810,293	1,661,193	1,726,568	1,751,293	2,230,270	27.6	2.4
합계	7,719,878	7,460,166	7,628,277	7,658,763	8,070,942	100.0	0.5

주: 적립보험료가 포함된 실적이며, CAGR은 1998년을 기준연도로 한 것임.

자료: 일본 보험연구소, 『손해보험통계호』, 각년도.

4. 결론 및 시사점



■ 업무연속성관리는 기업을 비롯한 정부기관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최대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 관리 역량 보유 여부에 따라 계속적 기업으로 평가됨에 따라 전 세계적 중요 이슈로 부각됨.

-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¹⁸⁾의 경우 기업들의 업무연속성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별기업들의 관리영역으로 단순히 남겨두기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표준규격을 제정·공표하고 있고, 기업들은 업무연속성관리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 극대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또한, 손해보험회사들도 국가의 업무연속성관리 정책과 연계된 기업휴지보험상품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기업들의 업무연속성관리에 기여하고 있음.

18) 국제규격으로는 ISO의 ISO/PAS 22399:2007(Guideline for incident preparedness and operational continuity management)이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2006년에 AS/NZS 5050(Business Continuity Managing disruption-related risk)규격을 제정하였음.

〈표 4〉 주요국의 업무연속성관리 규격 운영현황

국가	규격 명칭	작성주체	비고
영국	BS 25999(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2006, 2007)	영국규격협회(BSI)	예상되는 리스크로부터 사업 중단 시 사업영향도(Business Impact Analysis) 분석을 중요시함
미국	NFPA 1600 Standard on Disaster/Emergency Management and Business Continuity Programs(2004)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일본	업무연속성계획책정가이드라인(2005. 3)	경제산업성	IT사고 상정한 BCP 책정 절차, 검토사항 규정
	업무연속성계획책정가이드라인(제1판)(2005. 8)	내각부 중앙방재 회의	지진까지 상정한 BCP이며, 생명안전, 2차 피해 등 규정

자료: 동경해상(2006), 사업연속계획(BCP)란, TRC EYE Vol. 85, p. 3.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가 2007년 7월 19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지원법)」을 제정하고, 2008년 9월 시행규칙을 마련함으로써 본격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인식부족으로 사후대책인 기업휴지보험 가입을 통한 업무연속성관리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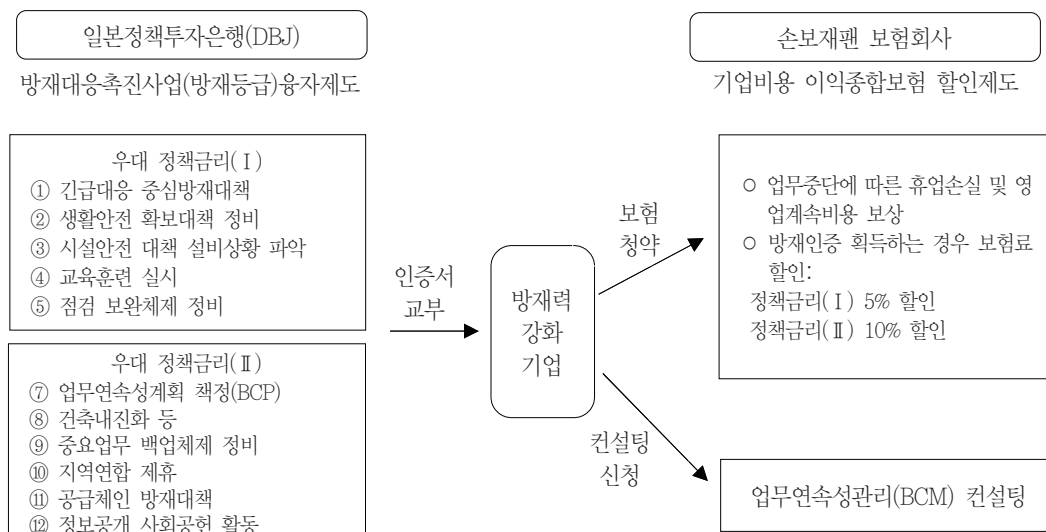
● 이러한 업무연속성 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일본, 영국, 미국 등의 손해 보험회사들처럼 국가정책과 연계한 보험상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 손해보험회사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업무중단리스크 담보 상품의 실효성을 분석하여 기업 지원법과 같은 정책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 판매함으로써 손해보험의 경제발전 지원기능을 제고하고, 일반손해보험의 신성장영역 개척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일본이나 미국의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함.

● 참고로, 일본의 손보재팬은 기업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업무연속성관리기준을 채택하고 소정의 등급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 업무연속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업비용이익종합보험의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 주고 있음.

〈표 5〉 일본 손보재팬의 BCP 연계 보험제도



자료: 일본정부투자은행 News Release(2006. 10. 5), 損害保険ジャパンと企業防災の取り組み支援で提携,
(<http://www.dbi.jp/news/archive/rel2006/1005.html>)

- 국내 보험회사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별로 업무중단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여 정부의 정책과 연계된 보험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정부도 기업지원법에 의거하여 재난관리 우수기업이 세제지원(제21조), 자금지원 우대(제22조), 재해경감 설비자금(제23조)을 지원받는 경우 기업휴지보험 가입을 전제함으로써 재난관리의 완전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kiri**



산재보험사기 대응방안과 시사점: 캘리포니아주 사례를 중심으로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재정적자와 산재보험사기의 폐해 및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9년부터 산재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행위주체 및 양태별 산재보험사기 규모 등 실태파악이 미흡하고, 조사 및 처벌이 근로자 또는 의료제공자의 부정수급에 집중되어 있음.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부정수급과는 달리 사업주의 보험료사기 및 근로자기망에 대해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미국에서 산재보험료 규모가 가장 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음.

- 첫째, 근로자의 부정수급뿐만 아니라 의료제공자의 부정수급과 사업주의 보험료사기 및 근로자기망에 대한 심각성과 폐해를 인식하여 이를 중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후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검토 중임.
- 둘째, 산재보험사기 유죄 판결자에 대한 신상 등을 5년 동안 주정부 웹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셋째, 모든 산재보험사기 혐의 건은 주정부와 지방검사에게 동시에 보고되며, 사업주로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주정부와 지방검사의 산재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기소를 지원함.
- 넷째, 정부부처 간 정보공유를 검토 중임

■ 산재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사업주의 산재보험료사기 및 근로자기망에 대한 조사강화와 형사제재 수립이 필요함.
- 둘째, 근로자의 수급자격을 부정하기 위해 사실을 조작·가공하거나 허위진술을 한 사업주, 의료제공자, 법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셋째, 행위주체 및 양태별 산재보험사기 규모를 파악해야 함.
- 넷째, 정부부처, 민영보험, 수사기관과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실질적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구축해야함.

1. 검토배경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재정적자와 산재보험사기의 폐해 및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9년부터 산재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 산재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권 법제화(2007), 전담조직구성(2009), 신고포상금제도 법제화(2010), 규정 및 조사 매뉴얼 마련, 민영보험회사 등과 정보공유, 보험조사장비 구축, 신고센터 운영, 진료비내역 알림서비스(2010),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건수와 적발금액은 각각 94건과 115억 7,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적발금액은 4.5배, 적발건수는 2배 증가함.
- 근로복지공단의 이러한 가시적인 노력은 산재보험사기 적발률 제고뿐만 아니라, 사기적 행위에 대해 사전적 억제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산재보험 당연가입 및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의 증가, 개별실적요율의 높은 편차 등으로 인한 산재보험사기 증가 가능성에 비해 산재보험사기의 적발 및 방지를 위한 인력과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그동안 산재보험제도는 더 많은 근로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련의 제도개선을 단행해 왔음.
- 당연가입 적용사업장 확대 조치로 2009년 기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 수는 153만 2,242개소, 근로자 수는 1,369만 9,000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개별실적요율은 개별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해 주는 것으로 2009년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 수는 3만 7,015개소로 지난 8년 동안 약 연평균 10%씩 증가함.
- 2009년 기준 개별실적요율 평균이 18%인 가운데, 최저 및 최고치가 각각 7%, 360%로 사업장 간 요율격차가 커 사업주의 보험료사기 및 근로자기망이 우려됨.

■ 이에 본고는 산재보험사기의 유형 및 특징을 살펴보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재보험사기에 대한 접근방법 및 대응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캘리포니아주의 산재보험시장은 미국에서 가장 크고, 주정부와 민영보험회사가 경쟁적으로 산재보험을 제공하고 있어 산재보험사기에 대한 연구와 방지노력이 활성화되어 있음.

2. 산재보험사기의 유형과 특징



■ 산재보험사기는 보험료사기와 부정수급(보험금사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기의 주체는 사업주, 의료기관, 근로자, 이들 보험관계 당사자를 매개하는 제3자 등임.

- 산재보험사기를 보험료사기, 보험금사기, 의료 또는 법률 관련 서비스 제공자 사기 등으로 구분하기도 함.

가. 보험료사기

■ 산재보험료사기는 사업주가 보다 유리한 산재보험료를 적용받기 위해 산재보험 운영기관 또는 근로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의미함.

〈표 1〉 산재보험료사기 유형

내용
• 유리한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사업주가 업종을 오분류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과소 신고하는 수법 • 유리한 개별실적요율(또는 경험요율)을 적용받기 위해 과거 산재급여 수령기록을 조작하거나 산재사고를 은폐 또는 축소하는 수법 • 유리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기 위해 피재근로자의 수급자격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수법 • 보험료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않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수법 • 산재보험을 피하기 위해 독립적 계약자 지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근로자 임대 협정을 악용

- 보험료사기의 유형으로 주로 낮은 산재보험료 적용을 위한 업종 오분류, 근로자 임금 과소신고, 산재 관련 과거기록 조작 및 가공, 피재근로자 수급자격 부정 등이 있음.
- 이밖에도 보험료 증가나 산재보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 기피, 근로자 임대협정 악용 등의 수법이 있음.

■ 경기가 침체되거나 사회보장 기여금이 높을수록, 그리고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엄격할수록 사업주의 보험료사기 및 근로자기망이 증가함.

-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사업주들이 산재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과거사고율과 임금을 낮추어 신고하거나 위험도가 낮은 업종으로 신고할 개연성이 높음.
- 산재보험을 비롯한 고용 및 실업보험의 요율이 증가하거나, 최저임금, 최대근로시간, 안전기준 등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면 사업주의 보험료사기 및 근로자기망 가능성이 높아짐.

나. 보험금사기¹⁾

■ 산재급여를 청구함에 있어서 악의와 고의를 가지고 실제사실과 다르게 허위·부정 청구하는 것을 산재 보험금사기라고 함.

〈표 2〉 산재보험금사기 유형

구분	내용
요양신청단계 부정수급	• 산재브로커가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상해조, 목격자조, 환자조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산재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 • 브로커, 진폐요양 의료기관 관계자 및 환자 등이 공모하여 진폐 정밀진단 과정에서의 환자의 객담을 바꿔치기 하여 요양승인을 받도록 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수법 •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 행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꾸며 요양신청을 하는 수법 •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주가 미가입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자, 50% 보험급여 징수금을 면하기 위해 다른 가입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작하는 수법 • 하도급 사업주 또는 개인사업주가 근로자로 속여 요양 신청하는 수법 • 타인명의로 또는 타인의 명의와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요양 신청하는 수법
요양단계 부정수급	• 통원치료 중인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편취하는 수법 • 사망한 의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서 진폐요양 의료기관으로 지정받는 수법 • 환자에게 투약이나 주사 등을 하지 않았으면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불필요하게 과잉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수법 • 요양 중 취업한 기간 동안 부당하게 휴업급여를 수령하는 수법
기타 공모를 통한 부정수급	• 높은 장해등급을 받기 위해 심인성 장애를 호소하거나, 의료기관과 공모하여 장해상태를 과장하여 진단하고 장해등급을 높게 판정받는 수법 • 보험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 사업주와 공모하여 평균임금을 조작하는 수법 •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경감 또는 면탈할 목적으로 근로자와 공모하여 평균임금을 고의로 부풀리는 수법

1) 정광업(2010), 「산재보험 부정수급의 현황과 과제」 참조함.

- 산재보험급여의 부정수급 또는 보험금사기는 요양신청 또는 요양과정에 해당하는 급여수급단계별로 그 양태를 구분할 수 있음(〈표 2〉 참조).
- 이밖에 사업주가 의료제공자나 근로자와 공모하여 장해등급을 높이거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조작함으로써 산재보험금 수준을 높이는 수법도 있음.

3. 캘리포니아주의 산재보험사기



가. 캘리포니아주의 산재보험

- 캘리포니아주의 산재보험제도는 무과실 책임제도로써 사업주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
-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 시 근로자 본인의 치료와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 업무상 재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과 사업주의 보험료 전액 부담은 우리나라와 동일함.
- 캘리포니아주는 산재보험 규모가 미국에서 가장 크며 주정부와 민영보험회사가 경쟁적으로 산재보험을 제공함.
- 캘리포니아주는 2010년 기준 300개가 넘는 민영보험회사와 주기금(State Compensation Insurance Fund)이 경쟁적으로 산재보험을 제공하고 있음.
 - 2010년 기준 캘리포니아 주기금의 산재보험시장 점유율은 16%로 1위를 유지하고 있음.²⁾
 - 주정부 내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의 승인 하에 대형 사업장은 자가보험(self-insurance)에 가입하기도 함.

2)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 "Market Share by Line, by Company Name"을 참조함.

〈표 3〉 미국의 산재보험 운영체계

1960년	
공영독점(7개주)	공사경쟁 (11개주)
네바다,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리건,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아이다호, 메릴랜드, 미시간, 몬태나, 뉴욕,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유타
1960년 이후 변화	
• 다원경쟁 → 순수민영경쟁: 미시간(1994. 01. 01) • 공영독점 → 순수민영경쟁: 네바다(1999. 07. 01), 웨스트버지니아(2008) • 순수민영경쟁 → 다원경쟁: 오리건(1966. 01), 미네소타(1984. 04), 뉴멕시코(1991. 12), 텍사스(1992. 01), 루이지애나(1992. 10), 로드아일랜드(1992. 10), 메인(1993. 01), 미주리(1995. 03), 켄터키(1995. 09), 하와이(1997. 07)	

자료: 송운아(2010), 「산재보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보험연구원.

■ 미국의 산재보험요율은 3가지 단계를 거쳐 결정되는데, 우선 주(州)별 평균요율이 산출되고 다음으로 각 산업별 조정이 이루어진 후 개별기업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짐.

- 주별 평균보험료는 업종별 단위위험 노출량당 평균손실 및 운영비를 반영하여 수백 개의 업종별 매뉴얼 요율로 전환됨.
- 업종별 매뉴얼 요율이 설정된 후 개별기업의 요율은 경험요율에 의해 조정되는데 이를 표준보험료라고 함.
- 표준보험료는 그 외 보험료할인 프로그램, 요율조정, 예정요율에 의해 재조정됨.

나. 캘리포니아주의 산재보험사기 접근방법과 대응

■ 캘리포니아주는 체계적 연구를 통해 행위주체 및 양태별 산재보험사기 규모 등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며, 동시에 지속적으로 사기방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산재보험사기 실태파악 노력〉

- 사기사정위원회(Fraud Assessment Commission, 이하 FAC라 함)는 행위주체 및 양태별 산재보험사기 규모를 추정하고 적발 및 방지 방안을 제시함.
- 1991년 보험사기방지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FAC는 산재보험사기에 대한 연구를 기획하고 조사 및 기소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조성함.

● FAC는 근로자의 부정수급에만 집중하였던 과거와 달리, 사업주의 보험료사기 및 근로자기망, 의료제공자의 부정수급 등으로 관심을 확대함.

■ 캘리포니아주의 연구 결과, 사업주가 산재보험비용을 줄이기 위해 임금을 과소신고하는 정도는 평균 산재보험료 수준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³⁾

- 산재보험료 수준이 낮을 때 사업주는 근로자 임금을 1~4% 적게 신고하고, 산재보험료 수준이 높을 때는 10~12% 적게 신고함.
- 건설업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업종은 임금의 40~60% 정도가 과소신고된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지하경제 추정규모가 600억~1,400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사업주의 보험료사기 및 근로자기망이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유추됨.⁴⁾

■ FY2008 기준 캘리포니아주 의료제공자의 산재보험 부정청구율은 21.9~27.4%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9억 3,300만~11억 6,800만 달러의 보험금이 누수된 것으로 추산됨.

〈표 4〉 캘리포니아주 의료제공자의 산재보험 부정청구율 추정결과

(단위: 백만 달러)

추정방법	캘리포니아주 산재보험 연간 의료비 지출	부정청구금액	부정청구율(심도)
A	4,261	933	21.9%
B	4,261	1,168	27.4%

주: 1) 의료제공자의 부정청구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오류를 포함함.

2) 추정방법A의 경우 진료내역서를 토대로 부정청구의 빈도와 심도를 추정하는 반면 추정방법B의 경우 진료내역서 뿐 아니라 electronic process review와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정청구의 빈도와 심도를 추정함.

자료: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2008), Workers' Compensation Medical Payment Accuracy Study.

〈산재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 노력〉

■ 캘리포니아주는 모든 산재보험사기 혐의 건이 보험사기국과 지방감사에게 동시에 보고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FAC는 사업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정부와 지방감사들의 산재보험사기 조사 및 기소를 지원함.

3) Neuhauser Frank, Donovan Colleen(2009), "Fraud in Workers' Compensation Payroll Reporting: How Much Employer Fraud Exists? How are Honest Employers Affected?".

4)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http://www.bettzedda.org/PDF/voicesfromtheunderground.pdf>.

■ 또한, 근로자의 부정청구 조사에 집중하였던 과거와 달리,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보험료사기를 포함한 사업주의 근로자기망에 대한 조사를 늘리고 있음.

- FY2008 기준 근로자의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비율은 50.7%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사업주의 사기적 행위에 대한 조사비율은 38.7%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이는 보험료사기를 비롯한 사업주의 사기적 행위에 대한 폐해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조사 및 적발 환경이 개선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표 5〉 캘리포니아주 산재보험사기 유형별 조사실적

구분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
근로자의 부정수급	72.6%	60.1%	69.2%	57.1%	54.1%	54.1%	50.7%
사업주의 사기	15.4%	29.1%	23.2%	33%	37.1%	36.3%	38.7%
의료제공자의 부정청구	5.6%	5.0%	4.9%	7.0%	4.8%	4.5%	5.4%
기타	5.6%	5.7%	5.2%	7.9%	5.6%	4.7%	5.7%
조사건수	1,739건	1,957건	2,136건	2,757건	1,439건	1,319건	1,317건

주: 1) 사업주의 사기적 행위는 보험료사기뿐 아니라 산재보험 미가입을 비롯하여 관련된 모든 근로자 기만행위를 포함함.
 자료: The California Commission on Health and Safety and Workers' Compensation 2010 Annual Report.

〈산재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 캘리포니아주는 부정수급뿐 아니라 사업주의 보험료사기 및 근로자기망을 중죄로 규정함.

- Insurance Code Section 1871.4와 Labor Code Section 3820은 산재보험급여를 수급 또는 거절하고자 중요 사실을 조작·가공 또는 허위진술하거나, 이를 공모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함.
- 특히, Insurance Code Section 1871.4(a)4는 피재근로자의 산재급여 신청을 막기 위해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중요 사실을 조작·가공 또는 허위진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함.
- 산재보험사기에 대해 민사제재금으로 4,000~1만 달러와 의료비용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Labor Code 3820. d), 형사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과 15만 달러 또는 사기금액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음(Insurance Code Section 1871.4(b)).

■ Insurance Code 1871.9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주는 2005년 1월부터 산재보험사기로 유죄를 판결받은 자에 대한 상세정보를 주정부 보험과(CDI: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 웹사이트에 5년 동안 게시하도록 함.

- 사건번호, 관할법원, 사건관련 정보, 피고자 성명, 피고자의 최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 유죄 판결일자, 사건내용, 편취금액, 처벌내용 상세를 게재하도록 함.⁵⁾

〈검토 중인 방안〉

- 사업주의 보험료사기에 대한 폐해와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험료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와 효과적인 적발 및 방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FAC가 조달한 기금을 보험료사기의 적발 및 방지 활동에 집중적으로 할당하고, 보험료사기에 대한 민사제재금 및 형사벌금 인상을 검토 중임.
 - 사업주의 사기적 행위 적발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공제, 장애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소유한 고용발전과(EDD: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와의 데이터 공유도 검토 중임.
- 의료제공자의 부정청구 대응방안으로서 진료비 데이터의 통합화, 진료비 내역 알림서비스의 도입, 산재보험 의료제공자 등록제의 도입이 논의 중임.
 - 오하이오와 워싱턴주처럼 주정부가 산재보험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주에서는 의료비 데이터의 통합화가 이뤄져 의료제공자의 부정청구가 효과적으로 적발·방지됨.
 - 환자에게 진료비 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일반화된 건강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의 경우 환자가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없어 주기금 또는 보험회사가 환자에게 진료비 내역을 알릴 유인이 없었으나 이를 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4. 대응방안과 시사점



- 캘리포니아주의 산재보험제도는 운영체제 및 효율체계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상이하나, 산재보험사기에 대한 접근방식 및 대응방안을 일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5) <http://www.insurance.ca.gov/0300-fraud/0100-fraud-division-overview/0500-fraud-division-programs/works-comp-fraud/index.cfm>

- 캘리포니아주의 산재보험은 공사경쟁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위험도에 따라 업종이 600개 이상으로 세분화됨.
- 반면,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공영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61개 업종으로만 구분됨.

■ 산재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첫째, 현행법은 부정수급과 달리 사업주의 보험료사기와 근로자기망에 대해 형사제재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규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의료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 현행법은 보험료사기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함(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제50조).
- 그러나, 사업주가 낮은 보험료를 적용받기 위한 임금 또는 근로자 수를 미신고 혹은 과소신고, 과거 산재사고 경험 조작·가공, 업종 오분류 등의 보험료사기에 대해 형사제재가 필요함.
- 특히, 피재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의도적 거절, 피재근로자의 산재수급자격 관련사실 조작·가공 또는 허위진술 등 근로자기망에 대한 형사제재가 절실함.

■ 둘째, 근로자의 수급자격을 부정하기 위해 사실을 조작·가공 또는 허위진술을 한 사업주, 의료제공자, 법률서비스제공자에 대해 관련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한하여 인적사항 등을 관보 또는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게시하도록 함(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제28조의 6).

■ 셋째, 행위주체 및 양태별 산재보험사기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효과적인 적발 및 방지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산재보험사기의 실체에 대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정부부처, 민영보험,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사업주의 임금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등을 막기 위해 정부부처 간 정보공유가 필요함.
- 의료제공자와 근로자의 부정수급 적발과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 및 민영보험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kiri**



구조화된 지급방식(Structured Settlement)과 시사점

조재린 연구위원 / 정인영 연구원

요약

■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시금 지급에 따른 조기소진 가능성으로 보험금의 본래 목적인 피해 가정의 소득보상원칙이 훼손될 수 있음.

- 2010년 총 280,607건의 재난사고가 발생하여 366,911명의 인명피해(사망 6,758명, 부상 359,840명)가 발생함.
-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은 인적사고 보험금의 조기소진은 생계 및 자녀교육에 곤란을 초래하며 나아가 가정파탄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리스크로 진전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인적사고 발생 시 보상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적어도 일부를 정기금(연금) 형태로 보상받는 방법인 구조화된 지급방식(structured settlement)을 사용하고 있음.

- 구조화된 지급방식이란 가해자나 그들의 손해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대신 생명보험회사에 배상책임을 이전하여 연금형태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임.

■ 이러한 구조화된 지급방식은 일시금의 조기탕진을 막아 피해자의 재정안정성을 제고시키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조세혜택 등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동 제도를 장려함.

■ 이에 우리나라도 기존의 정기금 지급 관련 법규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정기금 수령 필요성에 대한 인식 향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험금의 정기금 수령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야 함.
- 아울러,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정기금 수령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그 결과 동 제도의 활용을 통해 인적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험금이 단기간에 소멸되지 아니하고, 장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지급되게 함으로써 사고 가정의 건전한 복구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 현재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시금 지급에 따른 조기소진 가능성으로 보험금의 본래 목적인 피해가정의 소득보상원칙이 훼손될 수 있음.

- 2010년 재난사고로 인해 하루 평균 약 19명이 사망하고 986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적피해가 발생하였음.
-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인적사고 관련 보험금의 조기소진은 생계와 자녀교육에 곤란을 초래하며 나아가 가정파탄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리스크로 진전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일시금 수령자의 약 90%가 보험금을 5년 이내 탕진하는 것으로 알려짐.¹⁾
- 특히, 부모 사망 시 보험금 수익자인 유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법정대리인(친족)이 보험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 미국에서는 이러한 일시금 형태의 보험금 지급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금을 연금처럼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구조화된 지급방식(structured settlement)이 활용되고 있음.

- 구조화된 지급방식이란 가해자나 그들의 손해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대신 양수인(assignee)에게 배상책임을 이전하여 정기금형태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조세혜택 등의 인센티브로 동 제도를 장려하고 있음.

■ ■ 본고에서는 미국의 구조화된 지급방식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Jeremy N.Babener(2009), Justifying the Structured Settlement Tax Subsidy: The Use of Lump Sum Settlement Monies.

2. 우리나라의 정기금 지급 현황



■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산재보험을 제외하면 손해배상금 지급방식으로 일시금 지급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음.

● 「민법」 제751조제2항에서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은 정기금 채무 방식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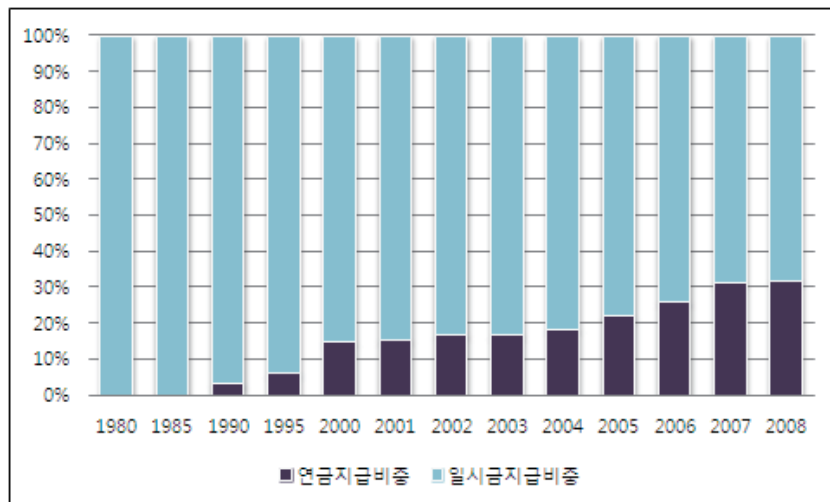
－ 그러나 재판 실무에서 손해배상금 지급방식은 대부분 일시금임.³⁾

■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일시금 지급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음.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보험금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보험연구원 설문조사(2011)」 결과, 전체의 약 8%만이 이러한 약관 내용을 인지하고 있음.

〈그림 1〉 산재보험의 연금지급 현황



자료: 산재보험사업연보(2009).

2)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명할 수 있음.

3) 최은순(2008), 「신체사고에서의 정기금 배상」.

- 반면,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장애 시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의 지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 연금보상금이 전체의 30%를 넘어서며 증가 추세에 있음.

3. 미국의 구조화된 지급방식(Structured Settl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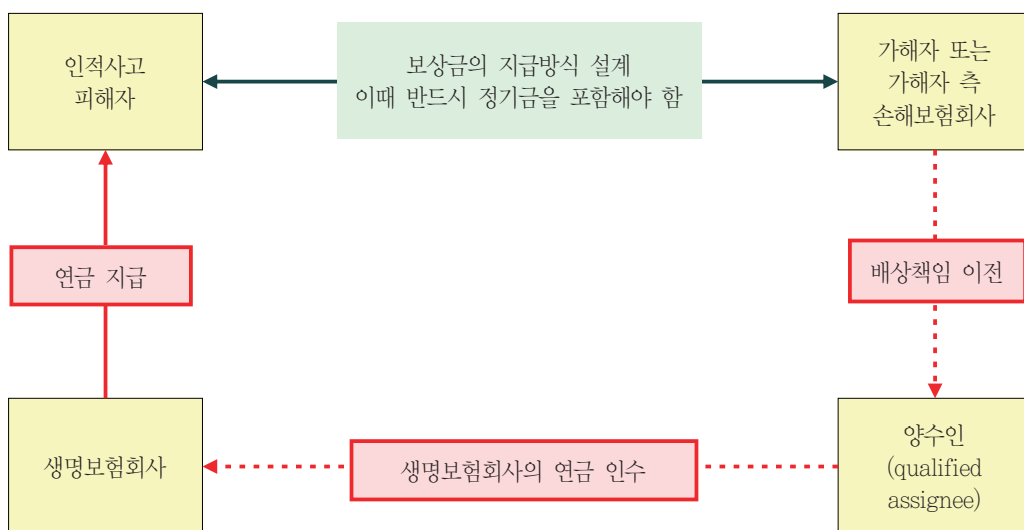


가. 개관

- 구조화된 지급방식이란 인적사고 발생 시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적어도 일부를 정기금(연금) 형태로 보상받도록 하는 방법임.

- 가해자나 그들의 손해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대신 양수인(assignee)에게 배상책임을 이전하여 정기금 형태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임.
 -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agreement) 또는 소송(suit)을 통해 이루어짐.
 - 양수인(assignee)은 주로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경우가 많고, 구조화된 지급방식 계약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그림 2〉 구조화된 지급방식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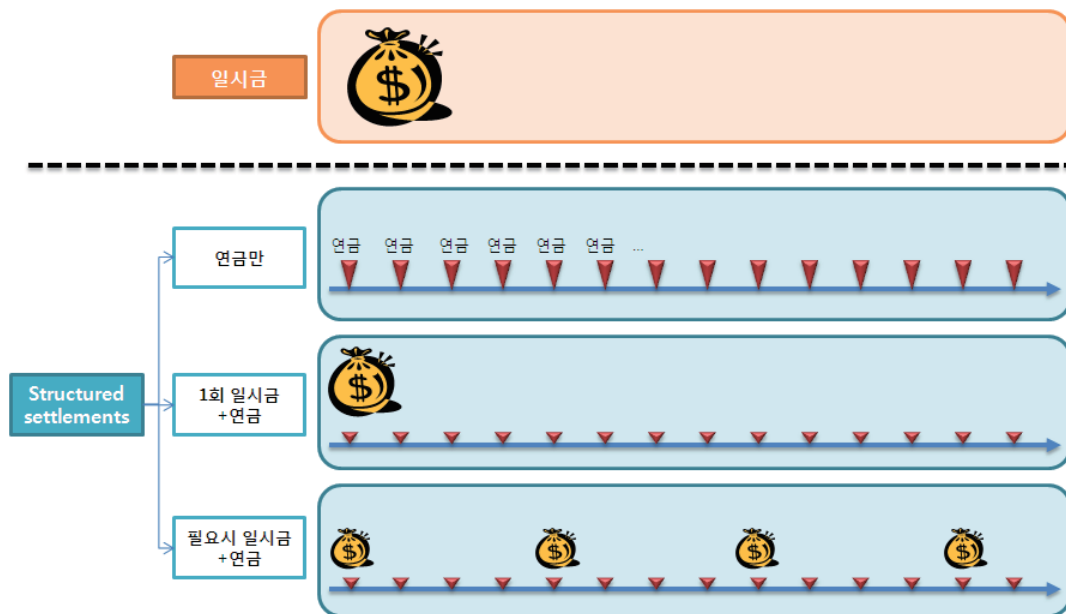
■ 이러한 구조화된 지급방식은 일시금의 조기소진을 막고 안정된 흐름의 소득을 제공함으로 피해자의 재정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임.

- 장기간의 의료케어나 생활비 보조가 필요한 경우, 사망 후 유족에게 정기적인 수입이 필요한 경우, 유족이 미성년자나 무능력자와 같이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 안정적으로 장기에 걸쳐 보상을 지급할 수 있음.
- 보상금 수령은 우수한 생명보험회사의 연금 구입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가해자의 재무상태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급부를 지급받을 수 있음.

■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나 경제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령방법, 지급기간, 지급규모 등 지급방식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음.

- 연금과 더불어 목돈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일시금의 혼합 수령도 가능함.
- 1회 일시금과 연금을 혼합하여 수령 시 일시금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은퇴시기에 맞춰 수령하여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 － 생계유지비, 자녀교육비, 소비재구입, 저축, 채무 청산 등이 있음.
- 연금과 함께 일시금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일시금 수령시기를 설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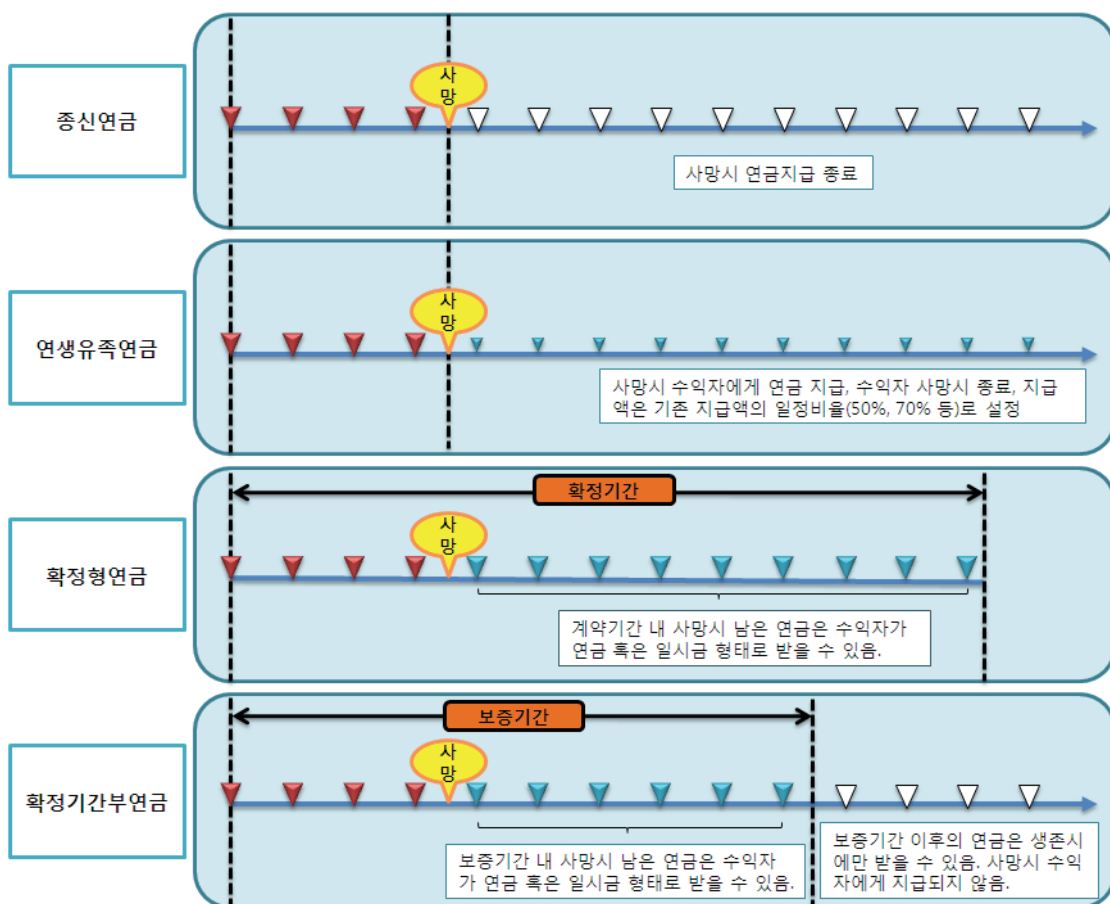
〈그림 3〉 수령방법(일시금 또는 연금)에 따른 옵션



■ 사망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지급보증을 통해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음.

- 연생유족연금(joint and survivor annuity)의 경우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면 남은 연금은 수익자의 사망 시까지 지급되며, 지급규모는 원 지급액의 일정비율로 설정할 수 있음.
- 확정형연금(life annuity certain)의 경우 계약기간 내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연금은 지정수익자가 연금 혹은 일시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음.
- 보증기간부연금(whole life with guaranteed period)의 경우 보증기간 내 연금수급권자 사망 시 잔여기간 내 연금을 지정수익자가 연금 혹은 일시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음.
 - 보증기간 이후의 연금은 연금수급권자 본인의 생존 시에만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 이후에 사망할 경우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음.

〈그림 4〉 지급기간과 수익자 지정에 따른 옵션



나. 현황

■ 최초의 구조화된 지급방식은 1968년 미국 Thalidomide 수면제 제조업자인 Richardson-Merrill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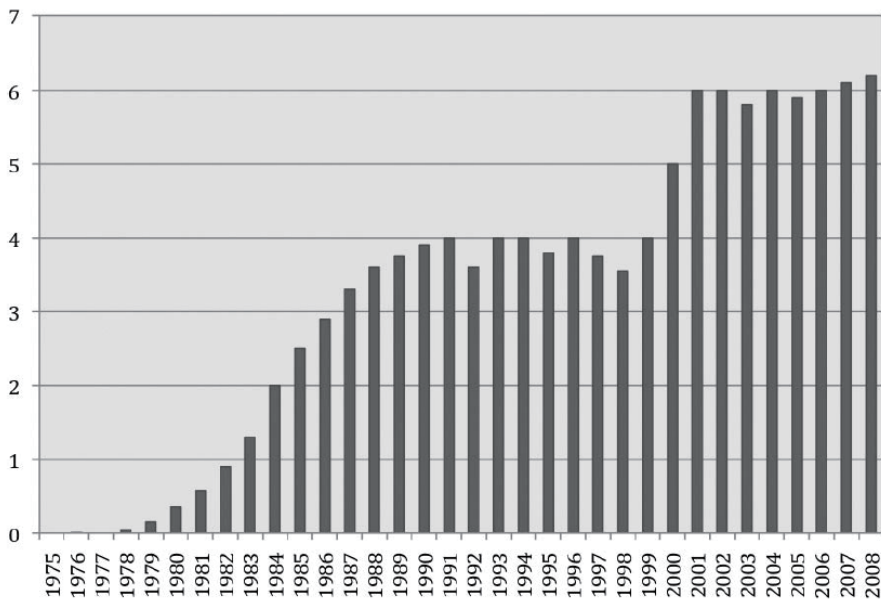
● 원고는 임신 중 수면제를 복용할 경우 태아에게 영구적인 심각한 신체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정기금 형태로 지불할 것을 동의함.

■ 이후 구조화된 지급방식은 비과세 혜택의 조세조치로 크게 활성화됨.

- 1982년 Periodic Payment Settlement Tax Act에 따라 내국세법전(Internal Revenue Code, IRC)에 구조화된 지급방식 관련 비과세 제도가 제정됨에 따라 시장은 급속히 성장함.
- 1976년 약 500만 달러, 1979년 3,000건 미만이던 구조화된 지급방식의 연금시장규모가 1983년 15억 달러(15,000건)를 넘어섰고, 1990년대 초반 약 40억 달러로 성장함.
- 2008년 약 60억 달러 이상의 구조화된 지급방식 연금이 판매되었는데, 이는 총 인적상해보상규모인 1,300억 달러의 약 5%로 추정됨.

〈그림 5〉 구조화된 지급방식 연금 판매규모

(단위: 십억 달러)



자료: Jeremy Babener(2010), 「Structured Settlement and Single-Claimant Qualified Settlement Fund」.

다. 관련 세제

■ 미국 정부 차원에서 조세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구조화된 지급방식 제도를 장려하고 있음.

- IRC.Sec.104(a)(1)(2)에 따르면, 산재를 포함하여 신체적 상해나 질병에 대한 보상(징벌적 보상 제외)을 소(suit) 또는 합의(agreement)에 의해 정기금 형태로 받을 경우에도 비과세 함.
- IRC.Sec.130에 따르면, 가해자의 배상책임이전계약(정기금배상책임의 수탁)을 통해 수탁자(assignee)가 안전한 자산, 즉 우수한 생명보험회사의 연금 또는 국채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경우 수탁자의 총비용(수수료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비과세 함.
- 이 때 정기금은 그 규모와 기간이 고정되어 연금수급권자의 의사에 따라 조기지급 또는 지급연기,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없음.
- IRC.Sec.130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미래의 정기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무상태에 관계없이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되는 권리를 갖고 안정적으로 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는 데 있음.
 - 1988년 「세법」은 구조화된 지급방식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갖도록 변경됨.

4. 결론 및 시사점



■ 정부는 기존의 정기금 지급 관련 법규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정기금 수령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함.

- 보험회사에게 인적사고 보상금의 정기금 수령가능 여부에 대해 알림 의무를 부과하고, 구조화된 지급방식에 적합하도록 개인의 니즈에 맞춰 다양한 소득흐름을 보장하는 일시납 즉시연금상품 개발을 촉구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적사고 피해자에게는 보상금의 정기금 수령 시 세제혜택 및 우선변제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기금 수령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배상책임을 이전받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배상책임 관련 보상금에 대한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하여 그 차이만큼 피해자의 연금수령액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아울러,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자사 수탁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자사 수탁 시 신계약비 면제를 통해 피해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

-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는 배상책임보험상품과 연금 형태의 장기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있음.
- 그 결과 미국과 같이 배상책임을 생명보험회사에 이전할 필요 없이 자사 상품 구입을 통해 구조화된 지급방식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

■ 이러한 구조화된 지급방식 제도의 활용을 통해 빈발하는 인적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험금이 단기간에 소멸되지 아니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지급되게 함으로써 사고 가정의 건전한 복구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키리**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 기능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시사점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 또는 보험회사는 사고원인 및 손실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조속한 피해회복은 물론 손실 조작·가공을 이용한 보험금 부정청구 행위를 억제하며, 가·피해자 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함.

- 경찰 또는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신고 및 조사제도를 통해 사고원인 및 손실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교통사고 확인기능’이라 함.

■ 그러나 보험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금 부정청구 피해와 과실상계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은데, 이는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함.

- 자신의 보험회사가 상대피해자의 치료 및 차량수리를 위해 지급한 보상금액이 기대했던 것보다 컸다는 응답이 27.3%를 차지하고, 상대피해자가 진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믿는 응답자는 37.8%에 불과함.
- 또한, 응답자의 22.8%는 사고현장 초동조사의 미비 또는 부재로 가해자로 오해받았거나 과실책임이 늘어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찰과 보험회사의 과실상계를 신뢰한다는 의견은 각각 33.7%, 28.7%에 그침.

■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부정청구로 인한 피해 방지와 과실책임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2% 이상을 차지함.

- 특히, 불공정한 과실상계 피해보다 보험금 부정청구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찬성한 응답자 비율이 높는데, 이는 부정청구의 경우 보험회사만의 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보여줌.

■ 상대피해자의 부정청구에 따른 보험료 할증 피해 방지와 과실책임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 어느 정도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을 감안하면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 제고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함.

- 구체적으로 사고발생 즉시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사고발생을 전화로 신고 또는 통보하거나, 이들의 현장출동을 기다리거나, 사고현장사진을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경찰과 보험회사 간 사고조사기록 공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또는 ‘항상’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47% 이상을 차지함.

1. 검토배경



■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 또는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신고 및 조사제도를 통해 사고원인 및 손실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조속한 피해회복은 물론 손실 조작·가공을 이용한 보험금 부정청구 행위를 억제하며, 가·피해자 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함.¹⁾

-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에 교통사고의 경찰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1991년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일지라도 당사자의 개인적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때에만 해당한다'고 판시함.
- 또한, 「상법」 제657조는 사고당사자가 사고를 인지한 경우 사고내용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교통사고 신고 및 조사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경찰과 보험회사의 사고원인 및 손실규모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첫째, 1991년 대법원 판례 이후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한 교통사고 경찰신고의무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어 교통사고의 경찰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²⁾

1) 경찰 또는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신고 및 조사제도를 통해 사고원인 및 손실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교통사고 확인기능'이라 함.

2) FY2008 기준 교통사고 경찰신고 건수는 보험사고접수 건수의 21%에 불과함.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람. 송윤아(2011. 6. 7), 「자동차 인적사고의 경찰신고 활성화 필요성: 보험사기 감소효과」, 주간이슈, 『Kiri Weekly』 제134 호,

- 둘째,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때문에 사고당사자가 경찰신고를 기피하고, 가능한 경찰 개입 없이 보험처리 또는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려는 경향이 있음.
- 셋째, 사고당사자의 사고 발생 통지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보험회사에 사고통지가 지연되어 사고현장 초동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
- 넷째, 보험금 청구 시 사고현장사진 등 현장초동조사를 대체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내용 및 피해규모가 가공 또는 조작될 수 있음.
- 다섯째, 견인 및 환자이송 수수료 관행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견인차 및 구급차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현장을 훼손함으로써 경찰 및 보험회사의 사고원인 및 손실규모 파악을 어렵게 함.
- 여섯째, 경찰과 보험회사 간 사고조사 내용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원인 및 손실규모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과실상계에 대한 불만이 확대되고 자동차 보험금 부정청구로 인한 피해도 심각함.³⁾

■ 이에 본고는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에 대한 사고운전자의 경험과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본 후 관련 시사점을 도출함.

-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에 대해 보험연구원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방법으로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1,014명의 사고운전자를 대상으로 2011년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 면접조사를 실시함.

2.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에 대한 인식



■ 설문조사 응답자 중 41%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교통사고 관련 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편이라는 의견을 보였는데, 그 이유로 응답자의 30%가 경찰의 교통사고 확인기능 미비를 들고 있음.

보험연구원.

3) 송윤아(2010. 7. 26), 「자동차보험 위장환자 유발요인 및 대응방안」, 주간이슈, 『Kiri Weekly』 제91호, 보험연구원.

- 특히, 응답자 중 12.8%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적발 및 처벌받지 않으므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함.
- 또한, 응답자의 16.7%는 교통법규 준수여부를 경찰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함.
- 그 외 운행상의 편리함(31.5%), 법규의 비현실성(13%), 법규에 대한 무지(8.6%)때문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함.

■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조사 및 처리 결과에 대해 만족 또는 신뢰한다는 의견은 40%에도 미치지 못함.

-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및 처리 결과에 대해 신뢰 또는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34.5%, 불신 또는 불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8.7%를 차지함.
-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조사 및 보상에 대해 신뢰 또는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31.8%, 불신 또는 불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8.2%를 차지함.

■ 실제로 상대피해자의 과장청구 또는 불공정한 과실상계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고운전자일수록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조사 및 처리 결과에 대해 불신하는 경향이 있음.

- 상대피해자의 과장청구 경험이 있는 사고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 조사 및 처리 결과와 관련하여 경찰과 보험회사에 대해 각각 22.3%, 20.7%가, 반면 과장청구 경험이 없는 사고운전자는 각각 10.6%, 13.0%가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불공정한 과실상계 경험이 있는 사고운전자 중 동 사항에 대해 각각 24.7%, 22.5%가, 해당 경험이 없는 사고운전자의 경우 각각 17.0%, 16.9%가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피해경험 유무별 경찰 및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에 대한 인식

구분	상대피해자의 과장청구 피해경험		불공정한 과실상계 피해경험	
	유경험자	무경험자	유경험자	무경험자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및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	22.3%	10.6%	24.7%	17.0%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조사 및 보상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	20.7%	13.0%	22.5%	16.9%

- 이처럼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조사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사고운전자의 불신과 불만은 자동차 보험금 부정청구와 불공정한 과실상계에 대한 경험·인식 등을 통해 가중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자동차 보험금 부정청구 피해에 대한 경험과 태도



- 자신의 보험회사가 상대피해자의 치료 및 차량수리를 위해 지급한 보상금액이 기대했던 것보다 컸다는 응답이 27.3%를 차지함.
- 한편,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피해자가 진실하게 치료 또는 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7.8%에 불과함.
 - 응답자 중 59%는 통원치료가 권장되는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선택하고 가능한 많은 보험금을 청구·수령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을 보임.
 - 또한, 응답자 중 62.8%는 자동차보험의 과잉진료 및 수리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의견을 나타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30.9%는 가족이나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 부상 및 손해에 대해 약간의 염살은 괜찮다는 조언을 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냄.
 - 반면, 68%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규정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만 받아야 한다는 조언을 하겠다는 의견을 보임.
- 응답자 중 82.3%는 과잉진료 또는 수리 등을 적발·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교통사고 처리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한편, 38.8%는 경찰신고의무대상 교통사고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냄.
 - 반면, 현행 경찰신고대상 사고의 범위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58.9%를 차지하며, 동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4%를 차지함.

■ 설문조사 결과는 경찰과 보험회사의 철저한 초동조사를 비롯한 교통사고 확인기능이 제고된다면 보험금 부정청구로 인한 피해가 평균 29% 줄어든 것이라는 기대를 보여줌.

- 사고 발생 즉시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동 사고를 통보함으로써 현장출동 및 초동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정청구가 적어도 17% 감소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사고 당시 사고당사자가 사고현장 및 피해상황을 촬영하여 이를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적어도 20%, 그리고 경찰과 보험회사가 사고조사기록을 공유할 경우 22% 가량 부정청구가 감소할 것으로 봄.

〈표 2〉 교통사고 확인기능 제고에 따른 부정청구 기대 감소율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 제고방안	부정청구 기대 감소율	
	과잉진료	과잉수리
사고 발생 즉시 전화로 경찰에 사고발생을 신고하는 경우	17.7%	18.0%
사고 발생 즉시 전화로 보험회사에 사고 발생을 통보함으로써 보험회사의 현장출동 및 초동조사가 이뤄지는 경우	18.8%	19.5%
사고 발생 즉시 사고당사자가 사고현장 및 피해상황을 촬영하여 이를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20.5%	21.5%
경찰과 보험회사가 사고조사기록을 공유하는 경우	21.9%	22.7%
상기 모든 조치가 병행되는 경우	28.5%	29.0%

주: 상기 열거된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 제고방안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의 관련 제도를 참고하여 제시한 것임.⁴⁾

■ 상대피해자의 부정청구로 인한 보험료 할증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사고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사고현장 사진을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수고를 기꺼이 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사고 발생 즉시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동 사고를 전화로 신고 또는 통보하거나, 이들의 현장출동을 기다리거나, 경찰과 보험회사 간 사고조사기록 공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또는 ‘항상’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47% 이상을 차지함.
- 다만, 범칙금 및 벌점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경우 이러한 적극적 경찰신고 의지가 47%에서 35.8%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4) 송윤아(2011. 10. 5), 「미국의 교통사고 신고제도와 시사점」, 주간포커스, 『Kiri Weekly』 제151호, 보험연구원.

〈표 3〉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 제고방안 수용도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 제고방안	응답		
	보통 수용	대부분 수용	항상 수용
사고 발생 즉시 사고 내용을 경찰에 전화로 신고한다	38.7%	43.4%	3.5%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 받게 되더라도 경찰에 신고한다	40.8%	29.5%	6.3%
사고 발생 즉시 사고 내용을 보험회사에 전화로 통보한다	30.8%	48.5%	13.0%
사고당사자가 사고 발생 즉시 사고현장 및 피해상황을 촬영하여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제출한다	38.1%	43.4%	6.6%
경찰과 보험회사 간 사고조사기록 공유를 허용한다	32.3%	50.2%	7.5%

4. 불공정한 과실상계에 대한 경험과 태도



■ 응답자 중 22.8%는 사고현장 초동조사의 미비 또는 부재로 인해 가해자로 오해받았거나 과실책임이 늘어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교통사고 초동조사의 미비 또는 부재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거나 정확한 과실책임 규명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흔하다는 의견이 39.8%를 차지함.
- 경찰과 보험회사의 과실상계에 대해 신뢰 또는 만족한다는 의견은 각각 33.7%, 28.7%에 불과함.

■ 교통사고 초동조사의 미비 또는 부재로 야기되는 부작용에 대한 인지도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범칙금과 벌점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한 추돌사고로 상대운전자가 중상을 입을 경우 응답자의 76.1%가 경찰에 동사고를 신고하겠다는 의견이었으나, 범칙금과 벌점 부과 가능성이 제시되자 응답자의 67.9%만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냄.

■ 응답자 중 62.2%는 사고원인과 과실책임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교통사고 처리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임.

- 적극적 경찰 개입 필요성과 관련하여 사고운전자는 불공정한 과실상계의 피해보다는 상대피해자의 보험금 부정청구로 인한 피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과실상계와 달리 부정청구의 경우 보험회사만의 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보여줌.

■ 경찰과 보험회사의 철저한 초동조사를 비롯한 교통사고 확인기능이 제고됨으로써 보다 공정한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72% 이상을 차지함.

- 사고 발생 즉시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동 사고를 통보함으로써 현장출동 및 초동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정한 과실상계가 될 것으로 본 응답이 72.5%를 차지함.
- 또한, 사고 당시 사고당사자가 사고현장 및 피해상황을 촬영하여 이를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과실상계가 더욱 공정해질 것이라 답한 응답자가 72.5%임.
- 응답자 중 72.7%는 경찰과 보험회사가 사고조사기록을 공유할 경우 과실상계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봄.

〈표 4〉 교통사고 확인기능 제고에 따른 과실상계의 공정성 제고에 대한 기대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 제고방안	과실상계의 공정성 제고 효과 기대
사고 발생 즉시 전화로 경찰에 사고 발생을 신고하는 경우	72.5%
사고 발생 즉시 전화로 보험회사에 사고 발생을 통보함으로써 보험회사의 현장출동 및 초동조사가 이뤄지는 경우	74.1%
사고 발생 즉시 사고당사자가 사고현장 및 피해상황 촬영하여 이를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72.5%
경찰과 보험회사가 사고조사기록을 공유하는 경우	72.7%
상기 모든 조치가 병행되는 경우	75.2%

5. 제언



■ 교통사고 발생 시 부정청구로 인한 피해 방지와 정확한 과실책임 규명을 위해 교통사고 처리과정에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2% 이상, 경찰과 보험회사 간 사고조사정보 공유를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50% 이상을 차지함.

■ 특히, 불공정한 과실상계의 피해보다는 보험금 부정청구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찬성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는데, 이는 부정청구의 경우 보험회사만의 역량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보여줌.

- 경찰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부정청구 방지는 82.3%, 정확한 과실상계는 62.2%임.

■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 제고를 위해 첫째, 인피사고 또는 물피사고 발생 시 사고당사자가 구호조치 후 사고현장에서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전화로 사고 발생을 신고 또는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사고당사자는 현행과 같이 경찰의 조직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한 인피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통보하되 사고현장을 벗어나기 전에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사고신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사고당사자는 신고기관에 사고위치, 운전자와 동승자의 신분과 연락처,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알릴 필요가 있음.

■ 둘째, 교통사고 통합DB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경찰과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신고 및 조사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경찰 또는 보험회사 중 어느 한 곳에 신고가 되면 해당 사고는 경찰과 보험회사가 공유하는 교통사고 통합DB에 자동 전송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사고현장 초동조사를 마친 경찰 또는 보험회사가 사고조사 내용을 교통사고 통합DB에 입력하여 상호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교통사고 통합DB를 통한 사고조사 내용의 열람 및 공유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개인정보침해 소지를 최소화해야 함.

■ 셋째, 사고당사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 또는 보험회사는 현장출동 여부를 결정하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 현장출동 대신 사고당사자로 하여금 사고현장 사진을 첨부한 사고신고서를 작성하여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통사고 통합DB와 연계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고현장이 보험회사, 경찰서, 모두에게 전송되고, 이를 토대로 보험회사가 사고신고서를 DB에 입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사고당사자의 경우 사고 발생 후 일정 기간 이내로 사고현장 사진을 포함한 사고신고서를 온·오프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는 증거 수집을 위한 현장출동 비용 절감에 따라 사고당사자에게 요율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통합DB의 구축 및 운영 시 경찰이 모든 교통사고의 사고내용을 인지하게되어 사고운전자들의 범칙금 및 벌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범칙금 및 벌금 기준의 한시적 완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통합DB의 운영 시 경찰신고 건과 보험처리 종결 건 간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나,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의 범칙금 및 벌점 부과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이나 자동차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 및 벌점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통합DB의 운영에 따른 사고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을 조기에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범칙금 및 벌점 제도의 폐지는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 약화와 교통사고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 **kiri**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관리 현황과 시사점

변혜원 연구위원

요약

■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극단적 기후현상의 심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날씨의 장기 패턴도 변할 가능성이 높음.

- 기온과 강수량 패턴의 변화로 홍수, 가뭄, 열파 발생빈도가 증가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태풍이나 허리케인의 강도도 높아지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연평균 기온 상승이 전 지구적 온난화 추세를 상회하고 있으며,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도 빈발함.

■ 기후변화리스크는 비재해성 성격을 갖는 날씨리스크를 비롯해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기상현상이나 재해의 위험을 의미하며 물적리스크, 인적리스크, 배상책임 관련리스크를 포함함.

■ 재해리스크관리 방법으로 재해보험을 사용하는 전통적 방법과 대재해채권(CAT bond) 등과 같이 자본시장을 통한 리스크관리 방법이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자연재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의 심도 상승은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킴.
- 한편, 대표적 보험연계증권(ILS: Insurance-Linked Securities)인 대재해채권은 자본시장에 대재해리스크를 전가하면서 대재해손실 부담을 위한 자본조성 역할을 하는데 재해규모가 커지면서 동 시장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기후변화로 인한 대재해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새로운 리스크 전가기법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및 관련 모형 구축, 전문인력 양성, 관련 법규 및 감독규정의 정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규모 확대와 기후변동성 증가를 고려할 때 대재해채권이나 다른 보험연계증권의 활용을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1. 검토배경



■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세가 최근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변화로 극단적 기후현상의 심도와 빈도도 증가함.

- IPCC 4차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50년간 지구 온난화 추세는 $0.13^{\circ}\text{C}/10\text{년}$ 으로 100년간 추세의 2.3배에 해당함.
 - 지구평균기온은 1906~2005년 사이 0.74°C 증가함.
 - 지구온난화의 정도나 원인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후 패턴과는 다른 현상을 보이는 기후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함.
- 기온과 강수량 패턴의 변화로 홍수, 가뭄, 열파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태풍이나 허리케인의 강도도 높아지는 추세임.

■ 기후변화리스크(climate risk)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크게 경감(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주로 적응에 해당되는 이상기후현상 관련 리스크관리 방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대응 방법으로 경감이 손실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적응은 발생손실 처리를 위한 기금 마련에 초점을 둠.
- 경감의 예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 환경친화적 상품 개발, 탄소정보공개 등이 있음.

2. 기후변화와 기후변화리스크



■ 기후변화란 수십 년 또는 그 이상 장기간에 걸쳐 평균적 기후상태나 기후의 변동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는 현상을 의미함.

- 대기 구성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에 기인한 기후변화(climate change)와 자연적 원인에 따른 기후변동성(climate variability)을 구분하기도 함.¹⁾

- 본고에서는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와 자연적 원인에 의한 기후변동성 모두를 기후변화 현상으로 포함하도록 함.

■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전 지구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평균기온 또한 증가하고 있음.

- 2008년 이산화탄소의 전 지구 평균농도는 385.2ppm²⁾으로 산업혁명 이전(1750년 이전)과 비교하여 38% 증가함.
- 지구 평균기온이 1906~2005년에 이르는 100년 동안 0.74℃ 증가하였으며, 최근 들어 온난화 추세가 급격해지고 있음(「IPCC 4차 평가보고서」).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연평균 기온 상승이 전 지구적 온난화 추세를 상회하고 있으며, 주변 해역의 해수면 및 강수량 수준도 상승함.

■ 기후변화리스크는 날씨리스크를 비롯해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극단적 기상현상이나 재해위험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음.

- 날씨리스크(weather risk)는 이해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열파, 한파, 눈, 비, 바람 등의 일상적 기상변화에 대한 재무적 노출을 의미함.
 - 주로 비재해성(non-catastrophic) 성격을 가지고 재산보다는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 간주됨.
- 본고는 빈도가 낮고 심도가 높은 재해성 사건과 관련된 리스크관리 방법들에 초점을 맞추도록 함.

■ 기후변화리스크는 크게 물적리스크, 인적리스크, 배상책임 관련 리스크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리스크의 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는 기상이변을 30년에 1번의 확률로 발생하는 기상현상으로 정의하였으나, 기후변화로 그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발생 횟수와 피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와 같은 강력 태풍, 국부성 집중호우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빈발함.

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 ppm: parts per million, 100만분의 1농도임.

- 한편, 기후변화는 기온, 강수량, 해수면 수위, 극단적 기상현상 빈도 등을 변화시켜 인간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며, 물, 공기, 식량 품질 및 생태계, 농업, 산업, 거주, 경제의 변화를 통한 간접적 영향도 줌.

3. 기후변화리스크 관리 방법



■ 기후변화리스크 중 재해성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홍수보험, 풍수해보험 등 재해보험을 사용하는 방법과 대재해채권(CAT bond: catastrophe bond) 등과 같이 자본시장에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 있음.

- 재해보험이 전통적 보험을 활용한 위험관리방법이라면 보험연계증권(ILS: Insurance Linked Securities)을 이용한 위험관리는 보험사고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금융수단을 사용하여 리스크를 자본시장에 분산하는 기법이 있음.
 - － 보험연계증권 중 대표적인 예가 대재해채권이며, 이 밖에도 대재해스왑, 사이드카³⁾, ILW (Industry Loss Warranties), 사건연계 채권(event-linked bonds) 등이 보험연계증권시장에서 매매됨.

가. 재해보험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관련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재해보험이 이용되고 있음.

- 재해보험 대부분이 정부 주관 하에 민간보험회사를 통해 판매되며, 정부가 국가재보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연재해보험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가입방식을 살펴보면 프랑스와 스위스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 시 자연재해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 홍수보험의 경우에도 홍수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반해 국내 풍수해보험은 임의가입 방식이며, 정부의 지원금이 소진되면 가입이 불가능함.
 - －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법」(법률 제10224호)에 근거함.

3) 재보험사의 인수정책에 관여치 아니하고 자본만을 투자하는 자본유입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추가적인 인수능력을 제공하는 방식임.

〈표 1〉 주요국의 자연재해 정책보험

구분	풍수해보험	미국 홍수보험	프랑스 자연재해보험	스위스 자연재해보험
대상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홍수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자연재해 (지진위험은 제외)
보험사업자	소방방재청 (민간보험회사 운영)	FEMA 직영 (민간보험회사 보험판매, 손해평가 등 위탁운영 병행)	민간보험회사	공영보험: 주정부 운영 민영보험: 민간보험회사
가입방식	임의가입	임의가입 (홍수위험지역 주민 등 의 경우 토지개발규제 및 보험 의무가입)	임의가입 (화재보험의 의무 특약)	임의가입 (화재보험의 의무 특약)
정부지원	정부의 손실보전 (손실보전준비금제도)	국가직영으로 손실보증 (국가홍수보험기금)	CCR을 통한 국가재보험	공영: 정부보증 민영: SIA 보험 pool에 의한 위험 분산

주: 1) 국내 풍수해보험의 경우 정부가 영업보험료의 55~62%를 보조함.

2)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연방재난관리청.

3) CCR (Caisse Centrale de Réassurance): 프랑스 국영 재보험회사.

4) 스위스 건물 중 약 2/3이 공영보험에 가입, 동산은 민영보험만 담보함.

5) SIA(The Swiss Insurance Association): 스위스보험협회.

자료: 소방방재청(2011), 『2011 풍수해보험 실무』.

■ 이 밖에도 각국에서는 농업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부문 손실을 담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협이 농작물재해보험을 제공하고 있음.

- 미국 농작물보험⁴⁾의 경우 농무부 리스크관리청(RMA: Risk Management Agency) 산하 FCIC(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가 보험정책을 수행하고 국가재보험을 운영함.
 - 보장 방식에는 수확량 보장 방식, 수입 보장 방식, 자산기준 방식 등이 있음.⁵⁾
- 일본의 경우에도 농작물공제가 의무가입⁶⁾이며, 동 상품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농업공제재보험 특별회계를 통해 농립수산성(경영국 보험과)이 재보험을 운영함.
 - 시정촌 농업공제조합의 공제, 도도부현 농업공제조합연합회 보험, 정부의 재보험 3단계 체제

4) 1938년 연방농업작물보험법(Federal Agricultural Crop Insurance Act) 제정으로 농작물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0년에 제정된 농업위험방지법(Agricultural Risk Protection Act) 이후 보험 가입률이 상승함.

5) ① 수확량 보장방식: 종합재해보험(MPCI: Multi Peril Crop Insurance), 거대재해보험, 집단위험보험(GRP: Group Risk Plan); ② 수입 보장 방식: 작물수입보험(CRC: Crop Revenue Coverage), 수입보장보험(RA: Revenue Assurance), 소득보호보험(IP: Income Protection), 집단위험소득보험(GRIP: Group Risk Income Plan); ③ 자산기준 방식: 조정총수입보험(AGR: Adjusted Gross Revenue).

6) 가축공제, 발작물공제 등은 농업공제조합 의결에 따라 의무가입이 가능함.

- 현재 우리나라 농협이 제공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180%를 초과하는 거대재해는 정부가 국가재보험으로 인수하고, 나머지 통상재해에 해당하는 손실은 농협이 인수임.⁷⁾
 - 농작물재해보험을 포함하여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법률 제 9477호)에 근거함.

■ 우리나라 재해 관련 보험 가입률은 낮은 상태이므로 재해 관련 리스크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해보험 관련 예산 확대나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010년 기준 12.8%이며 민영보험 풍수재 특약의 경우에도 전체 화재보험 가입 건수 중 약 0.6%만이 가입함(FY2009 기준).⁸⁾

■ 그러나 재해의 심도나 빈도가 높아지면 국가의 재정적 부담도 커질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대재해채권 등을 통한 리스크 전가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나. 대재해채권(CAT b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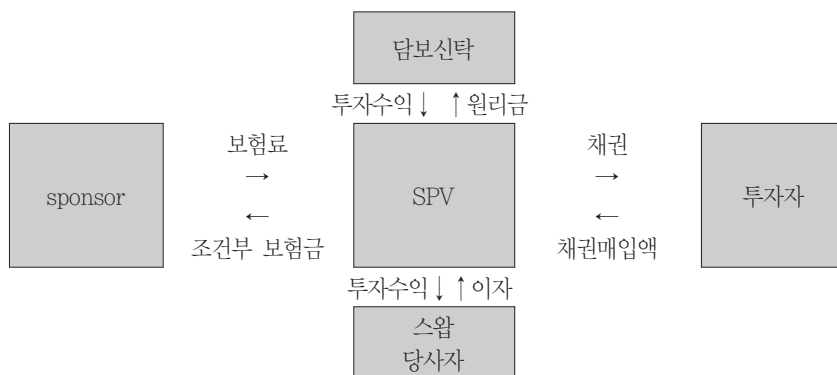
■ 대재해채권은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일반 기업의 대재해리스크를 채권발행으로 자본시장에 분산시키는 금융상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일반 기업은 초과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채권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회사(SPV: Special Purpose Vehicle)에 이전하고 특수목적회사는 보험료와 대재해채권 판매 대금으로 자산을 운용함.
 - 특수목적회사의 기능은 특정 자산의 구입 및 자금 조달에 한정되며, 일반적으로 자회사형태이나 모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지불의무를 다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짐.

7) 농협정책보험부(2009), 『해외 농업보험 현황과 시사점』.

8) 풍수재, 산림풍수재, 붕괴·침강, 홍수 범람, 지진·우담수 특약을 포함한 수치임.

〈그림 1〉 보험연계증권의 구조



자료: Swiss Re Capital Markets.

■ 사고 발생 시 특수목적회사가 발행자(sponsor)인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또는 일반 기업에게 보험금을 지불함에 따라 투자자는 이자 및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은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대재해 채권의 이율은 유사한 등급의 다른 채권보다 높음.
- 대재해채권의 만기가치(payoff)는 사고 발생여부에 의해 결정되는데, 사고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트리거(triggers)에는 보상액, 산업지수, 파라미터, 모형화된 손실 트리거 등이 있음.
 - 보상액(indemnity) 트리거의 경우 사고 발생여부가 채권 발행자의 실제 손실에 의해 결정되나, 산업지수(industry index)트리거를 사용할 경우 산업 손실 지수의 가치에 의해 결정됨.
 - 파라미터(pure parametric) 트리거를 사용하는 경우 보장하는 사고(event)의 정도가 사전에 정한 물리적 심도 수준(예를 들어, 지진 강도)을 넘는 경우를 사고 발생으로 판단함.
 - 모형화된 손실(modeled loss) 트리거 채권의 경우는 사고발생 여부를 특정한 물리적 파라미터를 대재해 모형에 대입하여 산출된 손실(simulated loss)에 의해 결정함.

■ 대재해채권은 자본시장의 자금으로 보험회사, 재보험회사의 리스크 인수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채권발행 비용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음.

- 대재해채권 활용은 보험회사 또는 재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담보능력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다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대재해리스크에 대한 담보부 보장(collateralized protection)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 가지 트리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금이 신탁되어 있어 거래상대방리스크(counterparty risk)가 없고, 재해리스크가 주식 및 신용 시장과의 상관관계가 낮아 자산을 다각화하는 데 효과적임.
- 그러나 채권발행 비용이 든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베이스리스크(basis risk)가 존재한다는 점⁹⁾ 등이 단점으로 지적됨.
 - 채권발행 비용은 크게 발행회사의 자본조달 비용¹⁰⁾을 의미하는 자본비용(capital cost)과 변호사 비용, 계리컨설팅 비용, 신용등급회사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하는 구조비용(structuring cost)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대재해채권 관련 세계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발행액(risk capital issued) 46조 달러, 발행잔액(risk capital outstanding at year end)은 122조 달러 수준임.¹¹⁾

- 1990년 중반부터 개발된 대재해채권은 이후 그 규모가 확대되어 2007년에는 발행액이 70조 달러, 발행잔액은 140조 달러 수준까지 증가했었음.
 -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리타, 율마 발생 이후 대재해채권 및 날씨파생상품 계약이 급증함.

■ 현재 전체 대재해 관련 담보력 중 대재해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 발생재해의 심도가 높아지면서 더 큰 담보력 확보를 위한 대재해채권의 활용이 확대 가능성은 상존함.

- 현재 대재해 담보력의 대부분을 재보험에서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대재해채권, 사이드카 등이 각각 약 4%, ILW 등이 1% 정도를 담보함(2006년 기준, Guy Carpenter).

■ 우리나라의 경우 손실규모가 대재해채권을 사용하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대재해채권 발행보다는 재보험 이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채권발행을 위한 통계자료, 관련 전문인력 등 인프라 부족으로 아직까지 대재해채권 발행 사례가 없음.

- 담보하는 위험의 규모가 커질수록 고정비용에 해당되는 채권비용의 중요도가 감소하게 되므로 대재해채권 발행을 통한 위험전가가 재보험을 통한 방법보다 유리해 질 수 있음.

9) 보상액 트리거 채권의 경우에는 베이스리스크는 존재하지 않으나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큼.

10) 일반적으로 'LIBOR+리스크 프리미엄'에 해당함.

11) Guy Carpenter.

4. 요약 및 시사점



- 기후변화의 진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피해규모와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기후변동성 또한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재해 관련 리스크관리는 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민영보험 풍수재 특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입률이 낮으며, 정책성 보험의 경우 정부의 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상대적으로 작은 국내 손실규모와 관련 인프라 부족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대재해채권이나 다른 보험연계증권이 활용된 예가 없음.
-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원 확대를 통한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고려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대재해채권과 같은 자본시장을 이용한 리스크전가 방법을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인력, 관련 데이터 등 관련 인프라 마련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예산의 확대를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함과 동시에 가입 의무화를 통해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취할 수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규모의 대형화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규모의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대재해채권을 비롯한 보험연계증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재해채권의 활용을 위해서는 가격결정(pricing) 능력을 갖추기 위한 데이터, 관련 모형 구축, 전문인력 양성, 관련 법규 및 감독규정의 정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kiri**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상품의 개발 가능성

이창우 연구위원

요약

■ 2008년 노인요양장기보험 도입으로 장기간병시장이 확대됨과 동시에 이를 보충하는 형태의 민영장기간병보험상품이 개발되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전 ‘일상생활장해상태’와 ‘중증치매상태’를 담보로 하는 상품이 판매되어 오다가 도입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판정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음.
- 장기간병시장의 확대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충형 실손장기간병보험상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실손형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에도 불구하고 역선택, 도덕적 해이, 분산시키기 어려운 기간간 위험의 존재, 낮은 해약률 등으로 상품 개발 가능성은 현저히 낮음.

- 노인층에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망에 이를 때까지 간병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비용과 미래비용의 상관관계가 높아 기간간 위험을 분산시키기 쉽지 않음.
- 이러한 이유로 장기간병보험의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으며 높은 보험료는 보험수요를 유도하기에 매력적이지 않음.
- 따라서 보험회사가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상품을 판매하기에는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음.

■ 민영장기간병보험 시장의 비활성화 요인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공보험이 장기간병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그 재원을 감당하기에는 공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장기간병비용의 부담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민영장기간병보험을 통해서 서로 분담할 수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민영장기간병보험의 제도적 활성화 방안이 시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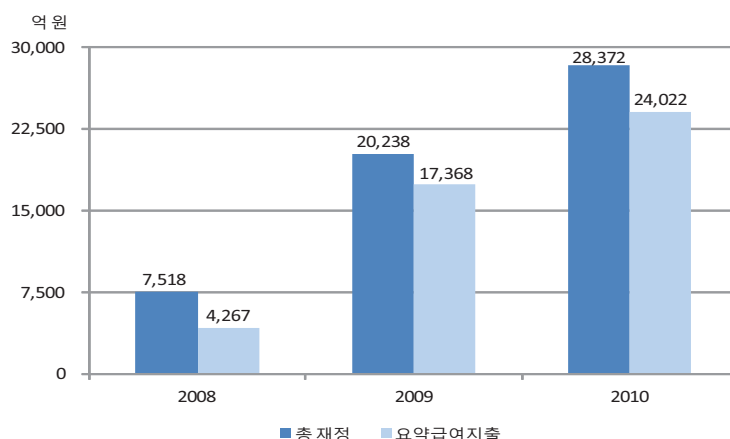
1. 검토배경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2008년 7월 도입한 이래 장기간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기준으로 급여지급 규모가 2조 4,000억 원이며 2008년 도입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

〈그림 1〉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지출 현황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 각 연호.

■ 민영장기간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는 별개로 2003년부터 판매되어 왔으며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기준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충적 형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일상생활장애 상태’와 ‘중증치매상태’를 담보로 하는 상품을 판매하여 왔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판정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음.

■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기준으로 하는 민영장기간병보험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 중 민영장기간병보험의 보험금을 노리고 보다 높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판정을 담보로 하는 보험상품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하고 있음.

■ 본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충형 형태로 민영장기간병보험이 실손형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하여 보고자 함.

- 현재 판매되고 있는 민영장기간병보험상품은 정액형 상품으로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간병비용을 보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실손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관리의 한계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비용 관리는 수급자 판정, 요양원에 대한 상환율¹⁾ 조정, 요양원 공급 조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는 1~3등급으로 나누어져 판정되고 있음.

- 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야 하며 공단소속의 장기요양직원이 직접 방문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등급판정위에서 심의 및 판정을 하고 있음.
- 장기요양 유효기간은 기본 1년이며 연속하여 3회 이상 동일 등급 판정 시 유효기간은 2년임.

〈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판정기준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 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5점 이상~75점 미만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웹사이트(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_GUIDEPROCESS).

1) 보험가입자가 보험자와 계약한 요양원을 이용할 때 총 이용금액 대비 보험자가 요양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함.

■ 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등급별 급여한도액 설정, 본인부담금 설정으로 비용관리를 하고 있음.

-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는 형태로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이며, 장기요양등급 1~2등급만 이용 가능함.
-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급여비용의 15%가 본인부담금임.
-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에게 장기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 월 15만 원을 지급함.

■ 장기요양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법」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시 특정한 기준만 충족시키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인정해주는 신고제로 운영되었다가 최근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비용관리 방식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수요의 비활성,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요 억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공급 억제 등 문제점이 장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3. 민영장기간병보험과 요양기관의 질



■ 소비자입장에서는 요양기관의 질에 대하여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민영보험 활성화로 민간재원이 요양기관의 중요한 수입원이 될 경우 요양기관의 질이 향상될 가능성은 존재함.

■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민영장기간병보험 가입자가 같은 요양기관을 이용하게 될 경우, 요양기관의 질이 향상될 가능성은 희박함.

- 요양기관의 질 향상은 일종의 공공재로 공공보험가입자가 민영보험가입자에 의해 향상된 질을 동시에 누릴 가능성이 큼.

-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민영보험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요양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함.
- 만약 공공보험가입자가 민영보험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높은 질의 서비스를 받게되는 무임승차를 초래함.

● 공공보험가입자의 증대로 민영간병보험가입자가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구축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소비자에게 요양기관의 질을 보장하는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계약을 맺은 요양원과 다른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공공보험의 보충형 상품과는 별개로 민영장기간병보험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의 설립 혹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기관 외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질을 보장하는 요양원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요양기관의 질을 보장하는 상품개발이 필요함.

4. 민영장기간병보험시장이 매력적인가?



■ 민영장기간병보험시장은 역선택, 도덕적 해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존재, 기간간 위험의 존재로 민간에서 재원조달을 하기에는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임.

● 노인층에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망에 이를 때까지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임.
- 현재비용과 미래비용의 상관관계가 높아 기간간 위험을 분산시키기가 쉽지 않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 고위험 군이 민영장기간병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많으며, 가입 후 보험금 수령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가 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고자 할 가능성이 높음.

■ 실손형 상품의 개발 가능성은 결국 갱신헌 상품의 개발 가능성, 세제혜택이 있는 의료저축성계좌의 이용 가능성, 민영간병보험과 요양원간의 선택적 계약 등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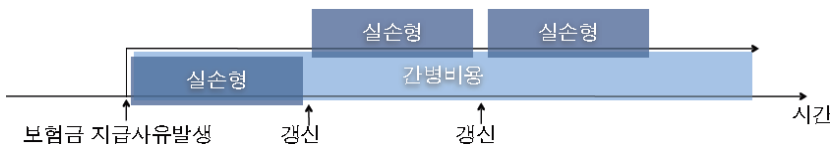
● 정액형 상품의 경우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간병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여 실손형 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2〉 정액형 상품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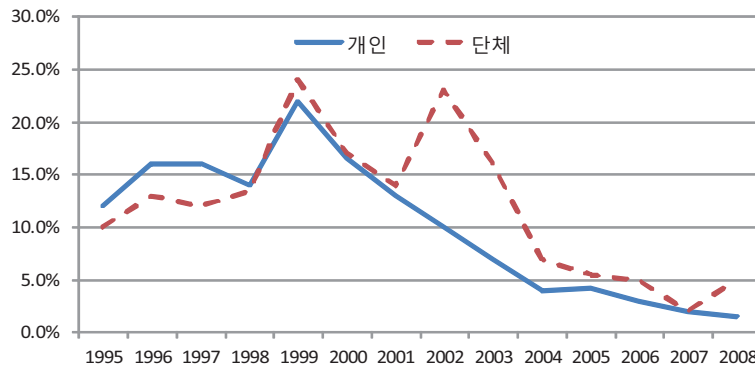
- 적절한 보험료를 반영하고 늘어나는 간병비용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급여한도를 변경할 수 있는 갱신형보험의 상품개발이 필요함.
- 그러나 높은 보험료 수준이 문제가 될 수 있음.

〈그림 3〉 갱신형 상품의 개발



- 상대적으로 긴장한 기간 동안 장기간병비용을 대비해 저축을 유도하고 적립된 금액으로 간병필요 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저축계좌방식의 상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병비용을 위한 저축계좌에 세제혜택 등 저축을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 미국의 사례는 민영장기간병보험시장이 보험회사 측면에서도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미국의 경우 2003년 전후로 100개 이상의 민영장기간병보험회사들이 퇴출과 합병으로 2006년 45개사로 줄어들.
- 보험료 대비 높은 사업비용, 예상해약률보다 낮은 해약률로 인한 잠재 보험금 수혜자의 증가, 낮은 이자율 등이 민영장기간병 보험회사 수의 감소를 야기한 이유로 지목되고 있음.

〈그림 4〉 미국 민영장기간병보험 보유계약건 증가율



자료: Mulvey, J.(2009), "Factors Affecting the Demand for Long-Term Care Insurance: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5. 결론

■ 실손형 민영장기간병보험은 보험수요와 보험공급 양 측면에서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여건을 갖추고 있음.

- 보험공급 측면에서는 보험의 특성상 위험을 쉽게 분산시키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수요가 쉽게 활성화되지 않음.
- 따라서 보험회사가 실손형 민영장기간병보험을 판매하기에는 시장여건이 좋지 않음.

■ 이러한 이유로 여러 국가에서 공보험이 장기간병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그 재원을 감당하기에는 공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과도한 비용을 공보험만이 부담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민간재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영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등의 방안이 실행되고 있음.

■ 따라서 장기간병비용의 부담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민영장기간병보험을 통해서 서로 분담할 수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민영장기간병보험의 제도적 활성화 방안이 시급함. **키리**

2. 고령화

1. 퇴직연금제도의 적합성 원칙 적용 방향
2.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제도 도입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3. 개인퇴직계좌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개선방향
4. 미국 DC제도의 종신소득전환 정책과 시사점
5.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필요
6.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과 정책적 시사점
7.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자성과와 시사점
8.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보조금 지원 정책 방향
 - 독일 리스터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

| 류건식 이상우
| 류건식 이상우
| 류건식 이상우
| 이경희
| 김대환 이상우
| 김대환 오병국
| 이경희 최 원
| 류건식 이상우





퇴직연금제도의 적합성 원칙 적용 방향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 이상우 선임연구위원

요약

■ 현재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나, 관련법률에서 적합성 원칙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투자자로서 가입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노출됨.

- 최근 퇴직연금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연금사업자간의 출혈경쟁 및 과열경쟁이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적합성 원칙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가입자(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하여 퇴직연금의 불건전 판매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임.

■ 현재, 관련 법률에서 퇴직연금의 적합성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퇴직연금의 적합성 원칙을 제시한 금융투자협회의 해설지침(Q&A)만이 존재함.

- 이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거나 이를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고,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상 보호대상 범위가 모호하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가입자(기업 및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시 가장 적합한 운용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에 의한 퇴직연금의 적합성 원칙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퇴직연금의 근거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로퇴법)에서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거나 또는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퇴직연금을 범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적합성 원칙의 적용대상은 확정급여형제도의 경우 일반투자자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확정기여형제도의 경우 개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근로법상의 운용방법 제시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개념을 포함시켜 구체화하고, 향후 근로법 개정에 대비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도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는 방향 모색이 바람직함

1. 검토 배경



■ 최근 퇴직연금 가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금융회사간의 퇴직연금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 등으로부터 퇴직연금 가입자¹⁾를 적극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됨.

- 퇴직연금제도 도입이후 퇴직연금이 급속하게 증가²⁾하고 있으며, 2010년 퇴직보험(신탁)제도 신규 가입 폐지 및 퇴직연금 세제지원 확대, 2011년부터 가입대상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등 향후 퇴직연금 가입자가 크게 증가할 전망
- 선진국의 경우 제도시행 초기에 확정급여형제도의 가입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수록 확정기여형제도의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 이에 반해 퇴직연금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이 확대되면서 퇴직연금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져 고금리 제시³⁾ 및 구속성 예금 유치⁴⁾ 등과 같은 과열경쟁 및 불건전 거래가 일부 금융회사에서 나타나고 있어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가 우려되는 실정임.

■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상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적합성 원칙 적용 등과 같은 자본시장법의 투자자 보호규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임.

- 퇴직연금제도(2005.12월) 시행된 이후 자본시장법(2007)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에 대한 후속조치가 법률에서 반영되지 못하였음.
- 또한, 퇴직연금이 금융제도가 아닌 퇴직급여제도이다 보니 투자자로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 특히, 퇴직연금 가입자인 근로자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활동을 하는 일반투자자와 달리 퇴직후 노후소득 보장 확보를 위해 적합한 자금으로 투자되어 안전하게 관리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반투자자 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됨.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자를 가입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책임을 지는 기업(확정급여형제도)과 근로자(확정기여형제도)를 편의상 가입자로 호칭하기로 함. 이에 따라 가입자인 기업 및 근로자는 각각 적립금 운용단계에서 예적금, 금리연동(확정형)상품,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펀드에 가입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투자운용이 가능하여 투자자로서 지위를 가지게 됨.

2) 389개 사업장, 5,024명(2005.12) → 83,160개 사업장, 1,837,445명 가입(2010.9말)

3) 황성관, 『퇴직연금시장 공정경쟁 정착을 위한 제언』, 삼성생명퇴직연금연구소, p.9, 2009. 9.

4) 류건식·이상우,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CEO Report 2009-4), 보험연구원, p.8, 2009.10.

-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시 안전하고 높은 수익의 운용상품에 가입하려는 속성과 금융회사 등의 경우 근로자에게 수수료 수준이 높은 운용상품 위주로 제공하려는 속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상충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현방법이 근거법상에서 미흡함.

-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시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건전 거래의 개연성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적합성 원칙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의 적용에 대한 검토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적합성 원칙의 개념과 법적 근거



가. 적합성 원칙의 기원과 개념

- 적합성 원칙은 1930년대의 불법적 증권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간판이론(shingle theory)에서 유래된 개념임.⁵⁾

- 간판이론은 증권중개업의 간판을 내걸고 있는 브로커·딜러가 증권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고객에게 성실하게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묵시적인 표시(implied representation)를 하는 것으로 간주함.
- 따라서 증권중개업의 간판을 내 걸어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resonable basis)를 기초로 투자권유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는 이론임.

- 적합성 원칙(Suitability Rule)은 미국의 증권거래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증권업자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한 투자가 아니면 고객에게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함.

- 즉,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투자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권유 개념을 의미하는 것임.

5) 이상우,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p.61, 2008.3

- 적합한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과 관련된 투자자의 정보 수집이 사전에 반드시 필요하며, 투자자가 정보수집을 거절할 경우 적합한 투자권유가 불가능하므로 이 원칙은 성립하지 않음.

■ 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가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적합한 투자상품의 권유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적합성 원칙이 필요함.

- 따라서 적합성 원칙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등에 반하는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을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투자자가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나. 적합성 원칙의 근거와 위반 효과

■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가장 합리적인 투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적합성 원칙 등을 적용하도록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함.

- 첫째,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투자자 분류확인 의무를 부여하여 투자자의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차별성을 둠.
 - 일반투자자는 전문투자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가, 중앙은행, 기관투자자, 상장법인 등 이외의 투자자를 말하며, 비상장법인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평가를 받을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됨.
- 둘째,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이나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확인받고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여 투자자정보의 파악 및 확인 의무(know your customer rule)를 부여함.
- 셋째,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상품의 적합성 판단의무를 부여함.
- 적합성 원칙과 별개로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서명 등의 확인을 받도록 하며, 중요한 사실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설명의무를 부여함(법 제47조).

〈표 1〉 자본시장법령상 적합성 원칙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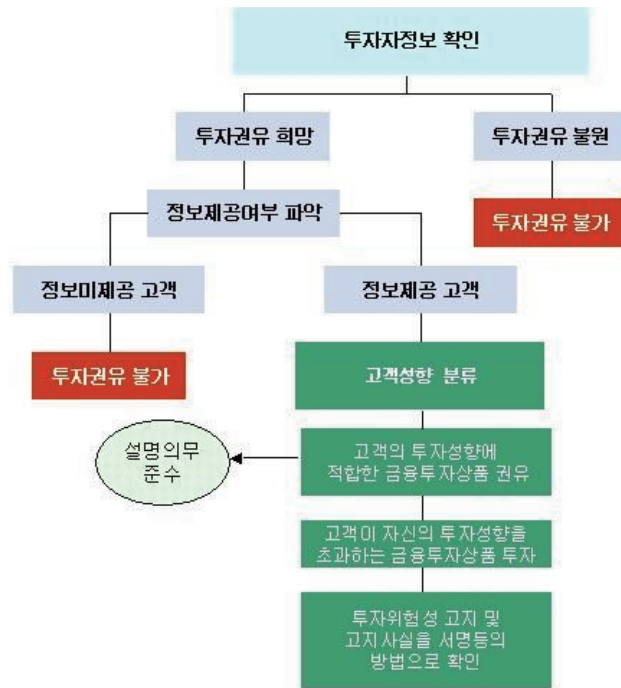
구 분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
투자자 분류 의무	○ 적합성 원칙 등(제46조제2항)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전문투자자의 범위(제10조제1항) － 전문투자자는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금융위원회에 전문투자자로 신고한 법인 등
적합성 판단 의무	○ 적합성 원칙 등(제46조제3항)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투자자 정보파악의무 (know your customer rule)	○ 적합성 원칙 등(제46조제2항)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제52조(투자목적 등의 확인방법)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 우편 3. 전화자동응답시스템

■ 한편,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는 자율규제사항으로 퇴직연금에 대해 적합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음.

● 자본시장법의 후속조치로서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적용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금융위·금감원·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표준투자권유 해설지침(2009.2.12)’의 내용중 Q&A에서 퇴직연금에 대해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즉,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에 “확정급여형제도의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사업자를 상대로 적합성을 확인토록 하고, 확정기여형제도의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수익자인 개별 근로자를 상대로 고객정보 확인을 하고 적합한 운용방법을 제시하도록”한다고 답변함.

〈그림 1〉 투자상품의 적합성 원칙 적용 흐름도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일반투자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만, 적합성 원칙의 위반에 대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적합성 원칙의 위반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어렵고,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해석될 수 있어 법원에서는 설명의무 위반 등의 불법행위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
- 향후 법률의 모호성으로 인해 적합성 원칙 위반행위에 대한 향후 법률적 비용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어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⁶⁾되고 있음.

■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키코(KIKO) 소송에서 2009년 법원⁷⁾은 상품의 구조와 잠재된 위험요소 등을 고객에게 충실히 이해시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적합성 원칙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함.

6) 한창희, 정보비대칭하에서의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입법과제, 한국보험학회, p.95, 2010.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12.30 선고 2008가합3816, 20094.24. 선고 2009가합242 결정

- 또한, 2010년의 키코 소송에서 법원은 키코에 대한 은행의 불공정 계약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은행 측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위반한 것으로 판시함.

3. 퇴직연금제도의 적합성 원칙 적용의 필요성



- 퇴직연금 가입자(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적용의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고 이를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취하기가 곤란하여 퇴직연금의 가입자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 퇴직연금사업자는 법률상 “기업 또는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운용방법(금융상품)제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금융투자상품의 권유행위가 수반됨.
- 이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투자경험 및 지식이 부족하거나, 낮은 학력수준에 있는 근로자에게 원금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은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적립금 대부분을 투자 권유하여 손실을 입힐 개연성을 배제하지 못함.

〈표 2〉 근퇴법상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① 사용자(기업) 또는 가입자(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운용방법(금융상품)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② 연금제도설계 및 계리 ③ 적립금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④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① 계좌의 설정 및 관리 ② 부담금의 수령 ③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④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운용관리기관”이라 함)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⑤ 퇴직급여의 지급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퇴법과 자본시장법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적합성 원칙의 위반으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특히, 상술한 금융투자협회의 Q&A만으로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취할 수 없으며, Q&A상에서 적용대상⁸⁾이 불명확하여 시장의 혼란을 가저올 수 있음.

8) 확정금부형의 경우 적용대상을 ‘사업자’를 지칭하고 있으나(표준투자권유준칙 해설, p.17, 2009.2.12), 자본시장법에서는 적합성 원칙의 적용대상을 ‘일반투자자’로 지칭하고 있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의 계약주체와 자산운용에 대한 위험부담 책임주체가 일치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⁹⁾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 확정급여형제도의 경우 기업이 퇴직연금 계약체결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적립금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계약주체와 위험부담 주체가 일치함.
- 반면 확정기여형제도는 기업이 계약체결의 주체이지만 운용상품의 권유받는 사람과 적립금 운용상의 책임을 개별 근로자가 지게 되므로 계약주체와 운용책임(투자권유 대상)이 일치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함.
- 비록 계약주체가 아닌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동의절차를 부여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성실의무, 주의의무, 법규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운용상품 제시시 불완전 판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규가 미흡함.

〈표 3〉 근퇴법상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상품 제시시 의무 및 금지사항

법 제17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법 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의 운용방법 제시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 정보취득과 이해가 쉬운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운 것 3. 운용결과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한 것 4. DC, IRA의 경우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5.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1. 계약체결시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특별한 이익을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3. 개인정보를 업무이외에 유출하는 행위 4. 자기(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 근퇴법에서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행위” 등이 투자권유 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률상의 명확성이 결여되어 향후 소송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함.

- 실무적으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단계에서 실적배당형인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채권형펀드 등의 운용상품을 가입자에게 단순히 제시하는 행위에서 권유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제시행위가 권유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지에 대해 명확하지 못함.

9) 확정기여형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 투자운용과 이에 따른 위험부담의 주체가 근로자이므로 근로자가 투자자로서 지위를 가지게 됨.

- 또한, 현행 자본시장법¹⁰⁾은 투자권유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러한 퇴직연금 운용상품 제시행위가 동 법의 투자권유 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협회의 Q&A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해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도록 설명하고 있어 퇴직연금이 투자권유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한편, 근퇴법 개정(안)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보험모집인, 투자권유대행인 등에게 퇴직연금 모집 및 권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사실상의 권유업무를 도입할 예정임.

- 근퇴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모집인 및 투자권유대행인 등이 확정급여형제도, 확정기여형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가입권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비한 적절한 가입자 보호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4. 적합성 원칙 도입 방향



■ 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법적근거 미비, 적용대상 주체, 운용방법 제시의 명확성, 근퇴법 개정(안) 대비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검토 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적용 및 위반시 제재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근퇴법이나 자본시장법에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에 대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근퇴법에서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성 원칙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즉, 퇴직연금업무의 구분,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유형(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실제 가입권유 대상, 권유행위 제공 유무 등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성 원칙의 적용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

10)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법제9조 4항)”

– 또한, 자본시장법과 유사하게 투자자분류, 투자자정보 파악 및 확인, 적합성 판단 의무 등을 명시한 규정이 필요함.

● 또한, 근퇴법에서 명시하지 않을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퇴직연금을 법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적립금 운용시 투자권유행위가 제공되어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의 적합성 원칙(법제46조)의 입법례에 대한 준용규정을 근퇴법에 신설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적합성 원칙의 적용대상은 동일행위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 규정에 준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적용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적은 일반투자자를 특히 보호하기 위해 일반투자자에게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동일행위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을 준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확정급여형제도의 경우 자본시장법의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비상장기업 이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계약주체와 위험부담 주체가 다른 확정기여형제도의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근퇴법이나 자본시장법에서 ‘운용방법 제시’나 ‘투자권유’에 대한 정의를 확립하거나 또는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를 제한적으로 정의함에 따라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행위를 동법의 투자권유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투자권유의 개념을 확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는 근퇴법상 ‘운용방법 제시’업무를 투자권유가 있는 운용방법 제시와 투자권유가 없는 운용방법 제시 업무로 구분하여 향후 선진국형 기본펀드(default fund)¹¹⁾ 등 투자권유행위가 제공되지 않는 운용상품의 등장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11) 기본펀드는 가입자가 투자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기본적인 운용상품으로 운용되어 정부나 민간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아일랜드, 영국, 스웨덴에서 유사제도를 도입함.

■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자영업자 및 특수직역종사자 등으로 가입범위가 확대되는 근퇴법 개정(안)에 대비하여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및 이직·퇴직 등으로 인한 적립금 이전 근로자 등으로 가입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나 향후 법률 개정으로 자영업자 및 특수직역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캐디, 화물기사, 택배원, 방송작가, 연예산업 등) 등으로 가입범위가 확대될 예정임.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도 확정기여형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적립금에 대한 자산운용이 가능하므로 개별 근로자 및 자영업자, 특수직역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ri**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제도 도입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 이상우 선임연구위원

요약

■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예정으로 있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서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 수행을 전면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근퇴법 개정안 31조)
- 이에 보험설계사 등은 소비자(기업 또는 개인)와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퇴직연금계약을 중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음.

■ 이러한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 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설계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소규모 가입기업의 퇴직연금 이해도가 확대되며, 장기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의 역할 증대가 예상됨.

- 보험설계사의 업무영역 범위가 기존 개인영업에서 법인영업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와 영업의 시너지 제고가 예상되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대면교육은 퇴직연금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의 가입을 유도하고 중간정산자, 이직자 등의 은퇴자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관하는데 영향을 주어 개인형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고할 것임.

■ 따라서 보험회사는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 허용 조치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전적 대비가 적극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설계사를 대상으로 철저한 법규준수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험회사의 신뢰도 저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전문 퇴직연금설계사 제도의 자체적인 운용이 요구됨.
- 더불어 재무설계서비스체계(투자서비스+은퇴서비스)를 조기 구축하여 종합적인 일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 서비스의 차별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 현행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권유하는 업무(이하 “모집업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유권해석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 업무의 하나로 퇴직연금사업자만 모집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보험설계사 등 금융중개인은 법적 근거가 없어 모집업무 수행을 퇴직연금사업자에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속적으로 퇴직연금 모집업무의 위탁을 요구하기 이름.
 - － 실제로 보험설계사, 협회 등은 행정소송, 질의요청, 유권해석 요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퇴직연금 판매를 요청함.
 - 그러나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전문적 지식구비 없이 단순한 금융상품으로 인식하고 판매하는 경우 펀드 등의 사례와 같이 허위정보에 의한 불완전 판매가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음.
- ■ 이에 국회에 상정중인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서는 설계사 등에 대해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수행을 전면 허용하되, 일정한 모집인 요건, 위탁범위 등을 규정하여 영업사업장까지 퇴직연금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됨.
 - 이와 같은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근거 신설은 퇴직연금의 판매체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며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저변확대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 본고는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근거 허용 내용, 위탁제도 도입시 미치는 제반 영향 등을 살펴본 후에 보험회사의 대응과제를 제시하였음.

2. 근퇴법 개정안의 모집업무위탁 관련규정



■ 퇴직연금 모집의 자격요건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 이수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등록요건 미달 및 준수사항을 어겼을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모집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의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권유대행인의 요건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음.

■ 퇴직연금 모집인 등록의 신청방법 및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1〉 퇴직연금 모집업무위탁 요건 신설 법령(안)

구 분	근퇴법 개정안	동법 시행령안
모집업무 및 모집인 요건	제31조(모집업무를 위탁)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이하 “모집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조(퇴직연금 모집인의 요건) ① 법제31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 장관이 정하는 퇴직연금 모집인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하고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2. 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법인 3. 모집인 위탁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등록이 취소된 지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4. 법제29조의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모집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것 가.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보험계약에 의하는 경우: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나.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신탁계약에 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권유대행인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기존법률 존치)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퇴직연금 모집인 등록의 신청방법 및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등록을 취소한다. 1.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표 2〉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범위 신설 법령(안)

구 분	근퇴법 개정안	동법 시행령안
모집업무 범위	〈신설〉	제00조(퇴직연금 모집업무의 위탁 범위) 법 제31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의 운용관리업무 및 법 제29조의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사용자·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업무 2. 기타 퇴직연금 모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표 3〉 퇴직연금 모집업무위탁시 준수사항 신설 법령(안)

구 분	근퇴법 개정안	동법 시행령안
모집업무 준수 사항	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위탁한 업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것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00조(퇴직연금 모집인의 준수사항) 법제31조제2항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가입 시키지 말 것 2. 위탁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퇴직연금 가입 예정자 등의 대리계약 체결 금지 3. 퇴직연금 가입 예정자 등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금지 4. 퇴직연금 가입 예정자 등으로부터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 금지 5. 제3자로 하여금 퇴직연금 가입 예정자 등에게 대출 등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금지 6. 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와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7. 퇴직연금 모집인은 퇴직연금 가입 예정자 등에게 다음 각목의 사항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자신이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라는 사실을 게시하거나 알려야 한다. 가. 모집업무 위탁 퇴직연금사업자의 명칭 나. 모집업무 위탁 퇴직연금사업자를 대리계약 체결 권한이 없다는 사실 다. 금전·증권 등을 수취하지 못하며, 퇴직연금사업자가 직접 수취한다는 사실 라. 대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 마.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을 수 없다는 사실 바.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관한 사항 8. 기타 가입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행위를 준수할 것

■ 퇴직연금 모집인의 업무범위를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사용자·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단순한 소개가 아닌 사용자와 가입자를 대상으로 중개업무로 퇴직연금 모집인의 역할범위가 확대됨.

■ 퇴직연금 모집인에게서는 허위사실에 근거한 모집행위, 사용자 등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사용자 등으로부터 금전 수취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사용자 등의 금융상품 매매 권한 수탁금지, 둘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와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퇴직연금 모집범위를 위탁받은 자는 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퇴직연금 가입예정자에게 자신이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제시하거나 증표를 내보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3.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에 따른 제반영향



가.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보험설계사 역할증대

■ 현재 보험설계사의 역할은 퇴직연금 모집인 보다 퇴직연금의 단순소개인 역할에 지나지 않아 운용관리 업무로서의 상품소개, 퇴직연금제도 설명, 자산운용자문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

● 소개업무 역시 정부의 명시적인 허용아래 수행되기보다 금융감독원의 소개 규정에 기초하여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근로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모집인의 업무범위가 사업자와 기업 및 근로자간의 계약체결 중개업무로 확대됨에 따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에 보험설계사의 역할¹⁾이 기대됨.

1) 보험연구원(2010)이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n=900)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퇴직연금 가입시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겠다는 의향이 42.2%로 나타남.

- 또한 보험설계사의 업무영역 범위가 기존의 개인영업에서 법인영업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와 영업의 시너지 제고가 예상된다.
- 현재 손해보험사의 퇴직연금 적립금 50% 정도가 보험설계사 등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 모집인 업무범위의 확대는 보험설계사중심의 마케팅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나. 소비자의 퇴직연금제도 인식 확대

■ 2010년 노동부·미래에셋 퇴직연금 연구소 등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인지비율 및 인지수준이 현격하게 낮게 나타나 소규모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즉, 소기업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안다는 응답자의 22.5%만이 퇴직연금제도를 잘 이해한다고 응답한 반면, 대기업의 경우 약 42%가 퇴직연금제도를 잘 이해한다고 응답함으로써 대기업과 소기업과의 퇴직연금제도 인지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

〈표 4〉 기업규모별 퇴직연금제도 인지여부

(단위: %)

구분	미가입 기업(n=400)		안다(n=315)	
	모른다	안다	약간 안다	잘 안다
소기업 (100인 미만)	25.6	74.4	77.5	22.5
중기업 (100~299인)	8.8	91.2	61.5	38.5
대기업 (300인 이상)	5.3	94.7	58.3	41.7

자료: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2009년 기업의 퇴직연금제 인식 및 운영실태분석, 2010

주: 퇴직연금 미가입기업 대상

■ 또한 2011년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인 가입자 교육이 보다 요구될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사업자의 교육담당자가 소수의 기업들까지 가입자 교육을 하는 데에는 비용 및 조직상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임.
- 이러한 점에서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대면교육 및 서비스 제공은 퇴직연금제도의 이해도를 높여 퇴직연금가입 증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형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

■ ■ 근퇴법 개정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근로자에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으로 대폭 확대됨으로써 개인형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제고될 전망이다.

- 그 이유는 지금까지 자영업자 등은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에 해당되어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기회마저 없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소외계층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 따라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조기 정착되어 견고한 3층 노후소득보장제도로 퇴직연금제도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설계사 등 퇴직연금 모집인의 역할이 절대적임.

〈표 5〉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성

구분	2011	2015	2020
시장규모	7조 6,932억	15조 2,607억	29조 5,970억
선호도	41.25% [= 42.7%(자) + 39.8%(근)/2]		
보험권M/S	3조 1,734억	6조 2,950억	12조 2,088억

주: 1) 신규가입자(기존근로자, 자영업자)만 고려하여 매우 보수적으로 추정됨

2) 특수형태근로자, 특수직역연금수급자, 중간정산자, 이직자, 명예퇴자, 은퇴자 등 감안시, 시장의 성장성 증대예상

■ ■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연금 모집인에 대한 모집업무 위탁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의 퇴직연금가입을 유도하고 중간정산자 등의 은퇴자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관하는데 영향을 미쳐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

- 즉 보험설계사가 기존 영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 및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직접 대면하여 설명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중개하는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보다 강화될 것임.

4. 향후과제



- 퇴직연금가입자의 수급권보호차원에서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철저한 법규준수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자영업자 등의 투자손실에 따른 소송리스크 대비차원에서 체계적인 법규준수 의무 교육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특히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험회사의 신뢰도 저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전문 퇴직연금설계사 제도를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이 일반보험보다 가입 및 적립규모가 크고 노후소득보장적 성격을 지닌 은퇴자금이므로 일반보험과 차별화된 불완전 판매 방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됨.
- 특히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서 잠재 수요자의 퇴직연금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에 초점을 맞춘 전문 퇴직연금설계사를 자체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한 재무설계서비스체계(투자서비스+은퇴서비스)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일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금융기관과 서비스의 차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소규모기업 및 자영업자의 니즈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kiri**



개인퇴직계좌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개선방향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 이상우 선임연구위원

요약

■ 개인퇴직계좌가 직장이동, 퇴직 및 중간정산 발생시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연금)의 자산이전 수단으로 활용되고, 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보급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세제지원 미흡 등으로 가입이 미진한 실정임.

- 미국의 경우 다양한 IRA제도와 세제혜택이 제공됨에 따라 IRA가구 가입률이 41%에 이르고 은퇴 자산에서 IRA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는 등 IRA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음.
- 보험연구원(2010)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인퇴직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되었으며, 상당수 응답자들이 근로자, 자영업자 등 직종별로 세제지원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향후 법률 개정에 대비하여 개인퇴직계좌가 영세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종사자 등으로 가입범위가 확대되어 노후소득보장 기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제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첫째,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고 있으나, 이를 분리하여 별도의 퇴직연금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소득공제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향후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종사자 등의 가입자격 확대에 대비하여 미국처럼 직군별 또는 소득계층별로 소득공제 수준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장기적으로는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세제체계를 이원화하고 개인퇴직계좌 납입·운영·급부 단계별로 세제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연금수령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급기간에 따른 세제혜택의 차별화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1. 개인퇴직계좌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개선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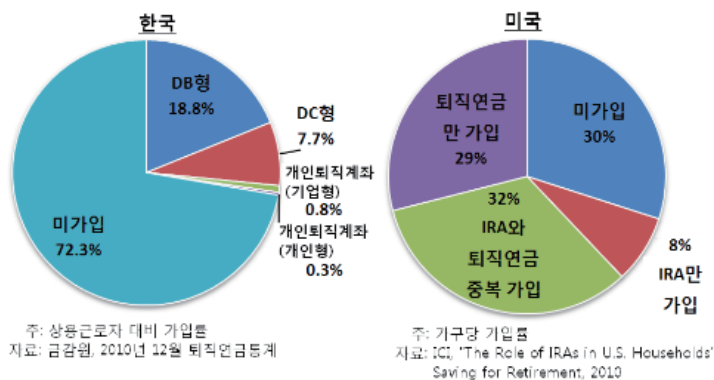
■ 최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로 인해 이직자, 명예퇴직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퇴직자금을 은퇴자금화하고, 자영업자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퇴직계좌가 중요시되고 있음.

- 2011년 중에 개인퇴직계좌의 가입대상이 근로자에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으로 확대되고 퇴직급여 일시금 외에 가입자 자신의 부담으로 부담금을 계속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허용될 예정임.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추가납입이 허용됨에 따라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기능 모두를 담당하게 됨.

■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전통적인 DB형 및 DC형 퇴직연금위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개인퇴직계좌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2010년 12월말 현재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29조 1,472억 원 중에서 개인형 및 기업형 개인퇴직계좌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 8.5%에 불과함.
 - 또한, 각각의 근로자 대비 가입률이 각각 0.3%, 0.8% 수준에 불과함.
- 반면에 미국은 2009년 말 기준으로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이하 IRA) 적립금 규모가 약 4.2조 달러로 전체 은퇴시장에서 약 25%를 차지하며 전체 가구 중 41%가 1개 이상의 IRA에 가입되어 있음.

〈그림 1〉 한국과 미국의 IRA 가입현황 비교



■ 따라서 개인퇴직계좌 활성화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세제체계의 개선이 요구됨.

- 그 이유는 보험연구원이 잠재 개인퇴직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2010년),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즉, 개인퇴직계좌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확대(30.2%), 수급권보장강화(22.1%), 노후소득필요성 인식 제고(12.3%), 중도인출 완화(10.2%), 제도형태 다양성 확보(10.0%)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공무원, 근로자, 자영업자, 배우자 등처럼 직군 또는 계층별로 세제혜택을 차등화 하는 데에 48.2%가 찬성하고 있는 반면, 15%만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납입단계의 세제비교



■ 우리나라의 개인퇴직계좌 관련 세제체계는 적립금 납입 시 소득공제(Exempt), 운용단계 수익 비과세(Exempt), 연금수급 시 과세하는 EET(Exempt-Exempt-Tax system)형 세제체계임.

- 즉 적립금(부담금) 납입단계에서 적립금의 일정부분(400만원)만 소득공제 되고 여기서 제외된 나머지 부분은 과세가 이연됨.
- 또한, 적립운용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비과세 처리되며, 퇴직금의 수령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세하는 체계임.

■ 우리나라는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적립금 납입단계에서의 소득공제는 DC형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임.
- 소득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추후 퇴직급여수령 시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표 1〉 개인퇴직계좌의 세제체계

구분		개인퇴직계좌
납입단계		합산하여 연 400만원 이내 근로소득공제
운용단계		비과세
수령단계	일시금 지급	퇴직소득세
	연금 지급	연금소득세(소득공제한도는 연간 600만원)

■ 미국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역사가 길어 제도 및 종류가 다양하며, 퇴직연금제도 종류에 따라 세제체계도 상이함.

- 하나의 퇴직연금제도에서 EET방식과 TEE(Tax-Exempt-Exempt system)방식을 혼용하기보다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EET와 TEE방식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 개인퇴직계좌도 DC형 퇴직연금처럼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며 종류별로 다른 세제체계를 가지고 있음.
 - 전통형 IRA¹⁾는 EET방식을, Roth IRA²⁾는 TEE방식의 세제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통형 IRA의 경우 50세 미만은 5,000달러, 50세 이상은 6,000달러(2010년 기준)의 적립상한까지 소득공제혜택이 부여됨.

■ 일본의 개인형 확정기여연금은 자영업자와 근로자간 소득공제 차이가 있어 근로자에게는 276,000엔, 자영업자에게는 816,000엔의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있음.

- 납입단계에서 소득공제는 연간 기여액 한도까지 가능하며 자영업자의 공제한도가 근로자보다 약 3.8배 높게 설정된 것이 특징임.

■ 독일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의 경우 세제지원이 보조금 및 소득공제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자녀 수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2,100유로(2008기준)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함.

- 이 경우 고소득층은 보조금과 소득세 공제의 이중혜택을 받고 소득이 면세점이하인 저소득층은 보조금만 받게 되어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1) 1974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IRA제도로 연간 납입액을 5천 달러로 제한하는 등 주로 중저소득자들이 가입하는 IRA 제도임.

2) 주로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소득자들이 가입하는 IRA로 소득공제혜택이 없으나, 운용시 및 급부시 비과세혜택이 부여됨.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감면액이 보조금의 액수를 초과한 경우 국세청은 전체 소득세 감면액에서 보조금만큼을 차감한 액수만 환급해 주게 되어 있음.

- 결과적으로 고소득가입자는 보조금 혜택은 받지 못하고 소득공제혜택만 받게 됨.

■ 영국의 스테이크홀더연금(Stakeholder Pension)은 연금가입자가 납입한 1파운드당 0.28 파운드를 정부가 개인퇴직계좌에 입금하여 지원하는 보조금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스테이크홀더연금의 연간 납입한도인 2,808파운드를 납입할 경우 790파운드($=2,808\text{파운드} \times 0.28$)를 정부가 지원함에 따라 총 적립금이 3,600파운드가 됨.

〈표 2〉 납입단계 세제

한국 (개인퇴직계좌)	미국 (전통형 IRA)	일본 (개인형 확정기여연금)	영국 (스테이크홀더연금)	독일 (리스티연금)
합산 연금소득공제 -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내 소득공제	소득공제 - 연간 5,000달러 (50세 이상이면 6,000달러)	소득공제 - 근로자: 276,000엔 한도 - 자영업자: 816,000엔 한도	보조금 또는 소득공제 - 1파운드당 0.28파운드보조금	소득공제 - 2,100유로 한도

주: 개별 소득공제제도를 취하는 주요국과 합산 연금소득공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3. 운용단계의 세제비교



■ 우리나라는 적립금을 운용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같은 자산운용수익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수령단계에서 과세를 적용하는 과세이연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이는 적립된 자산을 금융시장에서 운용하여 퇴직연금자산으로 적립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시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임.
- 또한 개인퇴직계좌에 퇴직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운용단계의 이자소득세 등의 세금이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도록 하고 있음.
 - 이미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일시금의 80% 이상을 개인 퇴직계좌에 입금할 경우 운용단계의 세금이 이연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한 퇴직소득세의 환급이 가능함(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관련).

■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적립금을 운용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 미국은 개인퇴직계좌뿐만 아니라 401(K) 등과 같은 DC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적립금 운용에 따른 운용이익을 비과세 처리 하고 있음.

〈표 3〉 운용단계 세제

한국 (개인퇴직계좌)	미국 (전통형 IRA)	일본 (개인형 확정기여연금)	영국 (스테이크홀더연금)	독일 (리스터연금)
비과세	비과세	특별법인세과세 (납입액 및 운용이익은 특별법인세 과세대상이나 2013년까지 유예 예정)	비과세	비과세

■ 일본의 개인형 확정기여연금은 납입액 및 운용이익에 대해 특별법인세(자산운용잔액의 1%에 해당하는 특별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는 점이 미국과 상이함.

● 금융기관에 수탁한 연금관련 신탁재산에 대한 일정한 이자와 배당에 대해 원칙적으로 특별법인세 명목으로 과세하지만 일본정부의 과세유예조치에 따라 2001년부터 10년간 과세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음.

－ 일본의 특별법인세는 우리나라의 이자·배당 소득세와 유사한 개념이나 금융회사가 대납하여 납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특별법인세라는 용어를 사용함.

■ 영국의 스테이크홀더연금 및 독일의 리스터연금 역시 운영단계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하고 있음.

4. 급부단계의 세제비교



■ 우리나라는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후 퇴직급여 수령 시에는 수령 방법에 따라 연금소득세와 퇴직소득세로 구분되어 과세됨.

- 즉 일시금 수령 시 다른 소득과는 별도로 퇴직일시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부과(분류과세)하며, 연금 수령 시 국민연금,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총 수령연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부과함.
-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연금 수령 시 과세대상소득의 5%가 원천징수 되고 이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총 연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되고 6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미국의 IRA는 유형별로 세제가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며, 시니어유효세율(Senior Citizen Effective Tax Rate)이 적용되어 낮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효과가 있음.

- 미국은 65세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주마다 달라 평균적으로 0.64%p 차이가 존재하며, 조지아 주의 경우 65세 이전과 이후의 소득세율 차이가 1.57%p로 65세 이후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낮음.

〈표 4〉 급부단계 세제

한국 (개인퇴직계좌)	미국 (전통형 IRA)	일본 (개인형 확정기여연금)	영국 (스테이크홀더연금)	독일 (리스터연금)
소득으로 과세	소득세 과세가 원칙이나 시니어유효세율 적용	과세 원칙 (단, 연금급부시 공제적용)	비과세 원칙 (한도 초과시 경우 과세)	소득세 과세 원칙 (단, 60세 이상, 유지율이 12년 이상의 경우 수령액의 50% 비과세 적용)

■ 일본은 다른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과세액에서 공적연금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

- 다만, 연금가입자가 장애로 인하여 장애급부금이 지급될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사망으로 일시금이 지급될 경우 상속세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1인당 500만 엔까지 비과세가 적용됨.

■ 반면, 영국은 급부단계에서 일정한 한도 내의 경우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독일은 과세를 원칙으로 하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50%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미국, 일본과 다름.

5. 개선과제



- 개인퇴직계좌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세제체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첫째, 미·일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미흡한 우리나라의 소득공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합산 연금소득공제제도의 제도분리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소득공제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퇴직연금제도와 연금저축은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전자의 경우 법정 퇴직급여제도로써 가입이 반강제화 되는 반면, 후자는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개인의 잉여자금을 자의의사에 따라 가입 및 기여하므로 분리된 세제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현행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을 적극 유인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소득공제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소득계층별 차이를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세제혜택을 증가시킬 경우 추가 불입여력이 높은 고소득층에 세제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소득계층별로 세제혜택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근로자, 자영업자, 배우자 등 가입자의 특성과 가입목적에 따라 세제혜택을 달리 적용하여 차등화한 세제체계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 현재와 같이 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한 세제체계를 분리하여 개인퇴직계좌납입단계, 운영단계, 급부단계별로 세제체계를 별도로 가져가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연금수령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연금수령 기간을 되도록 길게 설정하도록 지급기간에 따른 세제혜택의 차별화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kiri**



미국 DC제도의 종신소득전환 정책과 시사점

이경희 연구위원

요약

■ 미국 정부는 종신연금 중심인 DB제도가 일시금 중심인 DC제도로 대체되는 현상에 대응하여 종신소득 전환 유도정책을 논의하고 있음.

- 오바마 행정부(White House Task Force on Middle Class)는 중산층의 노후소득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종신소득전환 정책을 검토하고 있음.
- 또한 DC제도 내에서 종신소득전환 유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상원 고령화특별위원회에서도 핵심주제로 논의함.

■ 종신소득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의 수탁자책임을 완화시켰으며, 연금급여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도 논의 중임.

- 종신소득 선택률이 높은 “제도 내(in-plan)”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자의 수탁자책임을 연금 공급자의 지급능력 확인으로 축소시킴.
- 세제측면에서 연금소득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연금전환 시 정부가 매칭펀드를 조성하자는 주장도 제기됨.

■ 적립단계부터 연금상품을 편입시킴으로써 DC제도에서도 DB제도와 마찬가지로 연금급여를 수령하도록 설계한 거치연금 방식(“DB in DC”)도 출현하였음.

■ 퇴직연금 적립금을 종신소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일시금 중심인 우리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함.

- 우리 정부에서도 종신소득전환에 대한 장기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시장현황을 파악한 후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슈를 공론화시켜야 할 것임.
- 사용자책임을 종신소득전환 관련 정보제공과 교육부문으로 확대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의 개별전환보다는 사용자의 교섭력을 활용하도록 유도함.
- 세제개편은 종신소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세수감소에 따른 부담을 감안하여 그 혜택이 실질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이 필요한 중저소득 계층에 집중되도록 함.

1. 검토배경



■ 우리나라에서도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적립금을 “종신소득 또는 종신소득흐름을 제공하는 계약”¹⁾으로 전환(이하 종신소득전환)시키는 정책이 중요해짐.

-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규모는 2011년 3월 기준 31조 8천억 원에 달하며, 퇴직보험 및 신탁에서 퇴직연금으로 이행이 완료되는 올해 말을 기점으로 적립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대될 것임.
- 은퇴자의 안전한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서는 근로기간 중 축적한 적립금을 종신소득으로 전환시키는 정책과 관련 시장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함.

■ 미국에서는 종신연금 중심인 DB제도가 일시금 중심인 DC제도로 대체되는 현상에 대응하여 DC제도에 서 종신소득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음.²⁾

- 미국의 베이비 붐 세대는 4천 7백만 명에 달하며, DC제도의 적립금은 7조 달러(2010년 기준)를 초과함.
- DC제도의 적립금을 종신소득옵션이 아닌 다른 방식(예: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개인은 장수리스크, 투자리스크, 인플레이션리스크에 노출됨.
- 오바마 행정부(White House Task Force on Middle Class)는 개인이 부담하는 리스크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노후소득의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종신소득전환 유도방안을 논의 중임.

■ 본고는 최근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종신소득전환 정책과 시장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³⁾

- 주요내용은 종신소득전환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사용자의 수탁자책임 완화, 세제측면의 인센티브 논의,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새로운 방식 등임.

1) 정확한 표현은 “lifetime income or other arrangements designed to provide a lifetime stream of income after retirement”이므로 종신연금보다 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됨.

2) 일반적으로 DB제도에서는 사용자가 최종 급여의 일정 수준(예: 50%, 60%)을 종신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지만, DC제도에서는 이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일시금으로 지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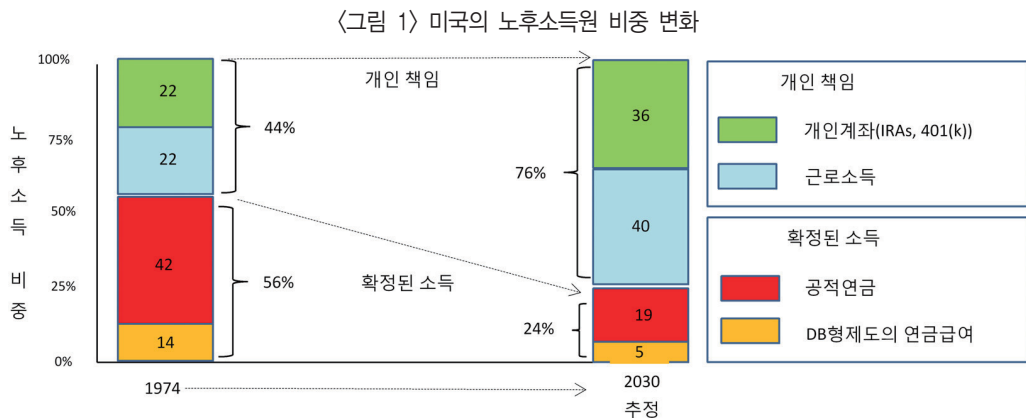
3)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지급단계에서 일시금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종신소득전환에 대한 명시적인 유인책이 없다는 측면에서 미국 DC제도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2. 시장현황



■ 미국에서는 공적연금의 역할과 DB제도의 비중이 동시에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노후소득을 마련하는 데 개인의 역할과 책임이 크게 증대됨.

-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와 Cerulli Associates는 전체 노후소득에서 정부(공적연금)와 사용자(DB제도)의 역할이 1974년에는 56%에 달하였으나 2030년에는 24%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함.
- 반면, 동 기간 개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 DC제도(401(k), IRAs)와 근로소득의 비중은 44%에서 76%로 증대될 것으로 추정함.



자료: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and Cerulli Associates(2003), Principal Financial Group, *Sustaining Income Through Retirement: 4 Strategies for Retiring Clients*, 2008 재인용.

■ 미국의 퇴직연금시장이 DC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C제도에서 종신소득전환을 유도하는 명시적인 정책이 없기 때문에 연금전환 시장규모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기준 즉시연금 규모는 76억 달러⁴⁾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연금보험 수입보험료(2,386억 달러)의 3.1%에 불과한 수준임.
- 즉시연금 중 DC제도를 통해 축적된 적립금이 연금으로 전환된 규모는 20억 달러(2006년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됨.

4) 1건당 평균 규모는 7만 5천 달러로 추정됨.

〈표 1〉 미국의 연금전환 시장 추이

(단위: %, 억 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거치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A)	82	87	84	93	68	92
즉시연금(B)	56	56	65	68	80	76
DC제도 적립금의 연금전환(C)	13	15	20	na	na	na
전체(A+B)	138	143	149	161	148	168
즉시연금 대비 DC제도 적립금의 연금전환(C/B)	23.2	26.8	30.8	na	na	na

자료: LIMRA, U.S. Individual Annuity Yearbook, 2010.

3. 종신소득전환을 위한 정책



- 미국 정부에서는 중산층 가계의 노후소득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DC제도에서 종신소득전환 유도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특히 연금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음.

가. 오바마 행정부의 논의

- 오바마 행정부의 작업반에서 발표한 보고서⁵⁾에는 중산층의 노후소득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DC제도 내에서 종신소득보장 옵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내용이 포함됨.

● 이는 적립금의 일부를 장래 지급이 보증된 소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퇴직자가 직면하는 장수리스크나 투자손실과 인플레이션에 의해 생활수준이 저하되는 리스크를 축소시키기 위한 것임.

- 작업반의 후속 조치로 근로자퇴직급여안전위원회(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와 국세청에서는 정책수립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RFI: Request for Information)⁶⁾ 과정을 거침.

5) Annual Report of the White House Task Force on the Middle Class, February 2010.

6) 2010년 2월에 Request for Information Regarding Lifetime Income Options for Participants and Beneficiaries in Retirement Plans를 발표하였음.

- RFI는 정부에서 최종안을 채택하기 전에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주요내용은 DC제도 내 종신소득옵션 활용 현황임.

〈표 2〉 의견수렴(RFI)의 주요내용

1.	가입자가 급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종신소득 형태로 수령하면 가입자 입장에서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2.	종신소득(예: 변액연금의 종신소득지급 옵션 부가)을 제공하는데 영향을 주는 비용요인은 무엇인가?
3.	DC제도에서 종신소득옵션이 요구되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디폴트옵션이 바람직한가? 적립금 전부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 사용자 입장에서 어느 수준이 바람직한가?
4.	근로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종신소득옵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예: fee, 리스크 등)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이런 정보는 언제, 어떤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는가? 현재 어떤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누가, 언제,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가?
5.	사용자가 종신소득옵션의 장단점에 대해 가입자 교육을 시키는데 법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당국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6.	가입자의 급여명세서에 적립금을 예시하는데, 종신소득흐름으로 표현한 급여를 추가로 예시해야 하는가?
7.	사용자는 종신소득옵션을 제공하고 가입자가 이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8.	사용자가 연금공급자 선택 시 수탁자책임에 대한 면책규정이 어느 수준까지 적용되고 있는가?
9.	퇴직연금제도 내에서 지급옵션으로 종신연금을 제공하면, 사용자 측면에서의 비용과 편익은 무엇인가?
10.	소규모제도에서 지급옵션으로 종신연금을 제공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비용은 무엇인가?

자료: Department of the treasury and Department of labor, Request for Information Regarding Lifetime Income Options for Participants and Beneficiaries in Retirement Plans, February 2, 2010을 요약

■ 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전통적인 DB제도보다 노후소득 안전성이 낮은 DC제도에서 종신소득전환이 필요함을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장기 정책으로 수립될 것으로 예상됨.

- RFI 과정에서 800건 정도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상원 고령화특별위원회(Senate Special Committee on Aging)에서 논의됨.⁷⁾
- 퇴직연금제도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이 분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다면 상당 수준의 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2010년 6월에 개최되었으며, 내용은 http://aging.senate.gov/hearing_detail.cfm?id=325713에 게시됨.

나. 사용자의 수탁자책임 완화

■ DC제도의 적립금을 종신소득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은 “제도 내(in-plan)” 방식과 “제도 밖(out-of-plan)” 방식이 있는데, 제도 내 방식으로 종신소득전환 옵션을 제공하는 사용자는 수탁자책임을 부담하게 됨 (〈표 3〉 참조).⁸⁾

- 제도 내 방식은 적립단계부터 관련 상품을 편입하는 방식과 퇴직시점에서 지급옵션을 제시하는 방식이 있으며, 제도 밖 방식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단체연금을 제공할 수 있음.
- 제도 내 방식으로 퇴직연금제도와 연금공급자 간 단체연금계약을 체결하면 이후에도 사용자는 수탁자책임을 부담하게 됨.
- 제도 밖 방식은 적립금을 개인퇴직계좌(IRAs)로 이전하거나, 일시금 수령 후 관련 상품을 공개시장에서 구입하는 방식이므로 사용자가 수탁자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지급옵션의 선택률과 다양성, 그리고 관련 비용측면에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종신소득전환 측면에서 제도 내 방식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짐.

- 제도 내 방식은 가용한 옵션의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개인의 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나, 종신소득전환을 선택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짐.
- 제도 밖 방식은 다양한 상품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상품공급자와 개별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높은 비용이 수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종신소득전환 비중도 낮은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정부는 2006년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에서 제도 내 전환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사용자의 수탁자책임을 완화시킴으로써 종신소득옵션의 선택률을 높이고자 함.

- 기존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가장 안전한 연금을 선택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엄격한 수탁자책임이 오히려 제도 내 종신소득전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함.
- 새로운 법이 사용자의 수탁자책임을 연금공급자의 재무건전성 조사(due diligence)로 한정함에 따라 사용자 책임은 연금공급자의 지급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제한됨.⁹⁾
- 이에 따라 사용자는 연금공급자를 신중하게 선정하고 모니터링 해야 할 책임은 부담하지만, 개별 연금계약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음.

8) 의견수렴 내용인 〈표 2〉에서도 5번과 8번 문항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9) 만약 사용자가 이에 대한 판단능력을 갖지 못하였다면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음.

다. 세제정책 논의

■ 미국에서는 DC제도를 통해 축적된 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모든 지급방식에 대해 동일한 세제(개인소득세)를 적용하지만, 최근 연금전환 촉진을 위한 세제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

- 일시금이나 종신소득 모두 동일한 개인소득세를 적용하므로 세부담은 개인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서만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일시금 수령 시 과세표준이 높아지므로 누진세 부담 가능성도 높음.
- 최근 세제정책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연금소득에 집중되어 있음.

■ 일시금 수령을 제한하고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측면의 인센티브 변경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와 부유층에 대한 혜택 논란으로 아직까지 법제화되지는 못함.

- 2007~2008 회기 중에 발의된 Senate Bill(S1010)은 연금소득에 대해 연간 4만 달러까지 50% 소득공제를 제안함.
- 이는 연간 2만 달러 한도로 연금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자는 취지였지만 세수감소에 따른 예산부담이 커서 통과되지 못함.
- 비과세 혜택의 수혜자 측면에서 볼 때, 연금소득을 통한 노후보장의 필요성이 높은 중저소득 계층보다는 보장의 필요성이 낮은 부유층의 수혜가 더 크다는 점도 반대논리로 작용하였음.
 - 최대한도까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립금 규모가 50만 달러에 달해야 하지만 대다수 가입자의 적립금은 이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일반인의 혜택은 미미할 것임.

■ 이밖에도 정부가 연금으로 전환되는 적립금의 일정비율만큼 매칭펀드를 조성하자는 방안도 제안됨.

- 동 방식에서는 실제 연금구입 재원이 매칭 기여율만큼 증대되는 효과가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소득세 환급을 통해 조달함.¹⁰⁾

10) 예를 들어, 매칭 기여율이 5%인 상태에서 근로자가 1억원을 연금전환하면, 실제 연금구입 재원은 1억 5백만원으로 높아짐.

4. 종신소득전환을 위한 새로운 방식



- 종신소득전환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과 함께 관련 시장(제도 내·제도 밖)에서도 새로운 방식이 출현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적립단계부터 연금상품을 포트폴리오로 편입시킨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음.
 - 이 방식은 DC제도에서도 DB제도와 마찬가지로 은퇴 후 연금급여를 수령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거치연금 또는 “DC제도 내 DB제도(DB in DC)”라고 불림.
- 적립기간 중 거치연금계약(정액연금이나 변액연금으로 가입)에 가입한 근로자의 적립금이 은퇴시점에서 DB제도의 종신연금과 같이 연금급여로 전환됨.
 - 정기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적립식투자효과(dollar-cost average)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은퇴시점에서 대규모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즉시연금을 구입하는 방식에 비해 금리리스크도 낮음.¹¹⁾
- BlackRock과 Prudential Financial은 목표만기펀드(target date fund)에 연금상품을 편입하였는데 은퇴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연금 비중이 자동적으로 증가함.¹²⁾
 - 은퇴시점에서 가입자가 일시금 수령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연금급여(2.5%씩 체증)를 수령하게 됨.
- 미국 정부의 정책이 DC제도의 지급방식을 종신소득흐름으로 유도하는 데 있기 때문에 거치연금 방식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시 이전성, 수익률 제고를 위한 초과수익 추구 등의 우려 사항도 있음.
 - 비용, 단순성, 연금소득의 충분성 등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며, 사용자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시 기록관리(recordkeeping)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됨.
 - 장수리스크 헤지 차원에서 수익률이 낮은 연금상품을 편입하였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 달성을 위해 잔여 포트폴리오에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음.¹³⁾

11) 전통형 연금상품의 경우 일시납 즉시연금 구입시점에서 금리가 낮아졌다면 가입자가 수령할 수 있는 연금급여가 항구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연금전환 시점에 따른 리스크를 가입자가 부담하게 됨.

12) 예를 들면, 연금 비중이 가입시점에는 5% 수준이었으나 점차 증대되어 은퇴시점에서는 50%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음.

5. 시사점



■ 미국 정부의 관심이 DC제도의 적용 대상자를 넓히고 기여율을 높이는 데서 종신소득전환 분야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급방식 관련 정책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함.

● 우리나라도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공적연금 및 공적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종신소득 전환 필요성이 높아질 것임.

● 따라서, 종신소득전환에 대한 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황을 파악한 후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슈를 공론화시켜야 할 것임.

■ 미국에서는 제도 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자의 수탁자책임을 완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자책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임.

● 사용자책임을 종신소득전환 관련 정보제공과 교육부문으로 확대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의 개별전환보다는 사용자의 교섭력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세제 유인책은 종신소득전환에 대해서는 부담을 축소시키고 일시금에 대해서는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 종신소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세수감소에 따른 부담을 감안하여 그 혜택이 실질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이 필요한 중저소득 계층에 집중되도록 설계해야 할 것임.

■ 종신소득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거치연금 방식의 활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시 이전성, 비용, 단순성 등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활용하도록 함. **키리**

13) 예를 들면, BlackRock이 제공하는 SponsorMatch에서는 연금상품과 목표만기펀드를 결합하였는데 만기시점의 주식 비중이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연금상품이 편입되지 않은 목표만기펀드의 주식 비중(38%)보다 더 높은 수준임.

〈별첨〉

〈표 3〉 미국 DC제도의 종신소득전환 방식

		장점	단점
제 도 내	은퇴시 점에서 제공	-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 적용 - 법인(단체)가격, 남녀 간 단일 가격	- 연금공급자 선정 시 사용자의 수탁자 책임 존재 - 연금공급자의 지급불능리스크 존재 - 기혼자에게는 연생연금 제공
	적립단 계에서 제공	- 장래 연금급여로 전환 가능 - 적립식투자효과(dollar-cost averaging)를 기대할 수 있어 일시 전환에 따른 리스크 축소	- 사용자의 수탁자책임 - 연금공급자의 지급불능리스크 존재 - 기록관리(recordkeeping) 업무 복잡 - 이전성 문제
제도 밖		- 수탁자의 모니터링 책임 없음 - 사용자의 비용부담 없음 - 다수 연금공급자 선택, 다양한 상품 공급 가능 - 퇴직 관련 재무설계와 통합 가능 - 사용자는 가입자가 연금공급자, 상품옵션을 선택하도록 지원	- 적립단계와 분리 - 정액연금 구입 시 시점 리스크 존재

자료: Heffernan, E., Value analysis of decumulation options for DC, Fidelity, May 2010에서 수정 작성.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필요

김대환 연구위원 / 이상우 선임연구원

요약

■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 「근로기준법」 시행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

-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지급 재원의 회사 내 유보를 허용하고 있어 근로자 수급권이 취약함.
- 퇴직적립금에 대한 중간정산이 용이하여 노후소득을 위한 저축 및 투자보다는 생활자금으로 소진됨.
- 퇴직금제도하에서는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유연한 인사관리가 제한적임.
- 평균 근속기간이 길지 않고 조기퇴직 및 이직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퇴직금을 노후소득 재원으로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함.
- 정작 노후소득 재원이 절실한 자영업자 등은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제도적으로 우월함.

-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재원의 사외적립을 강제화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고, 퇴직적립금의 생활자금화 방지를 위해 중간정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 사용자 입장에서도 인사관리가 경직되지 않도록 다양한 퇴직급여제도의 설계가 가능하며, 이직 또는 퇴직 시 노후소득 재원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됨.
- 가입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함.
- 이밖에도 수급권 강화, 가입의 용이성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퇴직금제도의 단점이 이미 알려져 있는데다 급변하는 사회·경제적인 환경하에서 제도적으로 우월한 퇴직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두 가지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병존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함.

-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반면, 공적연금의 보장성은 축소되고 있어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가 퇴직금제도와 병존하고 있어 그 확산이 더디게 진행됨.
- 이에 퇴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퇴직급여제도의 단일화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퇴직금이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유인책 마련도 필요함.

1. 검토배경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선진국형 퇴직급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 진행과 함께 출산율도 OECD 중 가장 낮아 은퇴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의 역할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조 노력도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은퇴자들의 소득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생산인구의 부담 증가, 국가 경쟁력 약화 등 많은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도 은퇴자들의 노후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공적연금의 한계를 인정하고 퇴직 연금을 활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법정퇴직금제도(이하 ‘퇴직금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제도상 많은 문제점이 드러남.

-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복수의 퇴직급여제도가 병존하고 있음.
- 제도 도입 이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4월 현재 32조 9천억 원에 이르지만, 여전히 대부분 기업들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음.¹⁾
 - 현재 전체 사업장의 7.3%, 4인 이하 사업장의 3.3%만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본고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고 있는 현행 퇴직급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퇴직연금제도가 그러한 문제점을 적절히 보완할 수 있는 제도임을 보임으로서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함.

1) 고용노동부(2011. 5. 27), 「2011.4월 말 기준 퇴직연금 도입현황」.

2. 법정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가. 미흡한 수급권 보호

■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지급 재원의 회사 내 유보를 허용하고 있어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

- 퇴직금 적립금의 회사 내 유보를 허용할 경우 기업파산 시 회사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으로부터 적립금 보존이 자유로울 수 없음.

■ 퇴직금제도하에서도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수급권이 미흡한 상태임.

- 1998년과 2000년에 각각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을 도입하여 퇴직금지급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외 적립된 금액만큼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음.²⁾
- 하지만 퇴직금제도는 태생적으로 퇴직금 재원의 사내유보를 허용하고 있어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을 이용하지 않아도 됨.
-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을 이용하여 사외 적립을 하더라도 최저 적립기준이 없는 상황임.

나. 중간정산으로 인한 노후소득 재원소진

■ 퇴직금제도는 퇴직 적립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있음.

- 퇴직금제도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만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함.
 - 중간정산에 대한 제한적 규정이 전무하여 퇴직금이 노후소득 재원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퇴직금제도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됨.

2) 퇴직금제도하에서의 퇴직급여 재원 사외예치상품으로 퇴직신탁은 은행에서 판매, 퇴직보험은 보험회사에서 판매함.

- 노동부의 설문조사결과³⁾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70.8%가 중간정산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기업일수록, 그리고 노동조합이 존재할수록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비율이 높음.
 - 근로자수 10~49명 이하는 69.6%가,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81.8%가 중간정산을 실시함.
 - 또한,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은 84.4%가 중간정산함.

■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노후소득을 위한 저축 및 투자보다는 대부분 생활비로 소진되고 있어 중간정산에 따른 노후소득 재원의 소진이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됨.

- 보험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중간정산을 경험한 근로자 대부분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생활비로 소진하고 있으며, 단 6.7%만이 노후소득을 위한 저축 및 투자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중간정산 퇴직금 사용처

(N=55, 복수응답 포함)

사용처	노후자금을 위한 저축 또는 투자	생활비, 내구재 구입 등에 지출	자녀 교육비 지출	자녀의 결혼 자금 및 주택 자금	부채 해결	장기 부동산 및 주식 투자	단기적인 주식, 채권, 펀드 등 투자	기타
비율	6.7%	60.0%	26.7%	10.0%	56.7%	23.3%	3.3%	6.7%

자료: 보험연구원(2009).

- 퇴직적립금에 대한 중간정산이 빈번한 이유는 퇴직금제도하에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취약하기 때문이기도 함.

다. 인사관리의 중요성

■ 퇴직금제도하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유연한 인사관리가 제한적일 수 있음.

-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퇴직금 산출기준 임금이 증가하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하에서는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퇴직금이 증가하는 반면, 연봉제 등 성과주의체계 하에서는 성과에 따라 기준 임금이 변동하므로 퇴직금도 그 변동에 영향을 받음.
- 또한, 고용은 연장되 일정연령 이후에는 기준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에도 임금 피크제 적용 이후 퇴직금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어 새로운 형태의 임금체계를 도입하기가 어려움.

3) 김원식·신문식(2008. 12), 『퇴직금여제도 도입·운용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노동부.

라. 노동시장 환경변화로 인한 노후소득보장 미흡

■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길지 않고 조기퇴직 및 이직이 일반화되어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짐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써 퇴직금제도는 매우 취약하다 할 수 있음.

- 2009년 8월 현재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4년 11개월이며, 정규직의 경우 6년 7개월, 비정규직의 경우 1년 9개월에 불과함.
 - 정년까지 일했던 종전에는 40년 일한 후 노후 20년을 퇴직금으로 생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조기퇴직이 일반화되고 취업연령도 상승하여 근로기간이 단축되고 노후기간이 늘어나는 추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제도는 이직 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노후소득 재원으로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함.

〈표 2〉 근로형태별 평균 근속기간

구분	평균 근속기간		
	2007. 3	2008. 3	2009. 8
〈 임금근로자 〉	4년 6개월	4년 8개월	4년 11개월
정 규 직	5년 11개월	6년 1개월	6년 7개월
비정규직	2년 2개월	2년 2개월	1년 9개월

자료: 통계청, 「근로형태별·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결과」, 각 연도.

마. 퇴직금제도의 사각지대 방치

■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퇴직급여제도 혜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음.

- 도입 초기 30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던 제도가 1975년 16인 이상, 1987년 10인 이상, 1989년 5인 이상, 2010년 4인 이하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되어 전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의 혜택을 받게 됨.
- 하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32.8%(2006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는 퇴직금제도의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자영업자는 근로자에 비해 소득기반이 고르지 못해 퇴직급여제도를 통한 노후소득재원 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

3. 퇴직연금제도의 우월성



■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에 근거하여 2005년 12월 1일에 도입됨.

-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된 퇴직연금제도는 공적연금(1층 노후소득보장 장치)을 보완하는 2층 노후소득보장 장치로 사적연금인 개인연금(3층 노후소득보장 장치)과 함께 현재의 3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함.
-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년씩 연장되어 2033년부터는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은 55세부터 수령 가능하므로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가교 연금(Bridge Pension)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우월성을 보유함.

- 첫째, 퇴직금재원의 사외적립을 강제화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강화됨.
 - 퇴직금제도와 달리 사용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사외 금융기관에 퇴직금 재원을 적립하고, 해당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없도록 하여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음.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 재원의 60% 이상을 사외적립해야 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수급권이 보장됨.
- 둘째,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와 달리 노후생활자금으로 쓰여야 할 퇴직금의 생활자금화 방지를 위해 중간정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 다만, 모든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50%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을 허용하여 필요 시 생활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적립금의 연속성을 최대화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⁴⁾
 - 또한, DC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⁵⁾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시, 기타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적립금 중도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중간정산 금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함.⁶⁾

4) 근퇴법 제11조(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사유)

5) 2011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퇴법 개정안에서는 개인퇴직계좌(IRA)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변경함.

6) 근퇴법 제8조(퇴직연금수급권의 담보제공사유)

- 셋째,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 입장에서 인사관리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퇴직급여제도가 설계 가능함.
 - DC형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가 지급받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기만 하면 되므로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인사제도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음.
- 넷째, 이직 또는 조기퇴직 시 노후소득 재원의 연속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이직하더라도 새로운 직장의 퇴직연금제도로 퇴직금 이전이 가능하고, 조기퇴직하거나 새로 입사한 직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지 않아 퇴직금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IRP에 퇴직금을 적립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음.
- 다섯째, 근퇴법 개정안에서는 자영업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IRP 가입을 허용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함.⁷⁾
- 여섯째, DB 및 DC형의 경우 근로자 스스로 IRP를 설정하여 적립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소득공제혜택도 누릴 수 있어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근로자 참여가 허용되고 있음.
- 이밖에도,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 가입의 용이성 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4. 퇴직급여제도의 단일화



-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적 우월성을 가진 퇴직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퇴직금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근퇴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근퇴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에도 퇴직연금제도는 의무가입제도가 아님.

7) 근퇴법 개정안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 근로자의 수급권, 퇴직적립금의 영속성, 가입의 용이성, 제도적 유연성 등 퇴직금제도에 비해 모든 면에서 우월한 퇴직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두 가지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병존시키기 보다는 단일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공적연금의 보장성은 축소되어 가는 만큼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제도와 병존하고 있어 퇴직연금제도의 확산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한 축으로 퇴직연금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퇴직연금 중심의 퇴직급여제도로 빠르게 재편할 필요가 있음.

■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퇴직연금제도에서 중간정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궁극적인 기능에 부합함.
- 중간정산 경험자들 대부분이 퇴직금을 노후소득 재원이 아닌 생활비로 소진하고 있는 만큼 퇴직연금제도로의 단일화 과정에서 누적 퇴직금이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유인책 마련이 절실함. **kiri**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과 정책적 시사점

김대환 연구위원 / 오병국 연구원

요약

■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은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음.

- 1988년 제도 초기 70%의 소득대체율을 1998년 말 60%로 하향 조정한 이후, 2007년 법 개정으로 2028년까지 40%가 되도록 조정함.
- 연금수급 개시 연령도 현재 60세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상향하여 65세로 조정함.

■ 더욱이,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목표소득대체율 40%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민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제도들이 큰 틀에서 연계되어 논의되지 못함.

- 국민연금공단이 강조하는 소득대체율 40%는 가입기간 40년을 가정했을 때이며, 실제로 평균가입기간은 27년에 불과해 향후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5.8~30.7%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됨.
- 하지만, 제도개혁으로 인해 축소된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 제도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 늘어나는 은퇴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 및 노동시장 관련 제도들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며, 이들 제도들 간 상호보완적 역할에 대한 인식도 필요함.

- 국민들이 퇴직적립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퇴직연금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보장성 축소에 따른 노후소득보장기능 약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소득대체율 제고를 위해 단순히 보험요율 인상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1. 검토 배경



■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사회·경제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됨.

- 기대수명 증가로 은퇴 이후 생존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0층),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 및 개인연금(3층)으로 구성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견고한 구축이 매우 중요함.

■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보장성 축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함.

- 국민연금 발족 초기에 설계된 ‘근로소득 대비 높은 연금급여수준’으로 인하여 재정안정성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목표소득대체율을 하향 조정하고 연금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함.
- 이러한 목표소득대체율의 하향 조정은 곧바로 은퇴 후 받게 될 국민연금 소득수준의 감소로 이어질 것임.
- 하지만 축소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보완할 수 있는 관련 제도들의 개선이나 협조체계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보고는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목표소득대체율과 별도로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을 추산하고, 퇴직연금 및 노동시장과 연계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정한 실질소득 대체율을 통해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노후 소득보장 수준을 재검토함.
- 아울러 국민연금의 축소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퇴직연금 및 노동시장과 연계된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함.

2.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장성 축소



가. 국민연금의 보장성 축소 배경

■ 공적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당연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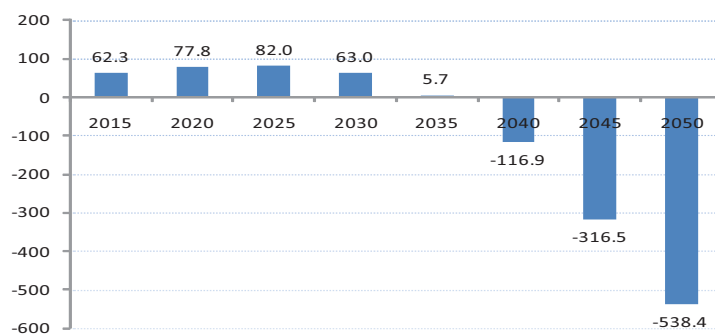
- 1988년 제도 초기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국민연금제도를 강제적용함.
- 그 후,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였고, 1995년 7월부터 농어촌지역에 적용되었으며, 1999년 4월 도시지역에도 적용함에 따라 제도 도입 11년 만에 전 국민이 적용받게 됨.

■ 하지만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는 후한 급여혜택과 낮은 보험료 수준으로 인해 재정 악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함.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2035~2040년경에는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며, 2045년경에는 연금 자체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추이(국민연금법 개정 이전)

(단위: 조 원)



주: 문형표(2007. 12),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의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함.

나. 국민연금의 보장성 관련 제도적 변화

■ 국민연금제도의 시행 초기에 설계된 ‘저부담-고급여’ 체계¹⁾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한 모수적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보장수준이 점진적으로 축소됨.

- 국민연금제도는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적 불균형 및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재정이 불안정해지고, 세대 간 불형평성 우려가 커지면서 ‘저부담-고급여’ 체계로의 변화가 불가피함.
- 이에 따라 법정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재정안정화를 도모함.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초기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70%였으나, 1998년 말 법 개정 시 60%로 하향 조정된 후, 2007년 7월 법 개정 시 2028년까지 40%가 되도록 조정됨.

〈표 1〉 법정소득대체율의 조정 현황

연도	법정소득대체율
1988~1998	70%
1999~2007	60%
2008~2028	60%에서 매년 1%p씩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
2028년 이후	40%

자료: 국민연금공단(<http://www.nps.or.kr>).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법정소득대체율을 하향 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함.

-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은 60세이나,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상향되어 65세까지로 조정됨.

〈표 2〉 노령연금 수급연령

출생연도(년)	수급개시연령(세)
1953~1956	61
1957~1960	62
1961~1964	63
1965~1968	64
1969년생 이후	65

자료: 국민연금공단(<http://www.nps.or.kr>).

1) 1988년 제도시행 초기의 보험료는 3%(2011년 현재 9%), 소득대체율은 40년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70%였음.

■ 2008년 재정계산 결과에 의하면,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²⁾의 결과로 국민연금은 향후 2060년경까지 적립기금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인 수지구조는 여전히 취약함.

- 국민연금의 보장성 축소를 단행한 제도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2060년경에는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료 수입이 총지출의 38.8%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됨.

3.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과 관련 문제점



가.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 추산

■ 현재 국민연금제도상 평균소득을 가진 사업장가입자가 평균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향후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25.8~30.7%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됨.

- 우리나라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203만 원³⁾, 국민연금의 평균가입기간이 27년⁴⁾임을 감안할 때 은퇴 이후 받게 될 국민연금 수급액은 월 525,340~622,940원 수준⁵⁾임.
- 이상의 조건에 따라 근로자의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25.8~30.7% 수준임.
 - 실질소득대체율은 “(완전노령연금 수급액/가입자 월평균소득)×100”산식에 의하여 산출함.
 - 이를 이용하면 실질소득대체율의 하한선은 $25.8\% (= \frac{525,340}{2,030,000} \times 100)$ 이며, 상한선은 $30.7\% (= \frac{622,940}{2,030,000} \times 100)$ 임.
-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소득수준이 높은 자일수록 실질소득대체율은 하락하는데, 월소득이 3백 68만 원 이상인 사업장가입자의 실질소득대체율은 급격히 하락함.
 - 월 소득이 5백만 원인 근로자의 실질소득대체율은 15.9%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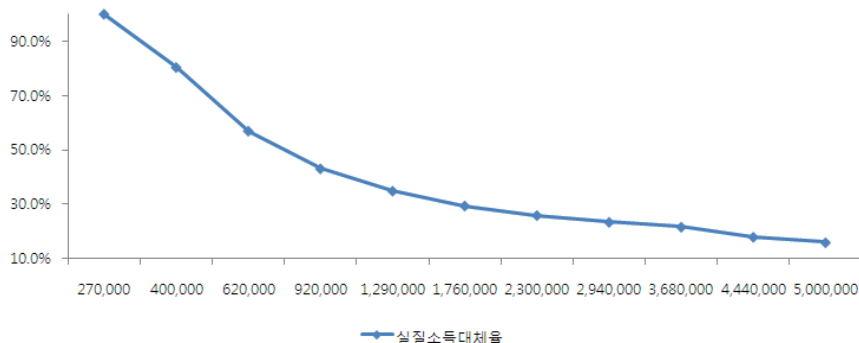
2)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40%), 수급개시 연령 상향 조정(65세)등임.

3) 통계청 기준(2011. 3)의 월평균 근로자소득을 국민연금가입자의 월평균소득으로 가정함.

4) 국민연금연구원의 생애국민연금소득 산출 시 추정된 피용자의 가입기간을 근로자(사업장가입자)의 평균가입기간으로 가정함.

5) ‘노령연금 예상월액표’를 참조함. 국민연금공단(<http://www.nps.or.kr>).

〈그림 2〉 소득수준별 실질소득대체율의 추정



나. 제도적 보완책 미비

1) 사적연금제도와 연계성 부재

■ 주요국의 경우 공적연금의 한계를 인지하고 사적연금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재원을 마련하려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연금수령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영국 및 칠레의 경우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노후소득 흐름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퇴직연금의 연금수령을 강화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의 보장성 축소 과정에서 사적연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

- 일시금 수령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일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실질소득대체율이 낮을 경우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크게 약화되므로 퇴직연금의 연금수령이 필수적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경우 퇴직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생활자금화 하는 경향이 강함.
-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령에 대한 기준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규정했을 뿐, 연금수령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 뿐만 아니라 일시금 수령에 따른 세제적인 혜택도 여전히 커서 연금수령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 일시금 수령의 경우 금액의 40%에 달하는 기본공제와 근속연수별 공제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산출세액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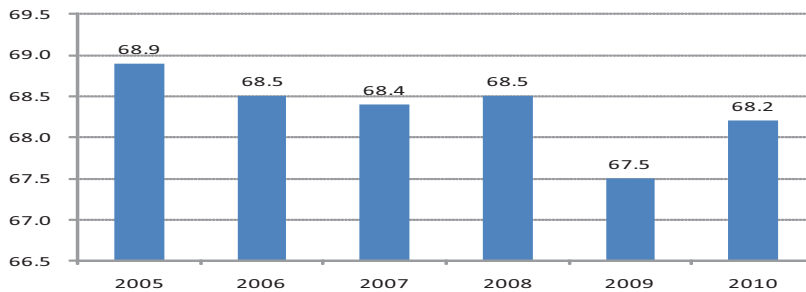
2) 노동시장환경 개선과의 연계성 부재

■ 국민연금의 보장성 축소는 사적연금제도뿐만 아니라 노동시장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과도 병행하여 보 완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환경 개선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제고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영국의 경우 사적연금 활성화 및 연금수령 강화 이후 정년을 65세에서 68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네덜란드는 공적연금의 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는 대신 조기퇴직을 제한하고 고령자의 장기고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연령이 높고 은퇴연령은 낮아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노동수요 감소, 고학력자의 증가, 구직기간의 증대 등으로 주취업층(25~29세)의 고용률은 2005년(68.9%) 이후 꾸준히 낮아져 2010년 68.2%를 나타냄.
 - 또한,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은퇴연령이 58.7세⁶⁾에 불과한 가운데, 조기퇴직 및 명예퇴직 등이 빈번함.

〈그림 3〉 주취업층 고용률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KOSIS.

6) 국민노후소득보장패널(2차)에 포함된 은퇴자 2,927명을 활용해 분석함(2007년 기준).

4. 정책적 시사점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사적연금 및 노동시장 관련 제도들이 큰 틀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함.

- 빠르게 늘어나는 은퇴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된 여러 제도들이 서로 협력 및 보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제도의 연계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충분히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환경개선도 뒷받침되어야 함.

■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에 따른 부작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퇴직연금의 연금수령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 공적연금의 보장성 축소는 사적연금 활성화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수령 활성화를 병행함으로써 보완되어야 함.
- 특히, 연금수령이 기본인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경우 퇴직연금의 연금수령을 강화하는 유인책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퇴직연금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은 가입 활성화에만 집중되어 있음.
- 이에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연금수령 유인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수급연령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함.

-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이 점차 늦추어질 경우 가교연금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음.
 - 물론, 조기노령연금을 통해 수급연령 65세 이전에도 필요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지만, 조기노령연금 감액률(1년 당 6%) 적용으로 고령기에는 심각한 소득부족이 초래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연금지급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평균 은퇴연령과 국민연금 수급연령 사이에 연금액을 증가시키는 한편,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경우 연금액을 점차 감소시키는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의 충분한 소득대체율과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한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노동시장의 환경개선이 우선과제임.

- 주요국보다 낮은 공적연금의 보험료율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요율 인상도 필요하겠지만,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의 요율인상은 큰 의미가 없음.
-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근로기간 40년을 가정하기보다 실질적인 근로기간 연장과 안정적 근로환경 구축을 통해 목표소득대체율과 실질소득대체율간 차이를 줄여나가야 함.
 - 근로기간의 연장은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 제고와 재정안정을 통한 동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과제임. **kiri**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자성과와 시사점

이경희 연구위원 / 최 원 선임연구원

요약

■ 2011년 6월 말 기준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수 286만 명, 적립금 규모 36조 6,000억 원으로 성장하였으나, 자산운용 측면에서 원리금보장형 중심의 단기투자 문제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

- 원리금보장형 비중은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91.1%에 달하며, 이들 상품의 운용기간 역시 1년형이 거의 70%에 달할 정도로 단기화 되어 있음.
- 보수적이고 단기적인 자산운용으로 인해 임금인상률(또는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률 실현이 어렵게 된다면 중국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부담이 증대될 우려가 있음.

■ 데이터가 가용한 분석기간인 2007~2010년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투자수익률(기하평균)을 살펴본 결과, DB 4.7%, DC 4.0%로 나타난 가운데, DC의 투자성과가 임금인상률(4.3%)과 시장수익률(3년 만기 국고채수익률 4.5%)을 하회한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결과는 DC를 선택한 근로자의 경우 원리금보장형 중심의 자산운용 시 현행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거나 DB를 선택한 근로자에 비해 퇴직급여가 낮아질 우려가 있음을 의미함.

■ 2010년 투자성과를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사용자 및 가입자의 리스크 부담이 없는 원리금보장형에서는 DB와 DC의 성과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리스크를 부담하는 실적배당형에서는 DB의 성과가 DC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DB에서는 투자전문가가 체계적이고 일관된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데 비해 DC에서는 투자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 개인이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으로 보임.

■ 투자성과가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DC에서는 임금인상률(또는 시장수익률)에 상응하는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적배당형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근로자에 대한 투자교육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퇴직연금사업자)의 투자교육이 내실화되어야 하며, 정책당국도 기관투자자와 근로자 개인 간 정보 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변동성을 제어하면서 DC의 투자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① 라이프사이클펀드, 목표만기펀드 등을 디폴트펀드로 지정하는 방안과 ② 적립금을 개별 근로자가 운용하지 않고 전문가가 집합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2011년 6월 말 기준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수 286만 명, 적립금 36조 6,000억 원으로 성장하였으나, 원리금보장형 중심의 단기투자라는 자산운용 측면의 문제점은 지속되고 있음.

- 원리금보장형 비중은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91.1%(실적배당형은 6.5%)에 달할 정도로 높아짐.
-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는 상품의 만기 역시 1년형이 거의 70%에 달할 정도로 단기 투자에 치우쳐 있음.

■ 보수적이고 단기 중심적인 자산운용은 벤치마크(예: 부채증가율, 시장수익률)에 상응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사용자(DB)와 근로자(DC)의 부담이 증대될 수 있음.

- 장기투자가 가능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오랜 시간 동안 소극적으로 운용하면 확정급여형(DB) 퇴직 연금을 도입한 사용자는 추가부담금을 기여해야 하고,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한 근로자는 기존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거나 DB에 가입한 근로자에 비해 낮은 퇴직급여를 수령할 위험에 노출됨.

■ 이에 본고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퇴직연금사업자의 투자성과를 제도 유형별로 살펴보고,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가용한 2007~2010년 데이터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자산배분, 투자수익률, 리스크를 중심으로 DB와 DC를 서로 비교하고, 2010년에 대해서는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으로 구분하여 투자성과를 살펴봄.
- 이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산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2. 적립금과 자산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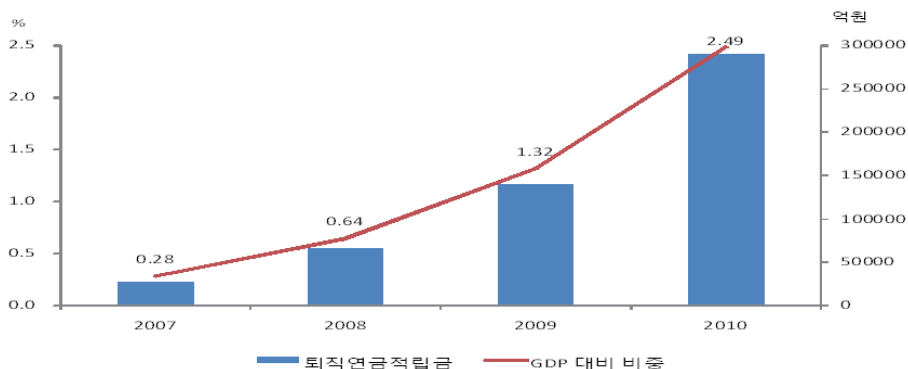


가. 적립금 현황

■ 퇴직연금 적립금은 제도 도입 이후 매년 100% 이상 증가하여 2010년 12월 말 기준 29조 1,472억 원에 달하였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9%로 높아짐.

● 퇴직보험·신탁의 제도 종료, 퇴직금의 중간정산 요건 강화, 신설 사업장의 퇴직연금 자동설정, 가입대상 확대(자영업자) 등을 계기로 향후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증대될 전망이다.

〈그림 1〉 퇴직연금 적립금과 GDP 대비 비중 추이



자료: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나. 자산배분

■ 적립금에 대한 자산배분 추이는 DB와 DC 모두 지속적으로 원리금보장형 비중은 증가하고 실적배당형 비중은 축소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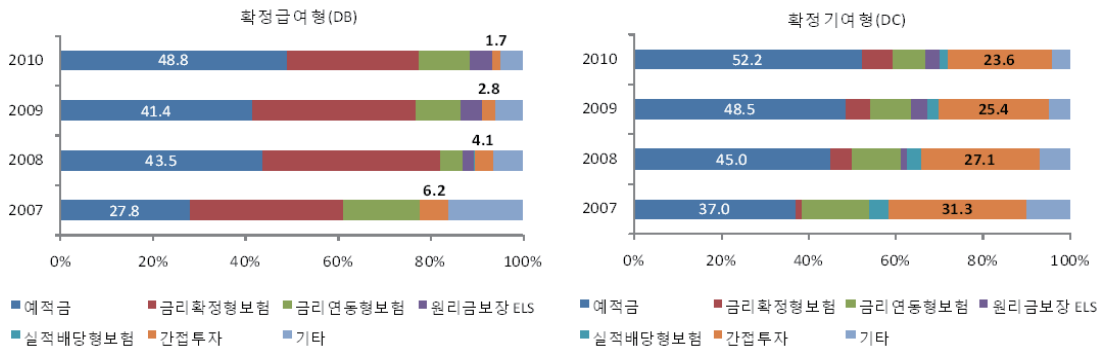
● DB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77.5%에서 2010년 93.4%로 높아졌으며, DC 적립금 역시 동 비중이 53.9%에서 70.0%로 높아짐.

● 실적배당형 비중은 DB에서는 10% 미만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낮은 DC에서도 2007년 35.8%에서 2010년 25.6%로 낮아짐.

■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계약형 구조하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상대적 고금리 제시와 사용자 및 가입자의 ‘근시안적인 손실회피’ 행태가 결합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원리금보장형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상품인 예적금, 금리확정형보험, 금리연동형보험 등으로 운용되며, 실적배당형은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상품과 실적배당형보험으로 운용됨.

〈그림 2〉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산배분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각 제도 유형별 자산배분은 부채의 특성(DB), 투자규제(DB 및 DC), 가입자 특성, 사용자의 선호, 금융 시장 여건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인해 DB와 DC 모두 원리금보장형 중심의 자산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3. 제도 유형별 투자성과

가. 2007~2010년 성과 분석

■ 금감원의 퇴직연금비교공시 자료¹⁾에 의하면, 2007~2010년 연평균 투자수익률은 DB 4.75%, DC 4.6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DB가 DC를 소폭(0.13%p)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1) 2010년 기준 43개의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실적을 공시하였으며, 공시된 자료의 투자수익률은 수수료와 보수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률 개념임. 2006년 자료는 적립금 규모가 작고 사업자 간 편차가 커서 제외함.
(<http://pension.fss.or.kr/fss/psn/main.jsp>)

- 동 기간에 대한 기하평균수익률 역시 DB 4.73%, DC 3.96%로 나타나 DB가 DC에 비해 0.77%p 높게 나타남.
- 비록 우리나라의 분석기간이 4년으로 매우 짧지만, DB 성과가 DC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장기 시계열을 갖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일치하는 결과임.
 - 미국의 1995~2008년 투자수익률은 DB가 7.51%인데 비해 DC는 6.48%로 나타나 DB가 DC에 비해 1.03%p 높음.²⁾
- 한편, 자산규모를 감안한 수익률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산규모가 클수록 투자 가능한 대상이 확대되고 규모의 경제도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임.

〈표 1〉 제도 유형별 투자성과 비교(2007~2010)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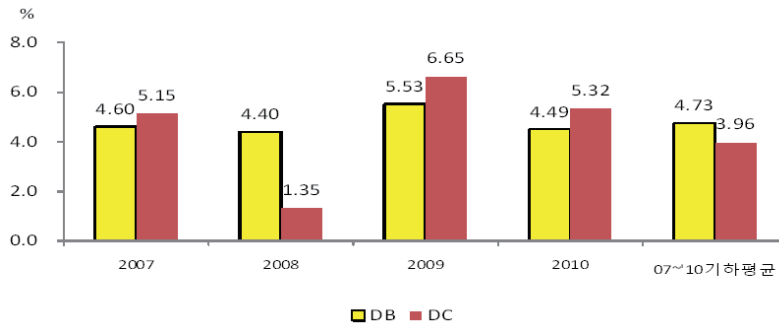
구분	자산가중평균			단순평균		
	DB	DC	격차(DB-DC)	DB	DC	격차(DB-DC)
2007년	4.60	5.15	-0.55	3.52	4.49	-0.96
2008년	4.40	1.35	3.04	3.16	1.71	1.45
2009년	5.53	6.65	-1.12	5.01	6.03	-1.03
2010년	4.49	5.32	-0.83	4.35	5.10	-0.75
연평균(A)	4.75	4.62	0.14	4.01	4.33	-0.32
표준편차(B)	0.52	2.28	-1.75	0.83	1.86	-1.03
A/B	9.11	2.03	7.08	4.83	2.33	2.50
기하평균(2007~2010)	4.73	3.96	0.77	3.95	3.92	0.03

주: 자산가중평균은 각 연도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을 해당 사업자의 자산규모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함.
자료: 금감원, 「퇴직연금비교공시」 자료.

- 투자성과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실적배당형 비중이 낮은 DB 수익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에만 DC를 크게 상회하였고, 시장 반응이 이루어진 2009~2010년에는 DC를 하회함.
- 2008년은 DB와 DC 모두 수익률이 가장 낮은 연도였으나, DB는 4.40%를 유지한 데 비해 DC는 1.35%로 급락하여 DB 수익률이 DC 수익률을 3.05%p 상회함.

2) Towers Watson(2011, 4), 「Insider」, Volume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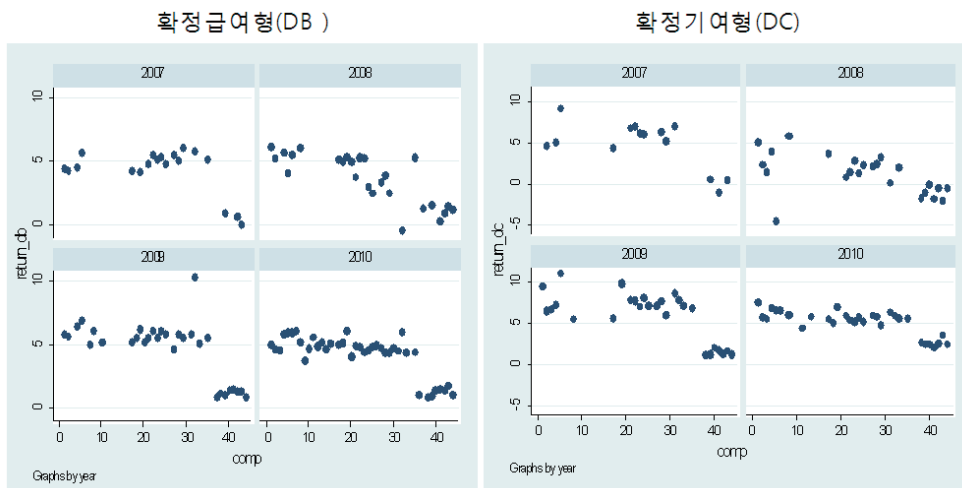
〈그림 3〉 연도 및 제도 유형별 투자수익률 비교(자산가중평균, 2007~2010)



■ 연도별 수익률 변동성의 경우 DB는 0.52%로 안정적인 반면, DC는 2.28%로 나타나 원리금보장형이 압도적인 DB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은 DC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그림 4〉와 같이 퇴직연금사업자 간 수익률은 DB에 비해 DC가 더 넓은 분포를 보임.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컸던 2008년의 경우, DB 적립금은 1개사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데 비해 DC 적립금은 7개사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함.

〈그림 4〉 퇴직연금사업자 간 투자수익률 분포



주: 1) 가로축은 퇴직연금사업자, 세로축은 해당 사업자의 투자수익률을 의미함.
 2) 적립금 규모 100억 원 이상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금감원, 「퇴직연금비교공시」 자료.

나. 투자수익률과 벤치마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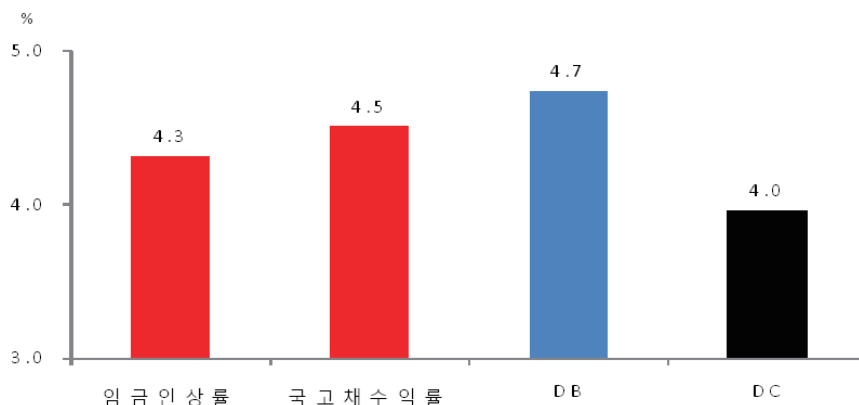
■ DB를 도입한 사용자와 DC에 가입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자성과가 벤치마크 (예: 부채증가율, 시장수익률 등)보다 높아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투자리스크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DB에서는 자산가치 증가율이 부채가치 증가율에 못 미칠 경우 사용자가 추가기여금을 부담해야 하고 이로 인해 재무적 압박을 받을 수 있음.
- 투자리스크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DC에서도 근로자가 현행 퇴직금제도나 DB와 비교하여 동일 수준 이상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투자수익률이 임금인상률에 상응해야 함.

■ 분석기간 동안 통계청이 추정한 임금인상률이 4.3%인 데에 비해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률은 DB 4.7%, DC 4.0%로 나타나 DC의 투자성과가 임금인상률에도 못 미친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결과는 DC를 선택한 근로자들이 원리금보장형 중심으로 자산운용을 하게 되면 현행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거나 DB를 선택한 근로자에 비해 퇴직급여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시장수익률과 비교해보더라도 DC 수익률은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4.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투자수익률의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5〉 투자수익률과 벤치마크 비교(2007~2010)



주: 1) 각 지표는 2007~2010년 기하평균 기준임.

2) 국고채 수익률은 3년 만기 기준(동 기간에 대한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4.9%)임.

자료: 금감원, 「퇴직연금비교공시」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다. 자산배분 유형을 고려한 2010년 실적

■ 금융감독원에서는 2010년부터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자성과를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으로 구분하여 공시함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가 부담하는 리스크(원리금보장 유무)를 감안한 성과 비교가 가능해짐.

● 사용자와 근로자의 리스크 부담이 없는 원리금보장형에 비해 리스크를 부담하는 실적배당형의 수익률이 높고, 퇴직연금사업자 간 수익률 편차도 크게 나타남.

■ 2010년 원리금보장형의 수익률은 DB 4.36%, DC 4.09%로 나타나 DB와 DC 간 매우 유사한 성과를 보임.

● 원리금보장형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 간 표준편차 역시 DB 1.80%, DC 1.67%로 유사하여 수익률을 표준편차로 나눈 수익률(DB 2.43%, DC 2.45%)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이에 비해 투자리스크를 사용자(DB)와 근로자(DC)가 부담하는 실적배당형의 성과³⁾는 원리금보장형과 달리 DB가 DC에 비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실적배당형의 투자수익률은 DB 10.81%, DC 8.34%이며, 퇴직연금사업자 간 표준편차는 각각 4.29%, 4.12%로 나타남.

● 퇴직연금사업자 간 변동성을 고려한 수익률도 DB 2.52%, DC 2.03%로 나타나 DB가 DC에 비해 0.49%p 높음.

■ 실적배당형의 성과에서 DB가 DC를 초과한 것은 DB의 경우 투자전문가가 좀 더 체계적이고 일관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데 비해 DC에서는 투자 관련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 개인이 운용에 대한 의사 결정에 관여하기 때문으로 보임.

● 다른 한편으로는 DB와 DC 간 위험자산에 대한 자산운용규제의 차이⁴⁾도 투자성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됨.

3) 적립금 규모 10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함.

4) 위험자산에 대한 직접투자한도는 DB에서는 30%인데 비해 DC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수익증권에 대한 위험자산 투자한도 역시 DB는 50%인데 비해 DC에서는 이보다 낮은 40%임.

〈표 2〉 원리금보장 여부 및 제도 유형별 투자수익률 비교(자산가중평균, 2010)

(단위: 억 원, %, %p)

구분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전체			전체			적립금 100억 원 이상		
	DB	DC	격차	DB	DC	격차	DB	DC	격차
평균 적립금 규모	4,117	779	3,338	88	281	-193	218	579	-361
수익률	4.36	4.09	0.27	11.32	8.43	2.90	10.81	8.34	2.47
표준편차	1.80	1.67	0.13	6.54	3.86	2.67	4.29	4.12	0.18
수익률/표준편차	2.43	2.45	-0.02	1.73	2.18	-0.45	2.52	2.03	0.49

주: 1) 수익률은 각 연도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을 해당 사업자의 자산규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2) 2010년 수익률을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양자 모두에서 DB가 DC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체 수익률은 오히려 DC가 DB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1〉 참조). 이는 DC가 DB에 비해 원리금보장형 대비 상대 수익률이 높은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임.

자료: 금감원, 「퇴직연금비교공시」 자료.

4. 시사점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투자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운용 방법의 다변화전략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의 단조로운 운용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률과 리스크가 함께 고려된 자산배분 실시가 바람직함.

■ 2007~2010년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 DC의 성과는 DB의 성과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벤치마크지표로 볼 수 있는 임금인상률(또는 시장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결과는 현재 DC에 가입한 근로자가 기존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거나 DB에 가입한 근로자에 비해 낮은 퇴직급여를 수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함.

■ DC 가입자가 임금상승률(또는 시장수익률)에 상응하는 투자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적배당형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동시에 관련된 인프라 구축도 요구됨.

-
-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퇴직연금사업자)의 투자교육이 내실화되어야 하고, 정책당국도 기관투자자와 근로자 개인 간 정보 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변동성을 제어하면서 DC의 투자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라이프사이클펀드, 목표만기펀드 등을 디폴트펀드로 지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적립금을 개별 근로자가 운용하지 않고 전문가가 집합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kiri**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보조금 지원 정책 방향

— 독일 리스터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 이상우 선임연구원

요약

■ 현재 우리나라 개인연금제도는 다층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기에 제도의 포괄성(가입률과 유지율)과 급여의 적절성, 그리고 소득효과 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

- 노후소득보장의 다층체계구축을 위해서는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사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함.

■ 독일의 리스터연금은 정부 보조금 지원형 개인연금제도로 주로 저소득계층과 다자녀가족의 사적연금 보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공·사연금제도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독일은 정부 보조금 및 세제지원이 주로 중산층 이하 저소득계층 등에 집중되는 금융감독청 인증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을 2002년에 도입하여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개인연금 활성화를 기하고 있음.
- 리스터연금 도입 이후 2002년 337만 명에 불과하던 가입자가 2010년 1,240만 명으로 급증하는 등 2009년 말 기준 독일 가입 대상자의 약 1/3 이상이 가입함.
- 특히, 저소득계층 및 다자녀가구를 중심으로 세제혜택을 집중 지원함에 따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입자 비중이 높아 리스터연금 도입이 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측면에서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일정한 소득 이하인 계층에 인증된 개인연금 가입 시 정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독일식 리스터연금제도의 도입 검토가 필요함.

- 인증제 개인연금은 원금보장형 및 종신연금 등 엄격한 세제적격 상품의 요건이 필요함.
-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우선 저소득계층이나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자로 가입대상을 한정 하되, 장기적으로는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함.

1. 검토배경



■ 현재 우리나라 개인연금제도는 다층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기에 제도의 포괄성(가입률과 유지율)과 급여의 적절성, 그리고 소득효과 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

- 우리나라는 2000년 연금제도의 과세체계 개편 시점을 전후로 1994년에 개인연금저축, 2001년에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제도가 도입 및 운용되고 있음.
-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인연금 가입률이 12.2%에 불과하여 주요 선진국에 비해 동 가입률이 크게 미흡한 수준임.
 - 또한,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도 7.5%에 불과해 OECD 등에서 권고하는 소득대체율(10% 이상) 수준을 하회함.

〈표 1〉 개인연금 가입률 비교

구분	영국	미국	독일	한국
개인연금 가입률	18.1%	24.7%	29.9%	12.2%

주: 15~64세 경제활동인구 대비.

자료: OECD(2011), Pension at a Glance.

■ 이에 노후소득보장 다층체계 구축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개인연금 가입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저축이 절세상품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함.

- 개인의 여유자금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저축은 고소득층의 가입니즈가 높고, 누진세율 적용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 소득공제 효과가 커져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 대한 유인 효과가 낮음.

〈표 2〉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의 비중

구분	사적연금 비중	공적연금 비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
우리나라	32%	68%	11.1%
P7국가 평균	65%	35%	15.4%

주: 1) P7국가는 네덜란드, 미국, 스위스,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가 해당됨.

2) 공사연금 비중은 2009년 12월 말 기준이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0년 기준임.

자료: Towers Watson, UN 인구통계국, 금융감독원.

-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공제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 유인이 낮음.
- 따라서 소득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표 3〉 우리나라의 소득계층별 가구 비중

소득계층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구성비(%)	1990	7.1	75.4	17.5
	2010	12.5	67.5	20.0
소득계층 구분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	중위소득의 50~150% 가구	중위소득의 150% 초과 가구

주: 소득계층 구분은 OECD 기준에 의함.
자료: 통계청(2011), 「가계동향조사」.

- 따라서 본고는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 제고와 노후소득보장체계 사적부분의 한 축인 개인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독일의 인증제 개인연금 도입 및 운용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2.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의 변화와 리스터연금 도입



가. 공적연금 위주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의 변화

-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년 연금개혁을 통해 공적연금 위주의 노후소득보장에서 다층체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으로 전환됨.
- 제1층인 공적연금은 국가에 의하여 강제 적용되는 사회보험으로 산업별, 직업군별로 분리되어 다원적이면서도 복잡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
 - 국민연금제도는 직종에 따라 생산직 연금, 사무직 연금, 광산노동자 연금으로 분리·운영되며, 공무원·법관·직업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농민연금, 예술가·문학자·자유기고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직업자 특별연금 등이 존재함.

- 제2층은 퇴직연금으로 2001년 연금개혁을 통해 국가 재정지원과 함께 퇴직연금 규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음.
- 제3층의 경우 개인연금이 해당되는데, 연금개혁으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부분으로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증제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이 전격 도입됨에 따라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그림 1〉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3층	개인연금							
	취립연금(개인연금)		인증제 리스티연금(개인연금)					
2층					광부 연금	국가보조 퇴직연금	공공부 문퇴직 연금	공무원 연금
						퇴직연금		
1층	자영 직능 연금	농민 연금	자유직업 특별연금	생산직·사무직 근로자 연금				
				공적 연금				
직종	자영업자	직능 단체	농민	예술가등	광부	생산직·사무직노동자		공무원
	자영업자				근로자			

- 독일은 2001년 이후 공적연금의 급부수준이 삭감됨에 따라 연금 결손분 보충을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 연금의 역할 강조 및 활성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사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함.
- 독일은 노후소득보장 중 공적연금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1997년부터 공적연금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전면적 개혁은 2001년 이후 이루어짐.

〈표 4〉 연금개혁 이전의 독일 공적연금 비중(1999년 기준)

구분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공적연금(1층)	85%	50%	42%	65%
사적연금(2·3층)	15%	50%	58%	35%

나. 연금개혁을 통한 리스터연금 도입

■ 독일은 급여수준 하향조정,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한 1992년 공적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와 함께 통일에 따른 비용부담 가중, 경기침체에 따른 높은 실업률 등으로 연금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의 점진적 인하를 추진하기에 이룸.

- 즉,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단계적 인하를 위하여 소득대체율의 점진적 인하를 추진하고 연금보험료의 인상 상한선을 설정하여 2020년까지 20%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결론지음.
- 한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퇴직연금에 대해 근로자의 조건부 법적 청구권 인정, 수급권 보장을 위한 지급보증제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함.

■ 또한, 정부보조금 및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는 연방금융감독청 인증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 도입을 통해 중산층 이하 저소득계층 등의 개인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함.

-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은 2001년에 제정된 「노후재산형성 보완법」¹⁾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동 연금명은 전 노동부 장관 이름인 Walter Riester에서 유래함.
- 따라서 독일은 현재 리스터연금, 2005년 1월부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가 되는 뢰럽연금(Rürup Plan), 기존 생명보험회사의 개인연금 등 3가지 형태의 개인연금이 있음.

3. 독일 리스터연금의 운용시스템



가. 가입대상 및 보조금

■ 공적연금의 급여축소 보완을 위해 도입된 리스터연금의 경우 그 가입대상은 기본적으로 공적연금 당연 가입자와 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음.

1) Altersvermögensergänzungsgesetz: Retirement Savings Supplementary Law.

- 가입대상자는 독일 「소득세법」²⁾에 따라 근로자, 수공업자·예술가 등 영세 자영업자, 공적연금에 가입한 농업인, 자녀양육자, 실업보험 수급자, 요양 및 간병 환자, 군인 및 공익요원 등 공적연금 당연가입자임.
- 사용자가 보험료 납입에 합의한 비정규직 근로자, 조기 퇴직연금 수급자 등도 가입대상에 포함됨.

■ 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경우에도 가입자가 리스터연금에 가입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해당 배우자는 본인부담 보험료를 납입할 필요 없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보조금만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리스터연금의 정부 세제지원은 사전적인 의미의 보조금과 사후정산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취하는데, 보조금은 가입자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한 기본보조금과 해당 자녀를 위한 자녀보조금으로 구성됨.
- 보조금은 정액으로 지급되면서 보험료에 포함되므로 가입자의 본인부담 보험료는 전체 납입보험료에서 보조금이 차감된 금액임.

■ 리스터연금의 경우 가입자 소득에 비례(2008년 이후 최소기여율 4%)해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지나 정부 보조금은 정액으로 지급되므로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

- 동 보조금은 2002년 도입 후 기본보조금 및 자녀보조금의 점진적 인상에 따라 2008년 이후 각각 154유로와 185유로에 이르렀으며, 연간 납입할 최소보험료 및 최대보험료 수준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됨.
- 또한, 2008년 이후 저연령층 연금가입 확대 및 출산장려를 위해 저연령층 가입자에게 200유로의 보조금과 신규 출생자녀에게 300유로의 보조금 지급제도를 각각 신설함.

〈표 5〉 리스터연금 보조금 및 소득공제

구분	2002. 3	2004. 5	2006. 7	2008 이후
기본보조금 한도액(1인당)	38유로	76유로	114유로	154유로
자녀보조금 한도액(자녀 1인당)	46유로	92유로	138유로	185유로1)
보조금을 받기 위한 최소기여율 (연간소득 기준)	1%	2%	3%	4%
정부보조를 위한 최대기여금액	525유로	1,050유로	1,575유로	2,100유로
소득공제액	525유로	1,050유로	1,575유로	2,100유로

주: 1) 2008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300유로의 보조금이 지원됨,
자료: BMAS(사회보험청).

2) 「소득세법(EStG)」 제10a조.

나. 보조금 운영시스템

■ 보조금 운용시스템의 경우 가입자의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수가 많을수록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되므로 저소득·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형태임.

- 연간소득 5,000유로 이하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가입자의 경우 전체 보험료에서 지원금 비율이 92% 수준임.
- 이에 비해 연간소득 10만 유로 이상의 독신인 경우 44% 수준으로 저소득·다자녀 계층을 위한 지원금 혜택이 고소득·무자녀(또는 독신) 계층보다 현저히 높음.

〈표 6〉 소득·가족 구성원 별 리스터연금 보험료 구성

(단위: 유로)

〈예 1〉 두 자녀를 가진 부부(2008년부터)

전년도 표준소득	기본보조금	자녀수당	본인부담 보험료	전체 납입보험료	추가적 세금혜택	지원금 비중 (%)
5,000	308	370	60	738	—	91.9
15,000	308	370	60	738	—	91.9
25,000	308	370	322	1,000	—	67.8
40,000	308	370	922	1,600	—	42.4
50,000	308	370	1,322	2,000	—	33.9
75,000	308	370	1,422	2,100	—	32.3
100,000	308	370	1,422	2,100	14	33.0

〈예 2〉 무자녀, 독신인 경우(2008년부터)

전년도 표준소득	기본보조금	자녀수당	본인부담 보험료	전체 납입보험료	추가적 세금혜택	지원금 비중 (%)
5,000	154	—	60	204	—	75.5
15,000	154	—	446	600	—	25.7
25,000	154	—	846	1,000	141	29.5
40,000	154	—	1,446	1,600	432	36.6
50,000	154	—	1,846	2,000	672	41.3
75,000	154	—	1,946	2,100	777	44.3
100,000	154	—	1,946	2,100	777	44.3

자료: 니췌시이基礎研究所(2007).

■ 또한, 리스터연금은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지는데, 동 혜택은 2,100유로(2008년 이후) 한도 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되는 구조로 이루어짐(〈표 5〉 참조).

- 동 소득공제 혜택으로 고소득층은 보조금과 소득공제의 이중혜택을 받는 반면, 소득이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층은 보조금만 지급받게 되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리스터연금 보조금에서는 소득세 감면액이 보조금 액수를 초과할 경우 독일 국제청이 전체 소득세 감면액에서 동 보조금만큼을 차감하여 환급하도록 제한함.
 - 결과적으로 고소득 가입자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득공제 혜택만 받게되는 구조임.³⁾

■ 고소득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들 대부분을 연금 수령 시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미래에 낼 세금을 미리 당겨 받는 것에 불과함.

- 이에 반해 저소득층은 보험료 납입 시 보조금을 받음으로써 혜택을 보는 한편, 장래 연금 수령 시에도 소득수준(공적연금 포함)이 면세점 이하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결과적으로 리스터연금은 가입자가 공적연금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노후소득을 위한 자조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출산장려를 통해 가족을 보호하는 것에도 기여함.

다. 리스터연금 인증 기준

■ 독일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연금상품이 노후소득보장 외의 목적에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연방금융감독청이 심사 및 인증한 경우에 한해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도록 인정기준을 마련함.

- 급부가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노후소득보장 외의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급부지급이 60세 이후이거나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에서 개시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
- 30% 이하로 허용된 일시금 지급범위 이외의 급부는 한 달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 종신연금 형태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 연금수급 시점의 전체 연금 지급액은 전체 보험료 적립금(본인부담금+정부보조금)을 보장하는 원금보장형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3) 김원섭·강성호(2007),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학술발표자료.

- 연금지급에 대한 성별 차이 금지, 분기마다 해약과 연금수급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납입액과 관리비 등 연금계정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
- 보험회사의 사업비 이연상각은 연금가입자의 단기간 내 타 보험회사로 이동 또는 해약 시 납입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어질 수 있으므로 5년 동안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하며, 계약의 일시정지, 해약, 이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 또한, 자본시장 변동으로 가입자 적립자산의 과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감독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로 제한하는 등 다음과 같은 리스터연금의 인증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연금의 급부금이 제3자로 이전·압류 대상 금지, 가입자 본인 거주 목적의 주택구입자금을 위해 1만~5만 유로까지 무이자 대출 가능, 대출후 2년부터 연금수급 시점까지 상환.
- 연금지급은 기본적으로 연금가입자로 제한함으로써 상속이 불가능하며, 동 연금이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되거나 외국에 거주할 경우 정부보조금 등의 세제혜택을 환수하며, 중도해약 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수익금과 본인부담금을 과세대상으로 함.
- 연금계약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경우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적립금을 새로운 연금상품으로 이전 가능하나 이 경우 별도의 해약금 부과 가능함.

4. 독일 리스터연금의 운영 성과



■ 리스터연금상품으로 연방금융감독청에서 적격인증을 받은 생명보험회사의 연금보험형, 은행의 예금형, 투신사의 투신형 상품이 있음.

〈표 7〉 리스터연금의 적립상품 유형

상품유형	주요 특징	계층
생보사 연금보험형	• 적립과 보험을 결합한 상품, 최저보증이율 설정이 요건, 신계약비 등 부대비용이 높음	저·중령층
은행 예금형	• 확정금리형 예금, 리스크·수익이 모두 낮음, 수수료 낮음	저·중·고령층
투자신탁의 투신형	• 투자신탁상품, 가입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상품을 선택, 최저 보증이율 없음	리스크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연령층

자료: 損害保險總合研究所(2009, 3).

- 리스터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 제도의 복잡성과 낮은 수익률 등으로 가입실적이 저조하였으나,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현재 가입대상자의 약 1/3 이상이 가입하는 등 급성장함.

〈표 8〉 리스터연금 금융회사별 보유계약 건수 추이

(단위: 천 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9
생보사	3,047	3,486	3,661	4,797	6,468	9,349
은행	150	197	213	260	351	570
투신	174	241	316	574	1,231	2,443
합계	3,371	3,924	4,190	5,631	8,050	12,400

자료: BMAS(사회보험청)

- 2002년에는 가입대상자 4,200만 명 중 가입자가 337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지속적인 보조금 상향조정 및 신규 출생자녀 등을 위한 보조금 신설에 힘입어 2009년에는 1,240만 명 이상이 가입하는 등 약 3.7배 성장함.
 - 2009년 기준 전체 금융권 리스터연금 보유계약 건수 중 생명보험회사의 연금보험이 전체의 75.4%를 차지함.
- 또한, 리스터연금은 저소득·다자녀 가구에 대해 더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입자 비중이 높아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공적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약 3만 유로이고 2004년 리스터연금 가입자 중 연간소득 3만 유로 이하 가입자 비율이 70.8%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하면 중·저소득층의 가입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음.
- 결국, 독일은 고령화 대비를 위한 공적연금개혁으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축소하되, 공적연금 부족분을 인증제 개인연금(리스터연금) 등을 통해 보전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노후안정과 개인연금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

5.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도 급속한 인구고령화 진전에 대비하여 정부의 역할은 축소하는 한편, 기업과 개인의 역할은 점점 증대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 공적연금의 사회보장적 기능은 축소하는 대신 사적연금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고령화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사적연금 활성화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 개인연금 가입 시 세제혜택이나 정부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독일식 리스터연금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 이유는 사적연금의 활성화 정책으로 수혜를 보는 대상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고소득층일 것이므로 저소득층을 고려하지 않은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은 소득 양극화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임.
- 물론, 독일식 리스터 연금제도 도입은 단기적으로 세수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에 자활(자립)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가입 증대에 따른 금융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임.
- 특히, 독일처럼 원리금보장형 중심으로 연금을 설계하고 종신연금으로 지급방식을 의무화하며, 공적연금 지급시기에 맞추어 급부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는 경우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또한,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 이하 소득자로 가입대상을 한정하되, 장기적으로는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도 요구됨.
- 결론하면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제고함과 동시에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한 축인 개인연금의 노후 소득보장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독일식 인증제 개인연금제도의 도입 검토가 절실히 요구됨. ki

ki·ri Weekly 이슈 모음집 2011 I

발행일 | 2012년 1월

발행인 | 김 대 식

발행처 | 보험연구원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연락처 | 02-3775-9000

인쇄소 | 경성문화사 / 02-786-2999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ri
www.kiri.or.kr

